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請求論文

學校暴力 對策에 관한 研究

**The study on the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濟州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林 桂 令

**2012年 8月**

# 學校暴力 對策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昌君

林桂令

이 論文을 法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8月

林桂令의 法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2年 8月

# **The study on the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Lim Gyeo-Ryeo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Gyun)**

A Thesis submitted i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aws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12. 8.

## 국문 요약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 1. 29. 이하 학교폭력대책법)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7. 7. 30)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그 동안 총 10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제정 당시의 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법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 대책의 정책방향에서 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해행동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②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중간점검을 하고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통일된 평가방안과 실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영역에서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와 소년법의 관계는 그 법적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법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자치위원회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자치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학교장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걸쳐, 그 절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협동으로 연구하는 국가 연구기관 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전문가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개선방안이다. ① 가정폭력피해자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시설 지원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에 상담 및 보호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 업무, 국고보조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동법

제16조 제6항은 ‘보호자’의 범위와 ‘보호자책임’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법 제16조 제6항에 규정된 세부 사항들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③ 동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보호조치 이외에 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피해학생보호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체계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체제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조치의 개선방안이다. 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임을 고려한다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해학생을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②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징계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급교체 및 전학을 거부할 경우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의 범위 내에서 가중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학교 외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학교 외부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단속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겠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나 청소년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 학교생활지도교사에게도 준사법권(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다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 가해학생에 대한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④ 가해학생의 낙인효과를 줄이고 관계부처의 지속처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사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법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한 조기 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분쟁조정제에 화해권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분쟁조정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에게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를 권유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 기능’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 目次

<b>第1章 序論</b> .....	1
第1節 研究의 目的 .....	1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및 限界 .....	5
1. 研究의 範圍 .....	5
2. 研究의 方法 .....	7
3. 研究의 限界 .....	8
<b>第2章 學校暴力의 概念 및 關聯法令의 規範的 性格</b> .....	9
第1節 學校暴力의 概念 및 特徵과 類型 .....	9
1. 學校暴力의 概念 .....	9
2. 學校暴力의 特徵 .....	14
3. 學校暴力의 類型 .....	18
第2節 學校暴力 關聯法令의 規範的 性格 .....	23
1. 關聯法令의 主要 特徵 및 內容 .....	23
2. 關聯法令의 規範的 性格 .....	25
3. 學校暴力對策法상 “學校暴力”의 概念 및 適用範圍 檢討 .....	28
4. 外國의 學校暴力에 關聯된 政策 및 法令 .....	45
<b>第3章 學校暴力의 原因과 現況 및 認識分析</b> .....	52
第1節 學校暴力의 原因 및 對處의 問題點 檢討 .....	52
1. 學校暴力의 原因 .....	52

2. 學校暴力的 對處의 問題點 檢討 .....	63
第2節 學校暴力的 實態 및 處理 現況 .....	68
1. 學校暴力的 實態 .....	69
2. 學校暴力에 관한 團束 現況 .....	73
3. 學生暴力的 被害學生 保護 및 加害學生 善導處分 現況 .....	78
第3節 學校暴力에 대한 學父母 認識分析 .....	86
1. 調査方法 .....	86
2. 分析結果 .....	88
3. 學校暴力的 學父母의 認識에 관한 研究要約 .....	116
<b>第4章 學校暴力事件의 法的 處理節次 및 問題點 .....</b>	<b>122</b>
第1節 學校暴力事件의 法的 處理節次 .....	122
1. 學生의 法的 性格 .....	122
2. 學校暴力事件의 法的 處理 .....	123
3. 學校暴力事故에 대한 法的 責任 .....	130
第2節 學校暴力事件에 대한 關聯法令의 問題點 .....	132
1. 司法節次와 敎育節次의 重複 .....	133
2. 學校暴力 5個年 基本計劃의 成果 및 問題點 .....	135
3. 學校暴力 關聯法令의 爭點別 問題點 .....	140
<b>第5章 學校暴力 對策의 改善方案 .....</b>	<b>160</b>
第1節 學校暴力 對策의 政策方向 .....	160
1. 學界 및 專門家의 政策方向 .....	160
2. 政府의 政策方向 .....	162



3. 教育廳 및 學校의 政策方向 .....	165
4. 家庭 및 社會의 政策方向 .....	168
第2節 學校暴力 關聯法令의 爭點別 改善方案 .....	170
1. 學校暴力對策自治委員會의 改善方案 .....	170
2. 學校暴力 豫防教育에 관한 改善方案 .....	171
3. 被害學生 保護措置 및 司法體系에서 改善·支援方案 .....	176
4. 加害學生에 대한 善導·懲戒措置의 改善方案 .....	190
5. 學校暴力對策法과 刑法 및 少年法の 定立 .....	203
<b>第6章 結論</b> .....	<b>205</b>
參考文獻 .....	210
Abstract .....	222
설문지 .....	226

## 표 차례

<표 1-1> 학생폭력사범 단속 현황(2007~2011년) .....	74
<표 1-2> 경찰청의 집중단속 기간 운영실적(2007~2011년) .....	74
<표 1-3> 2011년 지방경찰청별 학교폭력 집중단속 실적 .....	75
<표 1-4>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경찰청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	76
<표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건수 현황 .....	78
<표 1-6> 연도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	79
<표 1-7> 2009년도 유형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	81
<표 1-8> 연도별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2007년~2009년) .....	84
<표 1-9> 학교 급별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 .....	85
<표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87
<표 2-2>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	89
<표 2-3>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매체 .....	90
<표 2-4>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	91
<표 2-5> 학교폭력 가해 측 해결방법 .....	92
<표 2-6> 학교폭력 피해 측 해결방법 .....	93
<표 2-7> 학교폭력 신고기관 .....	94
<표 2-8> 학교폭력 책임 .....	95
<표 2-9> 학교폭력사건 해결주체 .....	96
<표 2-10> 학교폭력 피해경험 .....	97
<표 2-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유형 .....	98
<표 2-12> 학교폭력 발생장소 .....	99
<표 2-13> 학교 내 불량서클 유무에 대한 인식 .....	100
<표 2-14> 교사의 체벌에 대한 생각 .....	101
<표 2-15>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 .....	102
<표 2-1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 집단의 역할 .....	103
<표 2-1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점사항 .....	104
<표 2-18>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	105
<표 2-19>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 교육의 필요성 .....	106

<표 2-20>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 참석의사 .....	107
<표 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인지여부 .....	108
<표 2-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인지여부 .....	109
<표 2-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필요성 .....	110
<표 2-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용성 .....	111
<표 2-25> 특별법 제정 필요성 .....	112
<표 2-26>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 .....	113
<표 3-1> 자녀대화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	114
<표 3-2> 폭력심각성 인식에 따른 차이 분석 .....	115
<표 3-3> 폭력경험에 따른 차이 분석 .....	116
<표 4-1> 연령에 따른 법적 지위 .....	123
<표 4-2>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	128
<표 4-3>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의 수 .....	154
<표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정(안) .....	171
<표 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신설(안) .....	174
<표 5-3> ONE-STOP 지원센터 운영실적(2010년) .....	186
<표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개정(안) .....	193
<표 5-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설(안) .....	195

# 第1章 序 論

## 第1節 研究의 目的

학생들은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을 배워 나가고, 또래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낸다. 그러나 학생들끼리의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등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당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로 여기던 것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증폭되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양상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첫째, 학교폭력이 성인범죄를 모방하고 있어 해가 거듭될 수록 集團化<sup>1)</sup>, 凶暴化, 年少化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단독으로 행해지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단순히 학생들 간의 폭력이 아니라 불량서클<sup>2)</sup>과 연계되고 그 위에 조직폭력과 연결돼 조직 간 힘 대결로 이어지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학생에게서 많이 발생되던 학교폭력이 점차 여학생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sup>3)</sup> 셋째, 사이버범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sup>4)</sup> 지금까지는 대도시를 중심

1) 2명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전체 6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화 경향의 경우 특히 여학생이 82.6%로 남학생의 62.9%보다 높았다. 또 인문계 고등학생이 75.5%로 전문계 고등학생 6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예단 연구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136면.

2) 실제 중·고등학생들은 일진회라는 불량서클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일진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유래해 국내에 전파되었다. 초기에는 '싸움 잘하는 불량학생'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는 이른바 '짱'과 '진'으로 구성된다.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라는 뜻의 짱, 잘나가는 아이들이라는 의미의 진은 1진, 2진, 3진 등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다. 통상 중학생이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회원 모집을 한다. 김범수,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9, 11면, 주) 재인용.

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앞의 책, 138면.

으로 폭력이 발생되었으나, 인터넷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형사사법기관도 학교폭력에 대해 과거와 달리 가해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다루고 있다.<sup>5)</sup>

그동안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sup>6)</sup>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서는 200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학교폭력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sup>7)</sup> 또한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 중 32.8%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본 연구의 실증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46.6%로 나타났다.<sup>9)</sup> 그리고 언론도 중학생들의 집단구타로 인한 사망 사건, 집단 따돌림(왕따)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살사건,<sup>10)</sup> 중학생 집단성폭행 사건<sup>11)</sup> 등을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

4) 이성석,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연구총서」 07-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7면 ; 한국정보진흥원이 2011. 11. 전국 초·중·고교생 126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 있는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네 명 중 한명(23.2%)이 인터넷에서 놀림을 받았다고 답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왕따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는 데다,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만큼 심각하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가해학생을 공갈 및 협박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반사이버 왕따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1. 12. 29, 52면.

5) 13세의 여자중학생에게 술을 먹여 운간한 후 비닐창고에 방치해 죽게 한 중학생들(피고인들은 모두 사건 당시 92년, 93년생들임) 4명에게 법원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3년 6월 단기 3년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단기 2년 6월에 나머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7. 7. 13. 2007고합63 판결) ; 한편 제주지방법경찰청에 의하면 2009년 7월 말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19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폭력을 행사하여 입건된 사례가 114건, 금품갈취나 협박 등 공갈혐의가 70건, 기타 11건 등이며,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였다. 또 17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입건, 그리고 6명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12건은 불입건 처리하였다. 서귀포 내 모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에게 1년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중학생 5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2010년 한해 무려 53명의 학생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등 폭력의 수위나 강도는 오히려 잔혹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경찰청, 2011(내부자료).

6) 김준호, 「2002년 학교폭력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 17면 ; 박효정 외, “학교폭력실태의 이해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5-17, 한국교육개발원, 2005, 35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앞의 책, 120면.

7)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 참조.

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앞의 책, 124면.

9) <표 2-2> 참조.

10) 조선일보, 2012. 1. 12, 52면.

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sup>12)</sup>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학교폭력을 감지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가정·학교·지역사회 및 정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일찍이 정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9호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한 이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2005년~2009년)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 및 대책을 수행해 왔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인적·물적 기반(동법 제6조 제2항)을 보강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sup>13)</sup>

하지만 학교폭력대책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법률제정을 통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집행기관 스스로 학교폭력대책법의 성격과 개념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갖추고 있지 않고 심지어 법적으로 그 구성·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정기구조차도 마련되지 않는 학교도 있다. 교원들 역시 법률에 대한 내용과 사안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학생지도의 어려움, 업무부담, 지원 부족, 과도한 책임 등으로 학교폭력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sup>14)</sup>

이러한 문제는 관련법령이 다양한 학교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학교구성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 시급한 과제는 학교폭력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법령들을 손질하는 것이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이므로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도 백년대계의 심정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의 대책은 ‘교육개혁’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sup>15)</sup> 교육개혁은 학교환경·교

11) “은평뉴타운 중학생 처벌없는 집단폭행 및 성폭력사건 분노한 주민성명운동”, sbs.co.kr. 보도자료, 2011. 10. 22.

12) 경향신문, 2012. 2. 9, 9면.

13) 허경미,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예방특별법의 교육·사회적 조명」 제7회 소년보호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소년보호학회, 2005, 1~27면.

1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 2011, 9면.

육제도 · 교육과정 · 교육방법 · 교원임용 · 교원처우 그리고 교사의 의식과 함께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하더라도 문제해결 방안에서 있어서 학부모의 개입은 가장 중요한 해결요소라 하겠다.<sup>16)</sup> 그 이유는 학교폭력이 그 도를 넘어 범죄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의 법적 대리인인 동시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과 교육할 권리를 안고 있는 법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 연구는 학교폭력대책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 동법을 둘러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현황과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법은 그 법률을 적용받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문화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이라는 ‘제도’와 그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람들의 ‘의식’이 서로 견고하게 지지하는 관계일 경우 법의 효과성은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법률문제에 앞서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대책법의 적용실무에서 나타나는 법집행기관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법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학교폭력의 개념정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는 각 나라의 학교폭력에 관련 정책과 법령에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계와 형사사법계의 주장과 정서에

15) 방재우, “학교폭력 추방과 근절에 교원이 앞장서자”,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100인 토론회, 학교폭력 대책국민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서울교육문화회관, 2005. 3. 31, 28~36면 ; 조홍식,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학교폭력 대책국민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004. 4. 20, 26면.

16) 기존의 학교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학교폭력의 직접당사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인식이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이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역할과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실제로 학교폭력 방지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Hirschi, T.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pp. 203~243 ; 김선아,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6(2), 2005, 5~36면.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현행 학교폭력 정책과 주요 관련법령 조항을 쟁점별로 보완·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및 限界

### 1. 研究의 範圍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불확실하다. 실효성이란 ‘법규범이 사회적으로 실제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규범을 인식하는 법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하고 본래 의도한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이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선교사조차도 이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시 임의기구인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sup>17)</sup>

본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과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검토하였다.

제2장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징, 유형 그리고 학교폭력대책법의 규범적 성격을 교육기본법 및 소년법과 연계시켜 논의해 봄으로써 법질서 체계 내에서 학교폭력대책법의 위상과 ‘학교폭력’ 개념의 적용대상이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외국의 학교폭력에 관련된 정책 및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학교폭력 원인과 대처의 문제점, 학교폭력의 피해실태, 징계현황 등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해 인식을 분석·검토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원인에

17) 한겨레, 잠자는 “학교폭력예방법만 시행해도 해법 실마리”, 2011. 12. 2, 2면.



대해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 등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당국과 경찰, 검찰,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활동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경찰, 검찰의 역할로 제한했다. 이는 학교폭력을 청소년기의 비행 또는 일탈로 정의할 때 이에 대한 통제기능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사회조직이 이들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학술적·비(非)학술적 연구 차원에서의 피해실태와 2004년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행해진 대표적인 학교폭력 피해실태,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학교폭력 단속현황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을 통해 학교폭력의 증감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찰청 등의 공식통계를 참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제주도(읍·면 제외)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실증조사 했다. 이러한 조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정책대안 모색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았다.

제4장에서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인 형사사건 처리절차 및 민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과정과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안들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기존 정책과 관련법령의 개별조항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기존 정책 즉, 5개년 기본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학교폭력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조치의 문제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선도·징계조치의 문제점,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 학교폭력사건 신고 등의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제5장은 학교폭력의 기존정책과 관련법령의 쟁점별에 대한 검토·개선방안,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현행 사법체계에서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학교폭력 기존 정책방향과 과제를 검토했다. 국회 및 정부기관들이 기존 학교폭력 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점 되어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정 및 사회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학교폭력 관련법령 중 자치위원회의 역할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

화, 피해학생 보호 및 정책방안, 가해학생 선도·징계조치 방안 등 쟁점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학교생활지도교사에 준사법권 부여, 소년다이버전 활용방안, 학교폭력 대책법과 형법 및 소년법의 관계 즉, 현행 사법체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고 학교폭력 대책의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 2. 研究의 方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문헌연구방식을 이용하였다. 문헌연구의 주요 자료는 입법을 사실상 주도한 학교폭력대책국민협회가 보유 중인 다양한 형태의 연구자료, 발표자료, 인터뷰자료, 보도자료 등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하고 관련법 제정의 당위성과 증거들이다. 또한 법률에 담겨야 할 내용에 관한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집, 법 시행령을 앞두고 제기됐던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서 다양하게 제기된 비판론과 대안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학교폭력에 관해 저술한 논문과 단행본들을 최대한 검토해 본 후 논문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쟁점들을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단체 및 형사정책 연구원, 청소년예방폭력방지 단체 등의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과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에서 발표한 통계자료,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기초해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립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2005~2009)” 및 일선 학교들이 수립한 실행계획, 학교폭력 관련법령 개별적 조항 등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교육당국과 형사사법당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에서는 제주도(읍·면 단위를 제외)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초등학교 3학년 제외)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학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2011년 2월 25일부터 3월 11일 부터 15일까지 900부의 질

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된 질문지 850부 중 무응답 항목이 있는 부적절한 질문지와 회수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한 756부에 대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 3. 研究의 限界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들을 조사대상으로 했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3학년 이하)과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장애학생 및 기타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은 실증적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다.

첫째, 조사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읍·면지역 제외)로 한정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들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학부모나 사회구성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하기는 어렵다.

## 第2章 學校暴力的 概念 및 關聯法令의 規範的 性格

### 第1節 學校暴力的 概念 및 特徵과 類型

#### 1. 學校暴力的 概念

##### (1) 학교폭력의 개념기준

1990년대 초반부터 학교의 친구들이나 선배들로부터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했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이 외부기관에 학교폭력 예방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급기야 정부기관 및 매스컴에 의하여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됐다.<sup>18)</sup>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의 시각차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상, 학교폭력의 내용 등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처방안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즉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자들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폭력행위의 유형으로 어떤 것들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개념규정이 달라진다.<sup>19)</sup>

18) 이명우 외, “경찰다이버전 체제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모형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19면.

19) 이순례,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2-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2면.

## 1) 폭력발생 장소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주변과 등·하교 길에 발생하는 폭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20)</sup> 또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것이라면,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sup>21)</sup>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지역이 가지는 중요정보다는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신분을 더 중요시하는 개념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교주변과 등·하교 길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학교폭력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 2) 학교폭력의 주체

학교폭력의 주체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 제1호에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간의 폭력'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 연구자들도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의 모든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된 학교폭력의 개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sup>22)</sup> 이 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또는 면제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학생이나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 교사에 의한 폭력, 교사 상호간 또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력 등 있다는 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20) Aster, R. A., W. J. Behre, K.A. Fravill & J.M. Wallace,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1): 1977, pp. 55~68.

21) Lorenz, K., *On Aggression*, London: Methuen, 1966, pp. 794~802.

22)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원, 2009, 79면.

에 학교폭력이 심각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학생 간에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교 행정가에 의해서 야기되는 학생에 대한 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sup>23)</sup>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지만,<sup>24)</sup> 폭력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가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학생이 받은 모든 종류의 폭력피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학생 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생에 대한 폭력이나 금품갈취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sup>25)</sup>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학생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피해자 중 어느 한 주체가 학생인 경우의 폭력형태를 학교폭력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주장되고 있다.<sup>26)</sup> 하지만 학교폭력대책법의 재정목적이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비(非)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주체범위는 학생간의 폭력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행위의 유형

어떤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학교폭력의 개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Berkowitz와 Olweus의 개념규정이다. Berkowitz는 공격행동을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신체적·물리적 상해나 언어적 상해 모두를 포함했다.<sup>27)</sup> Olweus는 학교폭력

23) 원혜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7호, 한국소년보호학회, 2004, 116면.

24) 이순례, 앞의 논문, 19면.

25) 노성호,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범죄방지포럼」 제1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04, 14면.

26) 김범수, 앞의 논문, 150면 ; 원혜옥, "학교폭력대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년보호학회」 제7회, 소년보호학술대회, 학교폭력예방특별법의 교육·사회학적 조명, 2004, 31면.

27) Berkowitz, L.,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Psychological Review 81, 1974, pp. 165~176.

의 개념정의에 있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하며, 이와 더불어 폭력의 유형으로 위협·조롱·매립·발로차기·들볶음·꼬집음·따돌림 등 물리적이거나 비물리적인 행위 모두가 폭력에 해당된다고 하였다.<sup>28)</sup>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폭력의 개념은 Hans Tiersch의 견해에 따르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폭력을 물리적·심리적·구조적 폭력 세 가지 형태로 나뉘 볼 수 있다.<sup>29)</sup> 물리적 폭력은 직접 신체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이와 관련된 의도적 협박 내지는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심리적 폭력은 언어적 협박과 강요, 고립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일, 두려움을 주는 일, 좌절감을 주는 일 등을 말하며, 구조적 폭력은 주어진 주변 환경 및 자연환경으로부터 삶의 위협, 강압적 사회관계 및 제도, 상호인과관계로부터 심한 갈등을 말한다.

한편 폭력이란 상대에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나 그러한 의도를 인식하고 행해진 행위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규정은 육체적인 피해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적인 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되며, 그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의 개념을 이보다 넓은 의미로 규정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sup>30)</sup>

학교폭력의 개념과 형법상 폭행범죄와의 관계는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폭력의 개념은 매우 넓은 의미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폭행의 개념은 비교적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논 하겠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중에서 처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가벌성이 있는 학교폭력의 형태로는 금품갈취, 협박, 단독폭행, 집단폭행 등을 들 수 있다. 조사결과 가장 빈번한 학교폭력은 친한 친구의 폭언과 학교 안에서 모르는 학생의 폭언이 각각 58.3%와 29.0%로 가장 많았고, 친한 친구의 구타에 의한 피해도 22.5%로 높은 빈도의 학교폭력 유형이었다.<sup>31)</sup>

형법상 폭행의 적용은 처벌 필요성이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규정에는 도움을 주지만 과연 학교폭력을 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28) Olweus, Dan, Aggression in the Schools, Washington, D. C.: Hemisphere, 1978, pp. 221~229.

29) Archer, J & K. Browne, Human Aggression ;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1989, pp. 10~11.

30) 원혜옥, 앞의 논문, 117면.

31) 이춘화,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23면.

학생 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교육적 접근을 거부하고 사법적 개입을 중요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행위를 불법한 행동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할 때에 어디까지를 처벌해야할지를 결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 범죄의 개념은 두 가지 구분될 수 있다.<sup>32)</sup> 먼저 형식적 의미로서 법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범죄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실정법에 의해 처벌이 부과되는 행위로 형벌 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객관적 법질서에 위반한 그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반해 실질적 의미로서의 범죄란 법규정과는 관계없이 범죄의 성질을 가지는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다. 사회구조가 산업화되고 시민의식이나 윤리관이 변화함에 따라 종래에 범죄로서 규정되지 않았던 신종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종래에 범죄로서 규정하였던 것이 더 이상 형벌로서 다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여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며, 학교폭력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은 학교폭력이 형식적 범죄가 가져야 할 정형화 된 성격을 갖지 못한 상태임을 예시한다. 또한 흔히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도 학교폭력은 있었는데 왜 지금에야 문제시하는가?”라는 반응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학교폭력이란 사회구조와 시민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새롭게 인식되는 법익침해행위 즉 실질적 범죄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사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 (2) 학교폭력의 개념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학교폭력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을 규정할 때는 처음 두 가지의 기준, 즉 발생장소와 학교폭력의 주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2) 김용우 외, 「형사정책」, 박영사, 2006, 91~93면 ; 정신교, 「범죄학 개론」, 형설출판사, 2007, 21~221면.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규정과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중심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격, 상징적·심리적 강제 및 집단적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sup>34)</sup> 이들은 대체로 집단따돌림·왕따 등은 학교폭력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력은 금품갈취 등 신체적·물리적 폭력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5)</sup>

본 연구의 실증조사 <표 2-11>에서는 학교폭력의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금품갈취, 가벼운 폭행, 괴롭힘, 협박과 욕설을 통한 언어적·심리적 폭력, 집단따돌림 등으로 학부모들은 인식하고 있다.

한편 2012년에 개정된 학교폭력대책법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심리적인 위해까지 폭넓게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학생으로 좁게 한정하였지만, 발생장소 측면에서 학교 내·외라는 점에서 행위 유형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 2. 學校暴力의 特徵

오늘날 학교폭력의 특징은 집단화·흉포화·연소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학생들은 폭력을 피하기 위해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폭력의 피해로 정신적인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폭력의 두려움에 절망해 자기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매일 오고 가는

33) 노성호, 앞의 논문, 23면.

34) 이순례, 앞의 논문, 32~34면.

35)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앞의 책, 132면.

등·하교시 학교주변과 학교 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다.<sup>36)</sup> 또한 학교폭력이 탈선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가해학생들의 가해 이유도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도 없이 장난삼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7)</sup> 특히 학교폭력은 대체로 성인들에게 목격되지 않고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알려지더라도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학부모는 항상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고자질이나 알려주는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목격자까지도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 (1) 가해학생의 특징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이 가해자라는 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 자신의 비합리적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자신의 문제점들을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내부적으로 가지는 여러 위험요소들이 순간적으로 소멸되는 부정적 강화를 가져오게 되고, 가해행동 즉 폭력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해학생은 주도적 공격자와 반응적 공격자로 구분된다. 주도적 공격자는 전형적인 가해학생으로서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다.<sup>38)</sup> 특히 피해 경험이 없는 가해학생은 목적지향적인 공격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의 공격을 통해 성공을 확신하며, 다른 학생에게 가해질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향의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동료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부모 등 어른들에게도 공격적인 경우가 많다.<sup>39)</sup>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개인적 특징은 충동적이고, 피해자보다 힘이 더 세며, 신

36) <표 2-12>의 실증조사에서 학교폭력 행위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등·하교시 학교주변이 5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 내가 36.0% 등으로 나타났다.

3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앞의 책, 38면.

38) Olweus, Da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 1994, pp. 117~119.

39) 이문자,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23면.

체적으로 강하다. 또 타인에 대한 강한 지배욕과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의 결여되어 있다. 또는 충동통제능력이 부족하고, 외향적이며, 학업 성취도가 낮고, 음주나 약물을 남용한다. 한편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때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일탈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40)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가족적 특징으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방임적이거나 지나치게 지배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부당한 부모의 양육 태도, 과잉보호 등의 많은 가족문제를 가지고 있다.41) 그리고 가족의 물질적 어려움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겪고 있어 권력과 물질에 대한 과잉욕구를 가지고 있다.42)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발생하는 학교환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같은 학교 학생이나 또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폭력행동은 매우 은밀하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43) 그리고 교사는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며, 학생들 간의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방임적 태도를 가진다. 또한 가해학생은 비행친구들과의 교류가 많고 학교를 싫어하거나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지역사회 환경적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많고, 대중매체의 범람으로 공격적인 폭력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폭력적인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공격적 사고는 다른 학생을 공격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적 특징을 비롯한 가족, 학교,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한번쯤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기거나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폭력행동을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0) 교육인적자원부,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및 적용학교 담당자 직무연수”, 2006, 32면.

41) 노호래·이신옥,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내적통제감 및 학교생활인식을 중심으로 -, 「학교사회사업」 제6호, 2003, 1~35면 ; 최수형, “비행경력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적 훈육 효과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2008, 220면.

42) Stephenson, P., & Smith, D. Bull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P. Tattume & D. A. Lane(Eds), Bullying in schools, Stoke-on Trent, England: Trentham Books, 1989, pp. 45~57 ;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특성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1호, 2004, 65~91면.

43) 도기봉,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7, 11면.

## (2) 피해학생의 특징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징을 개인적·가정적·학교생활 요인과 관련하여 고찰해 본 결과 기본요인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상황통제력에 대한 확신 부족, 지나치게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 대인관계와 적응력 등의 부족으로 친구가 적음,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주장하지 못함,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잘난 척함, 신체적으로 힘이 약함, 이기적인 성격,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신체적 결함(장애 등) 등을 들 수 있다.<sup>44)</sup> 또한 집단따돌림의 피해 집단은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sup>45)</sup>

Olweus는 남자 피해학생에 대하여 대체로 인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들은 다른 동료 학생들로부터 거부 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불안하고 연약하며 매우 민감하거나, 자기중심심이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들도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편이고, 부모들은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걱정하는 경향이 높으며, 일부 피해학생은 피해유발적인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신체적 장애나 시각, 청각, 발음상의 문제들, 비만, 외모, 피부색, 개인적 위생, 얼굴 표현, 자세, 그리고 옷차림 등은 피해와 관련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p>46)</sup>

Besag은 피해자들이 재치가 없고, 빈약한 근육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sup>47)</sup> Lowenstein은 피해자들이 대체로 신체적으로 강건하지도 매력적이지 않은 편이나 반대로 이상한 행동양식과 신체적 결함이나 결점을 가지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할 의향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예민하지 않으며,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sup>48)</sup> Lagerspetz 등도 피해자들이 교우 간에 인기가 많지 않으며

44)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6, 79~81면.

45) 곽금주, “또래간 사회적 관계와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2000, 38면.

46) Olweus, Dan, op. cit. , pp. 123~170.

47) Valerie E. Besag, Bullies and victims: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Management(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9, pp. 4~10.

48) Ludwig F. Lowenstein, "Who is the bully?", Bulletin of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1978, pp. 145~150.

연약하고 신체적으로 이상하고 자기 자아 존중감이 낮다고 피력했다.<sup>49)</sup>

또한 자신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 복종적인 이들의 반응은 강한 아이들의 공격표적이 되고 그들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sup>50)</sup> 이들은 또래보다 신체가 허약해 공격적이거나 반격할 여력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잘난 척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일방적인 태도가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고 충돌함으로써 다수에게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는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보다 육체적인 힘에서 열세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역시 낮다. 피해학생들의 피해경험 결과를 보면 분노와 적개심을 계속해서 가진 학생들이 있는 반면 가해학생과 학교에 대한 공포심이나 회피적 태도를 보인 학생들도 많았다. 심지어 정신적 충격으로 악몽에 시달리거나 우울 증세를 나타내고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sup>51)</sup>

### 3. 學校暴力의 類型

학교폭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유형에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려는가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각 연구의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Olweus는 때리기, 발로차기, 밀치기 등의 물리적 폭력과 인상 쓰기, 집단따돌림, 좋지 않은 몸짓 등의 비물리적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sup>52)</sup>

박상도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을 신체적 폭력, 괴롭힘, 성폭력, 금품갈취, 언어적 폭력과 같은 5가지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누었고,<sup>53)</sup> 오창순·송미숙 연구

49) 이운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4, 113면.

50) Boulton, M. J., & Smith, P. K.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994, pp. 315~329.

51) 권오명,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8집, 한국법학회, 2006, 257~258면.

52) Olweus, Dan.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1998, pp. 37~63.

53) 박상도,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1, 5면.

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간접적·심리적 폭력적인 놀림, 위협, 따돌림과 직접적·물리적 폭력인 폭행, 구타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이 목적인 재산 갈취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54)</sup> 노성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을 괴롭힘이나 따돌림, 언어적 놀림이나 협박과 욕설, 금품갈취,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폭행, 성희롱이나 폭행 등으로 구분하였다.<sup>55)</sup>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유형을 대표적으로 신체폭행, 금품갈취, 욕설 및 모욕, 괴롭힘,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을 들고 있다.<sup>56)</sup>

본 연구의 실증조사 <표 2-4>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학부모 인식에는 괴롭힘, 놀림, 따돌림, 언어폭력, 강제로 시키기 등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폭력이 전체 59.9%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폭행, 금품갈취, 가혹행위 등과 같은 신체적·물리적 폭행, 사이버 폭력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바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한 학교폭력 유형에 관한 것을 종합해보면 학교폭력의 유형은 일정한 기준이 없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그 유형은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실제 발생빈도가 높은 사례, 즉 신체 폭력 및 금품갈취, 욕설 및 모욕(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상의 폭력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학생 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꼬집고 목 조르는 행위, 손가락 뒤로 꺾기 등과 같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폭력이고, 각종 칼, 캠퍼스, 몽둥이, 파이프 등 물건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는 폭력이 있다. 또 신체적 폭력은 그 횟수에 따라 일회성 폭력과 반복적 폭력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대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의 일방적인 폭행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집단패싸움과 같이 쌍방폭행에 해당하는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sup>57)</sup>

둘째, 금품갈취는 학교폭력의 흔한 형태 중 하나로 보통 구타나 폭행이 동반돼

54) 오창순·송미숙,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제7호, 2004, 136~161면.

55) 노성호, 앞의 논문, 16면.

5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앞의 책, 163~169면.

57) 도기봉, 앞의 논문, 13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범행은 한 학생에게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금품갈취는 법적으로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취하여 타인으로 부터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돈이나 시계, 운동화, 옷, 카세트 등 금품을 직접적으로 빼앗거나 다른 학생을 시켜서 빼앗는 간접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 금품갈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금품갈취의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의 경우 그저 장난삼아 혹은 별 생각 없이 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욕설 및 모욕은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언어적인 폭력에 의해서도 큰 모멸감을 느끼고 개인에 따라서는 언어적인 폭력을 더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처럼 욕설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별명 따위로 불림으로써 피해학생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대인 기피증 같은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

넷째, 정신적 폭력은 보통 괴롭힘으로 불리는데 이 괴롭힘은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포괄한다.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놀림, 욕설, 단점 등을 말하며 괴롭히는 폭력을 말한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묘하여 폭력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적어도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 영향이 강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소외감이나 노출된 느낌을 주도록 하고 성적 괴롭힘의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 심리적 폭력은 겉주고 무시하기, 따돌리거나 거부하기 등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행하여 질 수 있으나 폭력 행동의 한 과정에서 일어난다. 또 상대방 스스로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자아개념이 위축되도록 의도되어야 한다.<sup>58)</sup>

다섯째, 집단따돌림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형태중의 하나이다. 집단 따돌림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을 말한다.<sup>59)</sup> 학교생활에 있어서 집단으로 괴롭히는 이른 바 집단따돌림, 즉 왕따<sup>60)</sup>는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정신적

58) 오창순·송미숙, 앞의 논문, 136~161면.

59) 문용린 외, 앞의 논문, 72면.

60) 왕따는 미국, 영국 등 서구에서는 bullying, 일본에서는 이지메(Ijime), 이태리에서는 bullismo, 태국에서는 nisai mai dee라는 용어로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lingru로 불리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일본의 이지메를 번역한 집단따돌림, 집단 괴롭힘 그리고 왕따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곽금주, “왕따(Wang-ta: Korean bullying) 현상에 관하여”, 폭력분과위원회정책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46면.

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폭력 중에 하나이며 학생들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집단따돌림은 다른 폭력과 달리 거의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으로 최근 들어 그 피해가 심각하며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이다.<sup>61)</sup> 또는 집단따돌림은 접촉자체의 차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상화되어 있어 증거포착이 힘들며, 보복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피해 경향이 높아 적발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타 청소년 비행<sup>62)</sup>과 구별된다.

여섯째, 성폭력은 법적·여성학적·사회학적 관점 등에 따라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하는 행위, 성적행위를 유발시키는 행위로 정의되기도 한다.<sup>63)</sup> 성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성을 매개로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sup>64)</sup> 그러나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과 '폭력'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에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 어린이 성추행, 윤락행위 강요, 음란물 보이기 및 음란물 제작에 이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노출, 성적희롱,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치한행위도 성폭력개념에 포함한다.<sup>65)</sup>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그리고 성폭행을 모두 포함한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한 폭력, 협박, 메일 보내

61) 최근 들어 욕설·협박, 폭행, 금품갈취 피해경험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집단따돌림은 20%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 2011, 12면.

62) 청소년 비행의 특징은 학교에 부적응, 학교중단, 문화예술의 무관심, 정서 불안정, 가족 구성원간에 신뢰가 부족하며, 부모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출을 하게 된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집단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고, 인내심 부족,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변화를 갈망하는 특징 등을 가지고 있다. 김성곤, "비행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환경·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4, 8-23면.

63) 박병식, "청소년 폭력 예방법·제도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20면.

64) 광영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 40면.

65) 박상도, 앞의 논문, 6면.



기, 위협하는 쪽지 보내기, 아이템 훔치기, 야한 메시지 보내기, 게시판에 소문내기, 아이디 훔치기, 통신용어 오용, 사이버 성폭력, 악성댓글 올리기, 사진 합성, 유해사이트 운영 등이 유형에 해당한다.<sup>66)</sup>

위와 같은 형태의 학교폭력은 단순히 하나의 유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학교폭력이 일부 비뚤어진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 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폭력 행위도 빵셔틀<sup>67)</sup>이나 미니홈피에 욕설과 악성댓글 달기, 모욕감 주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하기, 신체폭행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의 학교폭력 사례에서도 학교폭력이 단순유형이 아니라 복합적인 양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 례1】 왕따 폭력

경기도 A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김동수(17·가명)군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학급 친구 3~4명이 걸핏하면 욕설을 퍼붓고 때렸다”고 한다. 내성적인 김군은 우울증에 빠져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왕따 폭력은 계속됐다. 급기야 2011년 9월 김군은 자살을 시도했다. 다니던 학원 3층에서 뛰어내렸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후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 김군은 철저히 외톨이로 지냈다. 같은 반 친구들도 그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다. 김군은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고 한다. 김군의 한 지인은 “지금도 (김군이) 자살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고 말했다.<sup>68)</sup>

#### 【사 례2】 노예계약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에는 이른바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돈이 많은 학생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을 빚댄 말이다.

66) 김범수, 앞의 논문, 9면.

67) 학교매점에서 빵을 사다주는 학생, 즉 심부름꾼을 말한다.

68) 조선일보, 2012. 1. 12, 52면.

자녀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학부모 연아무게(56)씨는 “친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돈을 갚지 못하면 빵셔틀(빵 심부름) 비슷하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한두번이 아니니까 애들사이에서는 노예계약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에 다니는 김아무게(15)군은 “최근에 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천원을 주고 학원 숙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며 “힘 있는 애들이 걸어서 부탁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선배들이 후배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이른바 ‘빵셔틀’이 많아 매점을 폐쇄하기도 했다고 한다.<sup>69)</sup>

## 第2節 學校暴力 關聯法令의 規範的 性格

### 1. 關聯法令의 特徵 및 內容

#### (1) 관련법령의 목적 및 특징

학교폭력대책법 제1조(목적)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 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동법 제2조)하고자 함이며, 학교폭력을 사법절차에

69) 한겨레, 2011. 12. 28, 2면.

의해 해결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학교폭력사건의 은폐·축소 관행을 바로 잡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에 폭력에 국한된다.

둘째,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폭력 신고의무 규정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에 불응하면 그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주요 내용

이 법의 주요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제6조),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연계하여 기본계획에 따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제9조 및 제10조).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며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보건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기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또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

다(제15조).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고위공무원과 전문 위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고(제9조), 동 위원회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제10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등에 교사 및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제12조 및 제13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또는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제16조 및 제17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제18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20조) 등이다.

## 2. 關聯法令의 規範的 性格

### (1) 특별법<sup>70)</sup>으로서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sup>71)</sup>가 구성되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에 대처해왔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70)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각급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다.

71) 선도위원회란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하여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선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그리고 학생선도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각급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된 이후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법의 적용을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도위원회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있다(동법 제1항).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는 징계수단을 학교에서의 봉사(제1호), 사회봉사(제2호), 특별교육이수(제3호), 퇴학처분(제4호)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29일에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17조 제1항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반조치가 규정되었으며, 그 범위도 확장되었다. 기존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열거된 4가지의 징계 수단 이외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등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징계수단으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를 확장하여 “심리치료”(5호)까지 포함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대책법의 관계를 보면, 우선 학교폭력대책법상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수단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사실과 1997년에 학생생활지도가 “징계”에서 “선도” 위주로 바뀌면서 사라졌던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과 유사한 “출석정지” 조치가 도입됨으로써 질적인 측면에서 한 층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sup>72)</sup>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의 제정을 통하여 기존의 “선도”에서 “징계”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법과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법 전체가 특별법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 (2)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와 소년법의 양립관계

학내·외에서 학생 간의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가 적용되어 선도 및 교육조치를 받게 되지만, 학교폭력과 동시에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법과 소년법이 동시에 적

72) 정세영, “누가 이들을 “어리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 대책국민협의회·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 주최, 학교폭력 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적 과제, 2005, 62면.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대책법과 소년법의 규율목적은 “선도·교육”과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로 구분된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소년법 소년에 대한 조치를 비교해보면,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sup>73)</sup>

그러나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의 정당성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법은 소년법과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학교폭력대책법은 주로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 퇴학 등과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를 관할하는 법률인 반면 소년법은 犯罪少年, 觸法少年, 虞犯少年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3)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 및 제17조의 법적 성격

학교폭력대책법의 성격은 형사법적 성격인지, 징계법적 성격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법의 규범적 성격이 문제되는 분야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정의)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대부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에 따라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징계조치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도로 소년법의 적용도 가능한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법과 소년법이 특별법대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양자가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 논의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가 형사처벌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본질적인 면에서 유사한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형법적으로 가벌성을 전

73)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사회봉사와 제7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소년법 제32조 제3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소년부판사가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제로 한 소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초동개입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법상의 규정은 학교조직을 둘러싸고 발생한 폭력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징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징계법이란 특별하게 중요한 조직이나 직업그룹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제수단을 말한다.<sup>74)</sup>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와 관련하여 징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① 학교폭력대책법 “학교”라는 특정한 조직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②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조치들이 과거에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선도 및 징계의 성격을 가지며, ③ 학교폭력대책법상의 선도·징계조치들이 일반 국민보다는 오로지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④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법상의 선도·징계조치가 적용되었다고 하여 소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집행실무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5)</sup>

반면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대책법상의 선도·징계조치와 소년법상의 법적 효과가 이중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인 문제와 별개로, 적어도 현행법 체계상 학교폭력대책법과 형법 또는 소년법은 징계법과 형사법이라는 형식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학생에게 징계조치와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학교폭력대책법에 형사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선도·징계조치를 결정할 때 소년사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 3. 學校暴力對策법상 “學校暴力”의 概念 및 適用範圍 檢討

74) 징계법은 각각의 조직과 집단에 특수하게 그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법, 변호사법 등을 징계법으로 들 수 있다. 이들 징계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징계유형에는 주로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이 있으며 징계에 특수하게 계급강등(군인사법), 제명, 또는 영구제명(변호사법) 등도 있다.

75) 이진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법정책」 제1권 제1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105면에서 재인용.

## (1)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 1) 정의 내용 검토

학교폭력대책법상의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폭력대책법의 내용적 적용범위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력의 개념규정을 상세히 고찰해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sup>76)</sup>내·외서 학생 간에 발생, ②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행위, ③ 이로 인한 신체·정신상의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며 3가지 개념요소가 요구된다. 현재의 이 조항은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88호로 일부개정 된 것인데, 개정 전의 조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구법<sup>77)</sup>과 비교하여 볼 때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 추가된 점, 재물손괴가 삭제된 점, 따돌림을 집단따돌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지 않은 2명 이상의 따돌림도 포함된 점, 학교폭력의 유형을 대통령이 아닌 상위법에 해당하는 법률에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삭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는 행위 대부분 형법상 규정한 범죄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만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은 포괄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sup>78)</sup>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의 3가지 개념요소를 조합 해보면, 학교폭력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법행위

76)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77) 구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78) 소년비행의 관점에서 청소년폭력 또는 학교폭력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따돌림, 금품갈취, 성폭력 등으로 나누고 있다.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77면 ; 최병각, “소년폭력사건의 처리 과정에서의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2007, 303면.



내지 범죄행위가 학교폭력대책법의 적용대상으로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력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형법상의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개념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반면 “따돌림”의 경우에만 형법상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형법상의 폭행죄나 상해죄, 협박, 약취·유인, 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공갈 등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sup>79)</sup>

## (2) 대상사건에 대한 검토

앞에서 언급한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과의 관계, 학교폭력대책법과 형법 및 소년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도출된다.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 제1항에서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교폭력의 발생한 경우에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년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법을 적용함을 의미한다.<sup>80)</sup>

이와 같이 다른 법률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sup>81)</sup> 예를 들어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의하면, 일정 부분의 경우 당연히 사법기관이 개입하여

79)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사례를 상세히 고찰해보면, 대부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이에 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사례집’, 2006, 참조.

80) 학교폭력대책법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대책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대시킬 경우에는 대상사건의 유형에 따라 동법의 적용범위가 그 만큼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오경식,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182면.

81) 원래 학교폭력대책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에서는 학교차원에서의 대응을 우선 시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소년사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의도했던 것 같이 보인다. 즉 적어도 경미한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권자의 사법기관에 대한 고소가 없는 한 학교 내에서의 선도·징계조치와 분쟁조정만으로 사태를 종결지우고자 의도했던 것 같다. 이진국, 앞의 논문, 95면.

해결하여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은 교육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등과 같이 명백히 형사법상의 범죄로 취급되는 사안들도 일선 학교 내에서 개입 또는 해결을 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적용유형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학교기관에 부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한 법이므로 대상사건의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폭력대책법은 형사법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sup>82)</sup>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법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성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를 두는 입법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기관의 관할 영역이 일정한 범죄행위에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사법기관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개입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학교폭력대책법상의 절차를 계속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3) 적용대상의 검토

#### 1)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등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을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82) 이진국, 앞의 논문, 104~106면.

일반적으로 형법상에서는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특별법상 폭력의 용어를 유추하여 형법상의 폭력을 살펴보면 살인(제250조), 강도(제333조), 상해(제257조), 폭행(제260조), 협박(제283조), 체포·감금(제276조), 강요(제324조), 공갈(제350조),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등이 있다. 각 폭력범죄들은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폭력의 개념이 폭행과 협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만 단정하기도 매우 어렵지만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유형들은 사실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다른 유형에 비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법에서는 불명확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폭행죄(제260조)

형법상 폭행이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 이외의 다른 여러 구성요건에 행위태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한 폭행이라는 구성요건 요소는 해당 범죄 구성요건을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내포를 가진 개념으로 해석된다.<sup>83)</sup>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의미하는 폭행의 개념은 폭행죄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여기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간접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광의의 폭행'에 해당한다.<sup>84)</sup> 신체에 대한 공격<sup>85)</sup>과 같은 역학적 작용뿐만 아니라 화학적·생리적 작용과 에너지 작용도 유형력에 포함된다. 역학적 작용에 해당하는 폭행으로는 구타행위, 발로차거나 밀치는 행위, 침을 뱉거나 손·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가까이 접근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면서 욕설하는 행위, 피해자의 신체에 가까이 접근하여 큰 소리로 폭언이나 욕설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화학적·생리적 작용에 해당하는 폭행으로는 심한 음향을 사용하여 청각을 자극하는 소음이나 전화를 계속 걸어 벨을 울리거나 심

83)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71면.

84) 김상호, 「형법각론」, 세종출판사, 2004, 53면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116면 ;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보정판 박영사, 2007, 61면.

85) 김성돈, 앞의 책, 73면.

한 악취가 나게 하는 경우 등이고, 에너지 작용에 의한 폭행은 빛, 열, 전기에 의한 고통을 주는 경우이다.<sup>86)</sup> 하지만 언어에 의해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무형력의 행사는 폭행이라 할 수 없다. 형법은 폭행과 협박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협박에 해당된다.<sup>87)</sup>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해지면 충분하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명중하지 않아도 폭행이다. 그러나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니다.<sup>88)</sup>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고의로 혐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행위(동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을 제외하고 폭력에 해당하는 폭행,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 폭력범죄를 제한하고 있지만, 학자들마다 폭력의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9)</sup>

그러나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게 되면 그 개념은 넓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친구를 발견하여 뒤에서 반갑다고 등을 치며 인사한 경우에도 폭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폭행의 개념을 '사람이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함으로써 구성요건 단계에서 폭행의 개념을 제한하고 있다.<sup>90)</sup>

판례에 의하면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

86) 박상기, 앞의 책, 65면.

87)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들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고 한다.

88)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되지만(대법원 1990. 2. 13. 89도1406),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의 집 마당에 던진 경우(대법원 1977. 2. 8. 75도2673),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잠겨진 방문을 수회 발로 찬 경우(대법원 1984. 2. 14. 83도3186)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89) 이에 대하여 폭언반복·고함쳐서 놀라게 하는 것이 폭행이 아니라는 견해는,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2003, 60면 ; 또는 전화벨을 계속 울리거나 소음을 일으켜 괴롭히는 것을 폭행이 아니라는 견해는,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95면 ;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0, 81면.

90) 대법원 1986. 10. 14. 86도1796.

을 잃은 교사가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sup>91)</sup> 또한 형법상 폭행죄의 범위를 다소 뛰어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되나, 단순히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sup>92)</sup>과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정의)의 개념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폭행 개념을 분류한다면 ①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구분하지 않는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내란죄(제87조)·소요죄(제115조)·다중불해산죄(제116조)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질 필요가 없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작용하면 족하다.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제2항)·특수도주죄(제146조)·강요죄(제324조)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폭행만을 의미하고 간접폭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협의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육체적·생리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으나, 심리적 고통을 비롯하여 성질상 무엇인가 고통을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sup>93)</sup> 폭행죄(제260조)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도죄(제333조), 강간죄(제297조)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도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하나, 강간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sup>94)</sup> 왜냐하면 강도죄의 폭행에 있어서는 이보다 낮은 유형력의 행사는 공갈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up>95)</sup>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법상의 폭력의 유형에는 언어적 폭력·심리적 폭력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형법상 폭행

91) 대법원 1980. 9. 9. 80도762.

92) 대법원 1990. 2. 13. 89도1406.

93) 정웅석·백형민,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8, 792면.

94)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79면.

95) 정웅석·백형민, 앞의 책, 792면.

죄의 범위를 다소 뛰어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상해죄(제257조)

상해란 건강이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sup>96)</sup> 정신적 건강훼손이나 신체적 건강훼손이나 기능훼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에 속한다. 상처를 입히는 것,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에 걸리게 하는 것, 수면·환각에 빠지게 하는 것,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는 것, 질병을 전염시키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sup>97)</sup> 두발이나 수염, 눈썹 등을 깎는 것과 같이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상해로 보는 견해<sup>98)</sup>가 있으나, 이들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하면 족하므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문신도 상해<sup>99)</sup>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는 싸움에서의 상해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법성조각을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싸움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격을 가할 때에는 정당방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sup>100)</sup>

체육시간 중의 운동경기 중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sup>101)</sup>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구기와 같은 운동경기 중의 상해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체벌을 가하는 것<sup>102)</sup>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sup>103)</sup> 체벌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권자의 체벌만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 차례 때린 정도<sup>104)</sup>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

96)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62면.

97) 박상기, 앞의 책, 48면.

98) 배종대, 앞의 책, 94면.

99) 오영근, 앞의 책, 54면.

100) 대법원 1999. 10. 12. 99도3377 ; 대법원 1968. 5. 7. 68도370.

101) 임 응, 「형법각론」, 법문사, 2005, 56면.

102)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03) 대법원 1986. 7. 8. 84도2922.

104) 대법원 1976. 4. 27. 75도115.

를 때리는 경우<sup>105</sup>),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훈계목적으로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학생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sup>106</sup>), 교사가 초등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지휘봉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sup>107</sup>) 등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이 체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체벌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상해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개념이 단순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도 포함하는 것인지, 심지어 어떠한 범죄행위라도 상해의 요소만 포함되어 있으면 학교폭력대책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상해와 관련된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도 학교폭력대책법상의 상해의 개념에 포함할 것인지, 학교폭력대책법은 아무런 명시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법상의 상해 개념을 목적론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형법상 단순상해로 국한시킨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단순상해의 불법성은 그 폭이 넓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법이 단순상해의 법정형에 정해진 불법성 중 어느 선까지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면 전치 2주의 상해와 전치 10주의 상해의 불법에 대한 가치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입하여야 할 것인지, 소년사법절차가 개시되어야 할 것인지, 학교폭력대책법에 상해의 개념은 형법상 단순상해로 보아야 하는지,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마련되지 않았다.<sup>108)</sup>

#### 4) 협박죄(제283조)

105) 대법원 2004. 6. 10. 2001도5380 판결에서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된다.

106) 대법원 1991. 5. 14. 91도513 ; 대법원 1978. 3. 28. 78도303.

107) 대법원 1990. 10. 30. 90도1456.

108) 정한중, 앞의 논문, 80면.

형법에는 협박을 행위수단으로 각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에 따라 협박의 개념은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① ‘광의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성질 및 고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해악고지의 결과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소요죄(제115조)·다중불해산죄(제116조)·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제1항)·직무강요죄(제136조 제2항)·특수도주죄(제146조)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협박죄(제282조)·공갈죄(제350조)·강요죄(제324조)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반드시 반항의사를 완전히 상실하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사람이면 위협을 느껴 반항 할 생각을 갖지 못할 정도이면 충분하다. 강간죄(제297조)와 강도죄(제333조)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강도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임을 요하지만, 강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

협박의 개념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 ‘해악의 고지’가 아닌 단순한 폭언 정도는 본 죄의 협박이 되지 않는다.<sup>109)</sup> 해악의 내용은 반드시 합리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필요가 없다. 고지된 해악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 해악’이라야 한다. 상당한 정도의 해악인가의 여부는 고지 내용을 주위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보통사람에게는 공포심이 생길 수 없는 해악이라도 소심자나 미심자와 같이 특수한 심리상태에서 공포심이 생길 수 있으면 협박이 될 수 있다.<sup>110)</sup> 반면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경우<sup>111)</sup>, 경찰관으로부터 반공법위반 혐의사실을 추궁당하고 뺨까지 얻어맞게 되자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고 한 경우<sup>112)</sup>,

109) 대법원 1986. 7. 22. 86도1140.

110) 김성돈, 앞의 책, 115면 ; 대법원 1995. 9. 29. 94도2187.

111) 대법원 1986. 7. 22. 86도1140.

112) 대법원 1977. 8. 29. 72도1565.



협박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법상의 협박의 개념과 형법상 협박의 개념과도 차이가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되나, 단순히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개념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3)</sup>

#### 5) 공갈죄(제350조)

공갈이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공갈행위, 공포심,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sup>114)</sup>

공갈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갈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힘의 행사이고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sup>115)</sup> 통고하는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면 '비밀을 폭로 하겠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절교를 통고하는 것도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면 공갈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학교 길에서 중학생을 동료 중학생이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자 겁이 나고 귀찮아서 요구하는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준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sup>116)</sup>

하지만 공갈과 관련해서는 절도나 강도 등이 학교폭력대책법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며 재산범죄에 있어서 개입의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 있다고 본다.

113) 대법원 1990. 2. 13. 89도 1406.

114) 오영근, 앞의 책, 449면.

115) 대법원 1961. 5. 12. 4294형상101.

116) 박상기, 앞의 책, 357면.

## 6) 강요죄(제324조)

강요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피강요자)에 대한 폭행, 협박의 경우에도 강요가 성립될 수 있다.<sup>117)</sup> 피해자에게 일정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을 폭행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단, 친구의 자살을 저지하기 위해 폭행, 협박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sup>118)</sup> 즉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한 폭행, 협박은 강요가 아니다. 형법은 제324조에서 강요죄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가 상당수 차지할 것인데, 예를 들어 답안지 보여주기, 강제적인 심부름시키기, 숙제시키기, 청소시키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하기 등이 그것이다.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 있다.

## 7) 손괴의 죄(제366조)

손괴의 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이다.

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 등에 유형력을 행사 하더라도 효용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손괴라고 할 수 없다. 배를 떠내려가게 하거나 자동차에 주차단속용 자물쇠를 채워놓거나 전자제품의 전원을 끊어 놓는 것과 같이 물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방법에 의해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효용을 해하더라도 상관없다.<sup>119)</sup> 예를 들어 타이어의 바람을 빼놓는 것, 조립하기 곤란한 상태로 기계를 분리하는 것, 음식물에 오물을 넣는 것, 그림에 낙서를 하는 것,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리는 것<sup>120)</sup> 등도 손괴에 속한다.

117) 박상기, 앞의 책, 112면.

118) 배종대, 앞의 책, 195면.

119) 대법원 2006. 12. 22. 2006도7219 ; 대법원 1992. 7. 28. 92도1345.

반면에 학교폭력대책법 구법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한 재물손괴 행위가 빠져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년범죄 중 재물손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sup>121)</sup> 학교폭력대책법 유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다.

## (2) 성폭력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폭력에 대한 인식 또는 연구 등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의적인 개념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을 둘러싼 개념 정의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또한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

우리 현행법상 청소년대상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형법"이 있으며 성폭력 범죄 중에는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1), 강간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 강도강간(제339조)의 죄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약함), 그 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약함)의 특수강간 등도 이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약함)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제7조)을 포함시켰다. 그 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금지(제29조 제2호, 제40조 제2호)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청소년대상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와 구별하여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성폭력범죄를 규제하는 기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상의 형벌규정은 성인 및 청소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연령의 대상자를 행위객체 또는 보호대상으로 하고

120) 대법원 1991. 10. 22. 91도2090.

12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1, 113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특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성범죄 가중처벌규정을 일부 마련하고 있고, 그 밖에 아동복지법(제29조 제6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와 관련한 형벌규정이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상 성폭력의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성폭력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포함한 것은 명확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하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법의 제정 당시에는 없던 학교폭력 유형으로서 2008. 3. 14. 법률이 개정되면서 입법적인 보완을 한 것이다.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 제2항에서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다른 법률이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중대한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루기 곤란한 측면이 강하다.<sup>122)</sup> 이에 대하여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sup>123)</sup>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자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sup>124)</sup>가 대립되어 왔다.

이와 같이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보면 경미한 범행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법에 개념을 포함하되 중범죄인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적어도 최소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폭행을 수단으로 한 성폭력은 범죄학적 개념이 다양하더라도 형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122) 사실상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년법 및 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연령인 주로 10세 미만의 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123) 김종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토론회 자료집, 2005, 55면 ; 박병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교육연구」 제25권 제5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 2005, 84면.

124) 김현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대한 검토의견”,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개발연구 토론회 자료집, 2008. 12. 9, 청소년예방재단, 2008, 참조 ; 이주호, “성비행을 통해 본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주최,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2005. 1. 11, 22면.

반면에 성희롱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성을 반드시 요소로 하지 않아도 되고 강간·강제추행의 간음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은 육체적·심리적·언어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 행위와 구분된다. 성희롱의 개념 요소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성폭력 개념에 포함시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하면 충분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제29조 제2호 및 제40조 제2호)상의 성희롱은 그 자체가 학대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범죄행위로 해당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희롱은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는 형법의 강제추행 등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성희롱을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성폭력은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 (3) 따돌림 적용대상 검토

학교폭력의 유형의 하나인 ‘따돌림’에 있어서 구법에서는 ‘집단따돌림’을 신법에서는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단으로 따돌림을 한 경우 학교폭력대책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지금부터는 2인 이상의 따돌림을 해도 학교폭력대책법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개정 의도로 볼 수 있다.<sup>125)</sup> 다만, 따돌림에 대한 유형과 한계에 대해 법적 개념 즉, 형법상 범죄와 결부 지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sup>126)</sup>

따돌림이란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또는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대상으로 여럿이 또는 개인이 돌아가면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여 반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sup>127)</sup> 또한 ‘폭력에 의한 생명·신체·자유·재산의 침해를 계속하거나 또는 말이나 따돌림에 의한 정신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이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서 취급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부정하려는 일체의 행위’<sup>128)</sup> 그리고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

125) 박윤기, 앞의 논문, 79면.

126) 집단따돌림의 경우는 형법상의 범죄와 결부지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상세히 고찰해보면 형법상의 폭행죄나 상해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과 결부지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진국, 앞의 논문, 110면.

127) 박경숙 외,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41면.

128) 노성호, 앞의 논문, 10면.

적으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sup>129)</sup>을 말한다. 반면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 제1호에 1의2에서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단일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지만 학교폭력대책법에서 분명히 정의를 내린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 벌어지는 따돌림과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대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실은 따돌림(왕따)의 예방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관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sup>130)</sup> 이에 대해 입법정책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즉 무시나 따돌림, 악질적인 욕설, 괴롭힘, 낙서, 물건 감춤 등을 통한 신체적·심리적 공격과 폭력이나 말에 의한 따돌림, 폭행 및 괴롭힘 등에 의한 생명·신체·자유·재산·정신에 대한 공격을 포괄하는 따돌림에 관한 법제정비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 대안으로는 “집단 괴롭힘과 관련한 처벌근거(반왕따법)”를 학교폭력대책법에 개정하려는 입법부의 노력과 다른 하나는 “따돌림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제정에 있어 미국에서는 2007년 12월 현재 46여개 주가 ‘반왕따법(anti-bullying laws)’을 시행 중이다.<sup>131)</sup> 10개주는 가해학생을 형사처

129) 대법원 2007. 11. 15. 선고2005다16034 판결.

130) 조선일보, “30만 아이들 ‘왕따’에 눈물”, 2011. 12. 28, 25면.

131) 미국 델라웨어주의 집단따돌림방지법의 내용은 ① 집단따돌림의 정의, ② 집단따돌림의 명확한 금지, ③ 학교구에 대한 집단따돌림방지지침 책정의 의무화, ④ 집단따돌림방지지침의 승인이 보조금수여의 조건으로 될 것, ⑤ 집단따돌림방지지침에는 반드시 사이버집단따돌림에 관한 규정을 둘 것, ⑥ 학교 내에 없거나 학교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의 전자기기 등을 사용한 집단따돌림을 처벌 대상으로 할 것, ⑦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방지에 관한 조직체계의 정비방법을 규정할 것, ⑧ 교직원이나 아동, 학생에 의한 집단따돌림 발견시의 통보를 의무화 할 것, ⑨ 집단따돌림피해자나 가해자의 부모, 보호자에 대한 집단따돌림행위의 연락절차를 규정할 것, ⑩ 주교육위원회에 대한 집단 따돌림 발생의 보고를 의무화 할 것, ⑪ 학교구의 집단따돌림방지지침의 책정기간을 명시할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8, 41면 ; 이상윤, “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의 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22면 ; 장맹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학교관련 법적 문제의 현안과 교육법 발전 논의」, 대한교육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8, 13면에서 재인용 ; 특히 뉴저지주는 지난해 텃거스대 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 기존의 법을 한층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켜다.

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스웨덴에서는 2006년부터 ‘반왕따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 괴롭힘이 폭행까지 간다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교묘하게 따돌리고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처벌할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집단 괴롭힘과 관련한 처벌근거(반왕따법)”를 개정하려는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적용대상 검토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음란·폭력 정보 등의 청소년 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sup>132)</sup>에 다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한다(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2조). 또한 ‘청소년이용음란물(제2조 제3호)’이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통해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은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현실공간과 분리된 가상공간이 아니며 해방구의 역할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이버공간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보내고, 취미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는 다기능 활동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133)</sup>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생 활동이 증가하고 학생의 삶에서 차지하는

개정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왕따 사건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연방정부에 보고해야하며, 정부는 신고 접수되는 즉시 수사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왕따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는 연방교육부에서 확인하고 그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학교마다 ‘핫라인’을 설치해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제3자가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11. 12. 29, 54면.

132) 청소년 보호법은 제10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⑤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3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상용용도는 1위가 온라인게임으로 18.0%를 차지했고, 2위는 음악감상 및 MP3파일 다운로드 15.1%, 3위는 메신저13.1%, 4위는 숙제를 위한 지식검색 12.0%, 5위는 미니홈피 꾸미기 및 친구홈피 방문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춘화 외, “인터넷채팅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청소년유행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악성댓글이나 대화방에서의 언어폭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sup>134)</sup> 최근 들어 인터넷 및 휴대폰(사이버 왕따)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중 가장 급증하고 있는 유형이다.<sup>135)</sup>

따라서 학생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이버범죄 피해에 취약한데, 그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기회에도 많이 노출된다는 점과 아직 정보윤리 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136)</sup> 이에 대하여 사이버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터넷 이용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학생 스스로가 사이버범죄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보윤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에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外國의 學校暴力에 關連된 政策 및 法令

외국의 학교폭력은 그 유형으로 학생 간에 폭력에서부터 교사에 대한 폭력, 기물 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피해의 정도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학교폭력의 원인 및 그 대응 방안이 다르겠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에 관련된 정책 및 법령을 살펴본다.

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36면.

134) 경향신문, “동급생이 노예처럼 학대...하루에 수십 차례 문자로 명령”, 2011. 12. 28, 면.

135) 김용수, “학교폭력분쟁조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활성화에 대한 연구”, 「변호사」 제39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9, 196면 ; 최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왕따’ 현황을 살펴보면, 사이버에서 남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에서 놀림은 인터넷(38.9%)·휴대전화(16.0%), 따돌림은 인터넷(29.3%)·휴대전화(0%), 욕설은 인터넷(20.4%)·휴대전화(30.5%), 나쁜 소문 퍼트리기는 인터넷(30.7%)·휴대전화(21.7%), 카메라로 몰래 촬영은 휴대전화(20.2%)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년 11월 전국 초·중·고생 126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조선일보, 2011. 12. 29, 52면.

13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한국문화진흥원, 2008, 80면.



## (1) 미국

미국 정부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의 폭력 및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에 “안전하고 마약이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법령”(The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94)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술, 담배, 마약의 사용 또는 소유, 판매 등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방지 및 마약남용예방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37)</sup> 이 법을 근거로 현재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폭력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 위기 개입, 기술훈련, 또래 상담, 지역사회 프로그램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안전대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된다. 반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책임 이외에도 학교안전 및 징벌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학교 교사, 부모, 학생, 검찰 및 경찰, 법원관계자, 지역사회 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에는 갈등해소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반 폭력아웃리치, 반 범죄행위 청소년위원회,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폭력 및 성희롱, 성 학대와의 전쟁과 같은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Olweus가 개발한 괴롭힘 및 피해자 개입프로그램, 청소년들의 공격성 감소와 피해자 화의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청소년 긍정적 선택훈련 등은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모범사례이다.<sup>138)</sup> 나아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안전지대”를 만들어 집과 학교를 통학할 때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위해 “마약 없는 학교지역”, “무기 없는 학교지역”을 지정하여 경찰 및 이웃이 순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고, 안전요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139)</sup>

137) 김경태,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182면.

138) 금명자 외,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13~14면.

139)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폭력실태조사, 2001, 95~97면.

미국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VPCA : The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for Adolescents)은 청소년들의 공격성 감소 및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세부내용에는 교훈적인 제시, 학생들의 묘안짜기 기법, 역할훈련 절차, 창의적인 숙제배경, 폭력을 주제로 한 토론, 분노를 인간의 정상 정서로써 검토하기, 분노 표현방법 알아보기, 또래상담 지역사회 프로그램,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안전대책 등을 포함 시키고 있다.<sup>140)</sup>

## (2) 영국

일반적으로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과 지역사회라는 개념의 틀 속에서 청소년 서비스의 전달과 지원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청소년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며, 실제적인 활동은 각 지방정부의 책임과 지원 하에 각종단체가 동반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하여 수행하고 있다.<sup>141)</sup>

영국에서는 학생들의 무단결석과 퇴학 및 자퇴생의 증가를 청소년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보고, 지방교육청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문제학생, 퇴학 및 자퇴생에 대한 교육대책을 세워 시행하는 법령(The Education Act 1997)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은 학교가 품행이 나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학교장이 입학식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에게 품행이 나쁜 학생은 징계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하고, 이를 알고도 교칙을 범하였을 경우 받은 처벌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지도(체벌금지) 및 학생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역할을 명시하는 법령(The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학부모와 경찰에게 학생지도 및 단속을 의무부여 조항으로 두고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법령(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제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서 학교장의 역

140) 지승희 외, 학교폭력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80면.

141) 김정태, 앞의 논문, 183~185면.

할과 책임, 학생들의 참여를 중시하여 이를 반영한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sup>142)</sup> 영국정부는 학생들의 무단결석과 퇴학 및 자퇴생의 증가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고 연 1만 여명에 이르는 퇴학 및 제적생들을 2002년까지 1/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학교 측에 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학생출결 문제를 담당하는 별도 직원을 두며, 문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설을 설치, 문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제적생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방교육청, 경찰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합동 대처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제도는 정부주도 하에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그리고 경찰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법령을 통해 청소년 비행, 범죄에 대한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각각 명시함으로써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교육청

‘The Education Act 1996’ 등의 법령에 의해 지방교육청은 문제 학생이나 무단결석생, 제적생에 대한 교육대책을 마련해 문제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대안교육은 주로 지방교육청의 지원으로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Pastrol Support Programme’과 지역교육청이 직접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Pupil Referral Unit’가 있다. 또한 지방교육청은 연령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Voluntary Sector Further Education College’와 계약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 2) 학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The Education Act 1997’ 및 ‘The School Standard and Framework Act 1998’ 등의 법령에 의해 학생지도에 책임을 지고 교내폭력 등 학생비행에 대처하는 학교교육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학교장은 학생이 입학할 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142) 조용한, “한국 청소년 폭력집단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8, 691-692면.

연대 서약을 받아 학생지도에서 일차적으로 학부모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연대 서약한 주요내용을 보면 학생은 교칙을 준수, 교복을 입을 것, 본교의 행동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 결석, 지각을 하지 말 것, 학습된 상태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이 있다. 학부모가 서약한 내용으로는 매주 일기를 읽고 서명할 것, 숙제를 다 마칠 수 있도록 할 것, 학부모 관련 회의에 참여할 것, 출석 등 시간을 엄수 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기 중에 휴가를 가지 않을 것 등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무단결석이나 학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출결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고 있으며, 문제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Pastrol Support Programme'을 운영하여 교내의 문제 학생을 특별 지도하고 일부학교에서는 퇴학생 및 제적생까지도 수용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 학부모

학부모는 의무교육 상한 연령 16세 이하인 자녀가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등의 법령에 의거해서 최대 3개월 간 상담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학생이 학교에 등·하교할 때 출석동행이나 감시를 하는 등 문제 학생에 대한 통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43)</sup>

### 4) 경찰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등의 법령에 의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 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정해 청소년을 통제하고 있다. 만일 경찰이 통행금지 위반학생을 발견했을 경우 그 청소년을 귀가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집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우선 경찰시설에서 보호를 한 후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청소년을 넘겨야 한다. 또한 경찰이 무단결석학생(16세 이하)을 발견했을 경우 발견 즉시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또

143) 윤종우, "각국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 제5호, 2005, 102면.

는 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 청소년을 데려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3) 일본

일본의 청소년 관련 법률에는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예방갱생법과 노동에 관한 법으로 근로청소년복지법, 직업안전법, 노동기준법 등이 있다. 기구관련법으로는 청소년문제심의회 및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설치법, 교육에 관한 법으로는 학교교육법, 교권기본법, 사회교육법, 청년학급진흥법 등 50여개가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직접적인 법은 아니지만, 폭력과 관련된 법으로 1992년 3월 제정된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민사개입 폭력의 효과적인 단속을 촉진함과 동시에 대립항쟁에 의한 시민 모두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일본의 경우 학교내 폭력에 대한 것은 교육관계법에 따라, 학교 밖의 폭력에 관한 것은 형사관계법에 따라 법적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sup>144)</sup>

학교 내에서의 폭력예방 대책으로는 학교에서의 생활지도협력체제 강화, 교내의 교사연수 활동 강화, 양호교사의 적극적 역할, 보건주사의 역할중시, 자연교실의 설치 운영<sup>145)</sup>, 학교교육상담활동의 조직화 및 체계화<sup>146)</sup>, 출석정지제도의 실시, 가정과 지역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의 예방대책을 들 수 있다. 학교 외 폭력예방대책으로는 교육위원회,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소년보호센터, 방법협의회(전국 9,752개의 방법연락소가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설치되어 활동), 어머니회, 학교경찰연락협의회(전국에 2,600여개 조직), 직장경찰연락협의회(전국에 440개 결성) 등 폭력예방을 위하여 여러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sup>147)</sup>

일본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정책의 세부내용에는 ① 학생이 안고 있는 마음의 문제로의 대응, ② 학생의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전개, ③ 학교, 가정,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결되는 '행동연계' 시스템 만들기, ④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144) 김경태, 앞의 논문, 183면.

145) 자연교실이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집단학습생활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활동 장소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설치 운영 중이다.

146) 교무부장에 교육상담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은 전체 중, 고등학교 중 64.3%에 달한다. 상담의 유형으로는 학생전원, 지도를 요하는 특정의 학생,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47) 김경태, 앞의 논문, 184~185면.

선고, 교육철저, ⑤ 이지메 근절을 위한 교사연수활동과 가정, 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148)</sup>

---

148) 지승희 외, 앞의 논문, 90면.

## 第3章 學校暴力의 原因과 現況 및 認識分析

### 第1節 學校暴力의 原因 및 對處의 問題點 檢討

#### 1. 學校暴力의 原因

청소년폭력이나 학교폭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은 학교 내의 원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방대하다. 기존 청소년비행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개인적 원인에서부터 가정, 학교, 사회의 다양한 원인들이 학교폭력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49)</sup> 이는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행동을 동시에 저지른다는 문제행동 이론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 개인별로 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한 요인들의 비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서부터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들을 통합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 (1) 개인적원인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감정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며 각종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과격하게

149) 김성근, 앞의 논문, 28면.

표현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한다. 특히 급격한 신체성장으로 인한 성적욕구의 원만한 해결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공격성이론에 의하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성적욕구불만이 학교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sup>150)</sup> 우리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적욕구를 지혜롭게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나 교육은 소홀히 한 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억압된 청소년들의 성적욕구가 생활주변에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환경요인들에 의해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표출됨에 따라 청소년 폭력은 더욱 심각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sup>151)</sup>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많이 나타나는 개인·심리적 특성은 공격적 성격장애이다. 공격적 성향이 강하게 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공격적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특성은 정서불안인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모든 상황에 대한 좌절과 불만이 거듭되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의욕상실을 느끼게 된다.<sup>152)</sup> 또한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 분노의 표출 또는 힘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행동을 가중시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폭력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은 충동적이다. 충동적인 학생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고, 타인에 대한 우호성과 책임성이 적고, 채워지지 않는 기대, 혼자만의 고민,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저하, 고립, 불안감, 이루어지기 힘든 희망과 그에 대한 욕구 등으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사회적 기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고통을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능력이 부족하다.<sup>153)</sup>

둘째,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시

150) 노성호, 앞의 논문, 24면.

151) 유성경 외, “청소년비행예방 및 개입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상담연구」 78,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32면 ; 이상균, “가출·비행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 전략의 모색”, 「사회복지리뷰」 제10집, 2005, 87~112면.

152) 도기봉, 앞의 논문, 16면.

153) 이석형,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6, 20면.



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침해하는 것에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죄의식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셋째, 개인의 인지적 요소, 사회적 능력, 성격적 특성 등도 폭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낮은 IQ와 도덕적 추론 수준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가진 학생이 높으며, 자기통제력의 부족과 공격적인 영향으로 친구들에게서 따돌림과 소외의 원인이 된다.<sup>154)</sup>

넷째, 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은 감정이 욕구를 충분히 경험하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들은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거나 화를 참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인식에 있어 보통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해석하여 갈등 해결 방식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위한다.<sup>155)</sup>

다섯째, 폭력을 행하는 학생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갖는 자신의 유능감과 가치에 대한 느낌,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 자신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등에 대해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sup>156)</sup> 특히 자아존중감은 비행이나 폭력에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비행발생률이 높았다.<sup>157)</sup> 한편 학교폭력의 가해자 집단은 일반집단과 같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폭력행동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158)</sup> 이 밖에 정신적 문제, 감각추구성향, 외향성, 뇌의 손상, 신경학적 문제, 주의결핍과잉행동장애, 행위 장애, 우울 등은 폭력이나 비행과 관련되어질 수 있다.<sup>159)</sup>

---

154) 김준호, 앞의 논문, 22면.

155) Bernstein, J. Y., & Watson, M. W.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1997, 483~498 ; 이상균, 앞의 논문, 23면 ; 김 경, “청소년 비행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5, 32면.

156) Kirby, L. D., & Fraster, M. W.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t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 C.: NASW Press. 1997, 10~33.

157) Rosenberg, M.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1978, 272~294.

158) 이상균, 앞의 논문, 24면 ; 이춘재 · 광금주,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13(1), 2000, 65~80면.

159) 문용린 외, 앞의 책, 79면.

## (2) 가정에서의 원인

가정에 관련된 원인으로는 결손가정,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가족의 빈곤, 가정불화, 가족내 폭력경험, 부모의 감시나 훈육스타일, 부모의 범죄성향, 가정교육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sup>160)</sup> 가정에서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가족의 빈곤, 가족내 폭력경험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161)</sup>

첫째, 결손가정은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가정임을 의미한다. 부족한 ‘무엇인가’의 의미를 3가지 형식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족을 형성하게 해주는 생물학적 구조적 변인 중 어느 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어느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은 구조적인 결손가정이라고 하며, 자녀양육 교육에 관한 가정의 사회·문화·물리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 가정은 문화적 결손가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 과정에 있어서 부모가 발휘할 수 있는 자녀양육에 관한 심리적 변인이 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또는 양육에 관한 부모의 통제와 보호기능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것은 심리적 결손가정이라고 판단되어 진다.<sup>162)</sup> 따라서 결손가정에서는 부모의 결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보호적·교육적 기능이 결여가 문제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각 구성원들의 새로운 역할 및 재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결손가정은 대체로 결합상태·연대감·동질감이 미약하고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세하는 등 결손가정의 청소년은 성격·인격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비행 청소년과 결손가정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163)</sup>

둘째, 부모는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

160) 도기봉, 앞의 논문, 19면.

161) 이석형, 앞의 논문, 23면 ; 이애령,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3, 27면.

162) Boyd McCandless, R & Richard. Coop., Adolescents(Holt Rinehart Winston), 1979, p. 241.

163) 김성곤, 앞의 논문, 21면에서 재인용.

의 빈곤은 학교폭력의 가해행동과 상관관계를 갖는다.<sup>164)</sup> 먼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민주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수용하고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어 자녀의 폭력행동은 감소하게 된다.<sup>165)</sup>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비행이나 폭력행동은 감소하게 된다.<sup>166)</sup> 청소년의 만성적인 폭력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인 태도, 과잉보호, 무관심, 비일관적 부모양육태도를 가진 가정에서 주로 발견된다.<sup>167)</sup> 그러므로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민주적 양육태도이며, 오히려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이거나 수용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sup>168)</sup>

특히 부모의 폭력허용적인 양육태도 역시 학교폭력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맞고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자녀를 꾸짖는 방식으로 훈육을 한다. 하지만 때리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훈육하기보다는 방관하고 지나가는 경우 태반이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년들로 하여금 폭력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up>169)</sup>

또한 가족의 빈곤은 금전부족과 같은 절대적 빈곤과 희망하는 문화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에게 자신감 결여, 자기비하, 좌절감 등을 야기 시키며 특히 상대적 빈곤은 폭력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빈곤에 의한 양친의 무기력 또는 생활의 무질서 등은 방임과 폭력을 파생시키는 요인이 되며,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가족의 물질적 어려움과 관계가 있다.<sup>170)</sup>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사회적 측면은 물론 이들의 가족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sup>171)</sup>

164) 이상균, 앞의 논문, 47면.

165) 도기봉, 앞의 논문, 19면.

166) 이문자, 앞의 논문, 27면.

167) 노호래·이신욱, 앞의 논문, 1~35면 ; Loeber, R.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990, pp. 1~14.

168) 오창순·송미숙, 앞의 논문, 136~161면.

169) 노성호, 앞의 논문, 25면.

170) 도기봉, 앞의 논문, 21면에서 재인용.

171) 이춘재·곽금주, 앞의 논문, 65~80면.

셋째, 선행 연구자들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당수는 가정폭력 경험과 동시에 부부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부간의 싸움이나 갈등은 중요한 요인으로서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15배나 높았다.<sup>172)</sup> 그리고 부모의 심한 체벌은 아동의 폭력행동과 상관성이 높고, 훈육적 체벌의 효과도 마찬가지이다.<sup>173)</sup> 가정의 사회화 과정에서 폭행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비합리적인 신념과 반사회적 행위를 표출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폭력적 사회화 과정은 폭력의 학습과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폭력적 훈육이 일종의 학습기재로서 작용되며, 이는 폭력피해와 가해에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sup>174)</sup> 또한 가족 내에서 배우자에 대한 학대의 유무는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유형의 학대에 대한 유의미한 위기요인이 되고,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심할수록 아동에 대한 학대 역시 심각하였다.<sup>175)</sup>

한편 학교폭력의 행동과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Baldry와 Farrington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가해자의 공격적 반응형태는 부모 사이의 잦은 충돌과 불화로 부터 비롯되며, 공격적인 언쟁이 잦은 부모는 아이들과 불안한 관계를 형성하여 육아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sup>176)</sup> Tajima는 구체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학대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체벌 및 언어적 학대의 주요 위기요인이 되는가를 아동과 양육자 및 가족의 특징에 따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족 내에서 배우자에 대한 학대의 유무는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학대유형에서도 위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sup>177)</sup> 그리고 Dopke는 폭력을 행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좀 더 반항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비폭력적인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순종적인 것으로 보았다.<sup>178)</sup> 결국 가족 내 갈등이

172) 김정옥·장덕희,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99-1 연구보고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1999, 10면.

173) Eron, L. D., Huesmann, L. R., & Zelli, A. The role of parental variables in the learning of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1991, pp. 733~748.

174) Glover, D. Gough, G., & Johnson, M. Bulling in 25 Secondary Schools: Incidence, Impact and Intervention. *Educational Research*, 42(2), 2000, pp. 140~156.

175) Ross, S. M. Risk of physical abuse to children of spouse abusing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0(7), 1996, pp. 589~598.

176) Baldry, A. C., & Farrington, D. P. Bullies and delinquents: Personal characteristic and parental style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 2000, pp. 17~31.

177) Tajima, E. A. The relative importance of wife abuse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gainst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4(11), 2000, pp. 1383~1398.

많아서 부부간의 불화가 잦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족 내 폭력경험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에 관심을 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 내 폭력경험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9)</sup>

가족 간에 불화 즉,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간 불화는 자녀에게 생의 목표와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정서를 불안정하게 해 폭력을 유발하게 한다. 또한 가해학생들은 가정폭력경험 후유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학교적응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가정 폭력경험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sup>180)</sup>

### (3) 학교에서의 원인

학교에 관련된 원인으로는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 구조적 문제, 학업 성취의 조절 등으로 인한 열등의식, 또래 집단의 영향, 폭력에 대한 교사태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sup>181)</sup> 먼저 우리나라의 학교는 상급학교에 진학이 가장 우선권을 두고 학교 내의 제도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업의 성취는 곧 성적 및 대학의 순위에 의해 평가되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대한 좌절 및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불만 등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자신보다 열등한 학생에 대한 괴롭힘, 폭력 등으로 해소하게 됨으로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업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는 학교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현장'이라 할 수 있다.

178) Dopke, C. A., B. W. Lundahl, E. Dunsterville, & M. C. Lovejoy. "Interpretations of child abuse compliance in individuals at high-and low-risk for chil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7, 2008, pp. 285~302.

179) 김정옥·박경규,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연구"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중심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호, 2002, 93~115면 ; 김재엽·이순호,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1, 99~112면.

180) 장덕희, 앞의 논문, 65~91면.

181) 박상도, 앞의 논문, 29면.

또한 낮은 성적, 교사의 무관심이나 부적절한 대우, 낮은 학문적 자아개념 또는 학업흥미, 문제 학생과의 교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성적, 학업능력 또는 학교에서 학과수업이외에 전인교육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학생들에게 원만한 인관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별로 시키지 않는 현실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에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교에서의 실패는 청소년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sup>182)</sup>

둘째, 구조적인 원인에는 과밀한 학교와 과밀학급구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하루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어 학교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과밀한 학급, 학생능력을 제한하는 것, 행동적 제약과 순응하기를 요구하는 것 등은 폭력행위를 유발하기 쉬운 구조이다.<sup>183)</sup> 이러한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학교건물과 운동장, 교사의 감독이 미칠 수 없는 후미진 건물구석에서의 신체적·물질적 폭력발생에 영향을 미친다.<sup>184)</sup> 이처럼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이 학교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것은 폭력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185)</sup>

셋째, 또래 집단의 영향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sup>186)</sup>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질 수 없는 유대 관계를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찾게 되는데, 이러한 또래들과의 관계 밀착도가 높아질수록 그 또래 집단의 영향은 더 강화되어 행동이나 언어 사용이 또래에게 인정받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래집단의 인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또래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그 속한 집단이 조직적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폭력의 성향이 없던 청소년도 그 또래 집단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동조하여 조직적 폭력을 가하게 되고 이것이 서로의 비행행동을 부추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sup>187)</sup>

182) 박효정 외,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RR 2006-08, 한국교육개발원, 2006, 34면.

183) Rossman, S. B., & Morley, E. Introduction. *Education and Urban Society*, 24(4), 1996, pp. 395~411.

184) 도기봉, 앞의 논문, 24면.

185) Craig, W. M., Pepler, D., & Atlas, R. Observations of bullying in the playground and in the classroo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1), 2000, pp. 22~36.

186) Simons, R. L., W, C., Conger, R. d., & Lorenz, F. O. Two routes to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early and late starters in impact of parenting and deviant peers. *Criminology*, 32, 1994, pp. 247~276.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또래관계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성장 발달기를 거치는 동안 또래에게서 받는 영향은 부모님에게서 받는 영향보다 더 커진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관계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래집단과 이러한 관계에 있는 가해학생은 비행친구들과의 교류가 많고 학교를 싫어하거나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학교에서의 실패, 비행친구와 어울리면서 비합법적인 행동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동료집단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갈등상황에서 협동이나 타협과 같은 긍정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해, 폭력과 같은 쉬운 문제해결방안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88)</sup> 반면 폭력에 대한 교사태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거나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즉 학교폭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로부터 처벌받지 않으면 이는 폭력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학교폭력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sup>189)</sup>

한편 학교폭력은 처벌이 약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 향상과 경쟁에 내몰린 교사와 학생이 모두 피로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업에 쫓겨 교사가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쉽지 않다. 수업에 지친 학생들은 역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욕하는 성질을 참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학생들을 괴롭힌다. 교사는 개인적인 일과 학사일정에 치여 학생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여력이 없다. 피로한 학생들은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덜어 내려한다.

#### (4) 지역사회에서의 원인

최근 산업화로 인하여 청소년폭력은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사회의 상대적 빈곤과 계층차이에 오는 부모

187) 문용린 외, 앞의 책, 371~372면.

188) 이석형, 앞의 논문, 25면.

189) 이은정, “학교체계요인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3, 63면.

권위가 무기력, 빈곤, 교육에서의 소외, 의료혜택 부재, 직업 및 생활수준의 심한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인 열등감, 다른 계층에로의 전환시도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포기 등이 있다.<sup>190)</sup>

학교폭력을 야기하는 지역사회의 원인 중에 우선적으로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유해환경은 청소년이 폭력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91)</sup>

첫째, 유해업소들이 주택가나 학교주변 등 청소년이 생활환경에 널리 산재해 있어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충동이 강화되어 학교폭력이 증가한다고 보았다.<sup>192)</sup>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의 결과가 두 요인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유흥업소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가지역, 공장지역, 아파트지역, 일반주택지역의 청소년보다 비행경험이 많았으며, 거주환경에 따라 비행의 유형에도 차이가 있었다.<sup>193)</sup> 따라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또는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폭력 행동, 우울, 불안, 분노 등 전반적인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더 높은 반면,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전반의 유해환경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퇴폐·향락산업의 번창은 무책임한 영업 행위와 부도덕한 상업주의로 돈벌이에만 급급하게 되었고, 업주들은 학생들에게 피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묵인하는 범죄문화의 온실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향락산업의 발달과 성인문화에의 노출은 학생들을 자극하고 있으며 불량만화·비디오방, 오락실, 유흥·숙박업소, 노래방, 당구장 등이 학교주변에까지 침범하여 민감한 학생들을 쉽게 유혹하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곳에서 전개되는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가담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또는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폭력 행동, 우울, 불안, 분노 등 전반적인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더 높은 반면,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194)</sup>

190) 도기봉 앞의 논문, 26면에서 재인용.

191) 이애령, 앞의 논문, 24면 ; 이석형, 앞의 논문, 28면 ;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37~39면.

192) 김명자,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2002, 241~250면.

193) 도기봉 앞의 논문, 26면에 재인용.

194) 김명자, 앞의 논문, 253면 ; Hampton, R. L., & Yung, B. R. Violence in communities of color: Where we were,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be. In R. L. Hampton, P. Jenkins, & T. P. Gullotta(Eds). Preventing violence in Americ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6, pp.



셋째, 각종 매스미디어에 의한 폭력의 모방과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폭력 성향을 조장하는 문화적 요인의 갈등 해결 수단으로서 폭력을 허용하는 분위기, 향락산업의 증가로 청소년 놀이 문화의 성인화, 사회적 외톨이 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적 서비스의 미흡, 방송과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서 범람하는 폭력오락물도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sup>195)</sup> 또한 폭력적인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sup>196)</sup> 이로 인한 공격적 사고는 다른 학생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특히 정서적·행동적·충동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은 더욱 쉽게 대중매체폭력의 영향을 받게 되며, 아동이나 학생들이 폭력매체에 노출됐을 때 희생자에 대한 동정심 결여, 폭력에 대한 둔감, 공격행동의 억제능력이 약화된다.

이 외에도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해체를 들 수 있다. 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가치체계를 크게 변화시켰고 가치관의 갈등은 학생들에게 적응곤란의 문제를 가져왔다. 또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공동체적 유대감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해체되었다. 이와 함께 약물남용, 정신질환, 패배감과 욕구불만 등이 가세하여 청소년들의 폭력사용을 한층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폭력적인 범죄하의문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교사나 부모, 성직자나 카운슬러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자기와 같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답답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와 가장 의논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문화는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청소년들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학교폭력 피해의 원인으로는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언제 그리고 어느 장소에 자주 출입하는가에 따라 범죄피해가 달라지며 학교주변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그 양태가 달라진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개인 행동양식

53~86.

195) 언론매체의 영향에 관한 외국의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폭력노출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매체의 내용이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묘사할 때에 더욱 나쁜 영향이 있으며 시청자별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랐다. 8~12살 사이의 아이들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으며, 소년이나 소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폭력적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더욱 나쁜 영향을 받는 경향 이었다. Blackburn, Ronald,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John Wiley & Sons. 1993, pp. 126~210.

196) Comstock, G. C., & Strasburger, V. C. media violence: Q & A. *Adolescent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 4, 1998, pp. 495~509.

이외에도 사회구조적 환경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sup>197)</sup>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요인이 학교폭력의 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에 의한 폭력접촉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學校暴力 對處의 問題點 檢討

정부 및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대책법을 제정하고, 수 많은 캠페인과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폭력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그 모습이 더욱 교묘하고 비인간적인 양상으로 변화고 있다. 우리사회는 폭력에 대해 매우 둔감하고, 특히 훈육목적의 체벌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매우 관대한 입장이다. TV나 영화, 뮤직비디오, 인터넷, 핸드폰 등 미디어매체에서도 폭력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부추긴다. 학교폭력은 주로 학생들 간에 발생하며, 그 후유증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격적 장애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5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당시의 정부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본부장으로 교육부차관을 임명하고 학교폭력추방대책 본부를 구성, 시·도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추방대책반을 운영, 폭력피해 신고함 설치, 학교별 책임제 강화, 학생선도 및 피해상담 강화,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학교담당경찰관제, 학교담당검사제 도입, 학교주변 취약지역 방범초소 증설, 유해환경업소 정화 및 단속, 우범학생명단 통보,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 대책들을 제시하였다.<sup>198)</sup> 그간의 정부대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연구가 미비하여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육당국과 경찰, 검찰,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시행

197) 권오명, 앞의 논문, 271면.

198) 이순례, 앞의 논문, 88~103면.

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대책들이 모두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과 검찰, 학교의 역할로 제안하여 학교폭력예방 근절 및 대책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검토한 후에 제시된 대처방안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단속적·획일적인 경찰의 정책

학교폭력현상에서 사건발생의 현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형사사법기관은 경찰이다. 뿐만 아니라 폭력이란 그 정도와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여야 하는 경찰이 학교폭력현상의 예방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로 학교폭력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찰은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학교담당경찰관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운영, 교외폭력 단속반 운영, 학교폭력 위험지역의 등급구분과 특별관리, 사랑의 교실 운영 등을 해왔다. 또 경찰은 201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1,719개교 20,053명이 명예경찰 소년단<sup>199)</sup>을 구성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 지침에 의하면 각급 경찰서에서 명예경찰 소년단을 대상으로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심신건강 증진 종목 중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명예경찰 무도학교’를 실시하고 있고, 명예경찰 소년단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도교사 및 경찰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학교폭력 방지활동’ 등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활동차원에서 시민경찰학교 개설 운영, 자율방범대 활동 내실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방범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 2008년 조두순사건, 2009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2010년 여(女)약사 납치살인사건 등 매년 발생하는 강력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범용 CCTV설치 확대토록 하고 이와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sup>200)</sup>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나름대로 대

199)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23면.

200)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29면.

책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특성상 사전예방적인 지도와 선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경우 예방보다는 단속적 측면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경찰 대처방안은 학교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접하는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나 학생대표, 종교단체 등을 전혀 구성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농어촌과 중·소도시, 대도시 그리고 인문계, 실업계, 남녀학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접근하여 외양상 완벽한 지휘감독과 보고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이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오히려 제약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담당경찰관제도만 하더라도 경찰청 지침에 의하면 이들은 비행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동향파악과 정보수집, 폭력서클에 대한 계보파악과 그 구성원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도입의 필요성, 주요 담당업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학교 방문으로는 불량학생들에 대한 동향파악 및 문제학생과의 상담활동 등을 내실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주변에 방범용 CCTV(녹화 가능한 폐쇄회로)가 90%<sup>201)</sup> 이상 설치되었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실정에 있다. 이는 현 경찰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전에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 대책이 개발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책들은 여론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전시효과에만 급급하여 제시만 되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학교폭력의 문제가 언론에 심각하게 보도되면 대책을 발표하고 부산을 떨다가 언론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아무야되어 버리곤 한다. 따라서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현재의 대처방안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2) 검찰의 활동영역의 중복

20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2011, 20면.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폭력대책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하 운동)이다. 이 운동의 기본취지는 학생들이 청정한 풍토의 면학분위기 아래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밝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운동의 기초는 1991년 서울지방경찰청 동부지청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후 1999년 5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차원의 예방운동으로 승화시키고 검찰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한 분석·평가를 지원하며 범국민적 운동으로 학교담당검사제를 운영, 정부기관간과의 업무조정과 협조를 위하여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수의 자원봉사자를 충원 등 조직화 또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개설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필요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경찰 및 검찰, 교육당국, 많은 시민단체 등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왔다. 경찰청의 학교담당경찰관제도와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센터(해당국번 0118), 형사계 대표전화 그리고 검찰청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신고전화 1588-2828,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긴급전화 1388, 교육인적자원부의 폭력없는 학교만들기(School Violence-Zero Project)와 교육청 신고전화 1588-7179, 청소년폭력예방재단 585-9128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의 활동은 학교폭력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거나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때문에 최근 경찰청은 이러한 기관의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202)</sup>

검찰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역시 학교담당검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함께, 자원봉사자 관리의 어려움, 소년선도활동에 필요한 능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피해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관련 교사들 스스로가 신고를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신고전화 이용을 기피<sup>203)</sup>하는 등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범죄수사 및 기소유예를 전담하는 검찰에서 캠페인과 선도활동 등을 행하는 것보다는 성격상 경찰의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는 이미 경찰에서도 신고전화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학교담당경찰관제도를 시행하는 등 검찰과 비슷한 유형

20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신고전화,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 보도자료. 212. 1. 11.

203) 이순례, 앞의 논문, 100~101면.

의 학교폭력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담당검사도 결국 현장에서 관할 경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 (3)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

학교폭력의 주요 발생지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생지도에 그다지 커다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상담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학교폭력의 피해사실 신고는 피해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서 비롯된 인성교육의 부재와 교사의 권위실추<sup>204)</sup> 등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학생 생활 담당교사나 학급담임교사직을 교사들이 기피하여 이른바 3D직책으로 전락하였다는 교육계내부의 지적이 매우 안타깝다.<sup>205)</sup> 이와 같은 현실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비행 또는 일탈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나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여건을 교육계 스스로가 갖추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폭행과 교사상호간 폭력시비, 학생에 대한 빈번한 성추행사건 등 잦은 언론보도도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신뢰감을 상실케 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지도나 조정 역할을 어렵게 한다.<sup>206)</sup> 나아가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정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된 사건들이 다수 밝혀져 학교 측에 불신을 더욱 깊게 하였다.

다음은 2011년 12월 초에 국내의 한 언론사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기획 시리즈로 게재한 기사 중 일부를 옮겨온 것이다. 이 사례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단일한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204) 교사들도 “피해자” 학생들에 폭언 들어도 속수무책, 한겨레, 2012. 1. 12, 8면 ;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2009년도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사건으로 총 108건으로 전체 교권침해 사건(237건)의 45.6%를 차지했다. <http://media.daum.net>. 2010. 5. 10, 참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내 교원폭행에 대해 폭행죄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도에 교총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총 287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3배, 5년 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 이중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115건을 차지하고 있다. 교총 “학교 내 교원폭행, 가중처벌 받게 해야”, newsis·media daum, 2012. 5. 30.

205)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12. 2. 20,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발표하였다.

206) 담임·가해학생 부모 “당할만하니 당했겠지”, 한겨레, 눈·귀 달아, 2012. 1. 12, 9면.

학교폭력은 이렇게 막자 / <中> 교사가 적극 나서게 만들어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교사 … 승진 불이익 주며 책임 물어야

지난달 18일 밤 서울 양천구 S중학교에 다니던 A(14)양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A양이 남긴 유서에는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다’는 글과 자신을 괴롭혔다는 학생 5~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A양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7개월 전부터이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학교장에게 찾아가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다음날 등굣길에 한 교사가 가해학생 1명을 붙잡고 “네가 A양을 괴롭혔니?”라고 물었다. 이후 가해학생은 교실에서 ‘부모에게 고자질을 했다’며 A양에게 욕을 하고 더 심하게 괴롭혔다. 3개월 후 딸의 팔뚝에 멍이 든 것을 본 어머니는 교사에게 전화해 “○○군이(딸을) 때렸다고 한다.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학교로부터 조사결과를 듣지 못했다. 이후 A양은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다시 보복을 당했고, “다시는 학교에 찾아오거나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빌었다.

A양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A양이 유서에서 지목한 가해학생들이 출석을 거부해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S중 교장은 “애들끼리 말다툼하는 수준이었을 뿐 아이들이 A양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적은 없다”며 집단 괴롭힘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 A양의 어머니는 “괴롭힌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엉망으로 대처해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관련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부모나 가해학생의 부모 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에도 학교 측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sup>207)</sup>

## 第2節 學校暴力的 實態 및 處理 現況

207) 조선일보, 2011. 12. 28, 5면.

## 1. 學校暴力的 實態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는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일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의 학교폭력 실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해석여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실상이 왜곡 또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1990년대 이후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얻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범죄통계에서 학교폭력을 독립된 항목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소년범죄”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중 학교폭력의 범죄건수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시한 학교폭력 관련 정책들도 학교폭력 실태에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아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각 기관마다 또는 여러 연구자들이 학교폭력의 실태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연구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상, 폭력의 발생장소 등 개념정의가 다르고 연구방법도 각기 달라 상호 비교하거나 추이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sup>208)</sup>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 마련에 앞서 일차적으로 학교폭력의 실상이 어떠한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기존 연구자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실상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는 1990년대를 시작으로 이 중 중요한 연구 몇 가지를 학술적 및 비(非)학술적 연구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 (1) 피해조사 결과

208) 문용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태조사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 5면.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는 1990년대 이후로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학술적인 차원에서 1990년대의 체계적인 표집방법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대표적인 실태조사를 보면, 먼저 청소년범죄피해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에 의하면,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36.1%가 폭력피해를 경험하였으며 발생장소는 주택이나 집 근처에서 33.7%가 일어났고 학교 안에서는 25.8%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전체학생의 1/3이상이 학교 내·외에서 폭력피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 방법을 통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sup>209)</sup> 이 외의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조사연구들로는 73.4%의 학교폭력 피해율을 보고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210)</sup> 김준호·김선애는 전체 조사 대상학생의 37.6%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낸 바 있다.<sup>211)</sup>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폭력피해 실태를 재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폭력피해율이 무려 57.1%로 나타났다.<sup>212)</sup>

임영식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다소 확장하여 괴롭힘, 따돌림, 언어적 놀림과 헐뜯,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학교폭력을 언어적 놀림까지 포함하였을 때에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72.1%나 차지하였다.<sup>213)</sup> 1999년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58.9%, 반면에 가해경험도 63.5%로 보고하여 피해율과 가해율이 다른 연구들보다 다소 높았다.<sup>214)</sup> 이외에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율이 22.7%,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59.8%로 나타나고 있다.<sup>215)</sup>

이처럼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가 조사자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게 된 것은 조사지역의 차이 또는 초등학생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는가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연구자들이 사용한 학교폭력의 개념정의가 서로 다르거나 폭력의 유형에 관한 질문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조사가 행해진 지역들<sup>216)</sup>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209) 김준호,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18면.

210) 이춘화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34면.

211) 김준호·김선애, "학교주변 폭력 실태와 유형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1996, 45면.

212) 김준호·박정선·김은경,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1997, 37면.

213)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5권, 1998, 28면.

214) 이상균, 앞의 논문, 67면.

215) 황지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연구총서」 05-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38~42면에서 재인용.

216) 이장현과 우룡은 1990년대 학교폭력 피해조사 자료들을 수집·재분석하여 지역별 학교폭력 피해율의 평균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피해율 평균 47%로 전국 평

한편 학술적 성격이 아닌 조사연구의 경우 1995년도에 교육부가 실시한 1·2차에 걸친 대규모 조사에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1차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율이 7.2%였고, 2차 조사는 조사기간이 겨울방학 중에 실시된 탓에 피해율이 1차 설문조사 때보다 약 9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17)</sup>

반면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고자 설립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97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이 41.3%, 1998년도 조사에서는 61.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18)</sup> 그 이후 학교폭력에 관해 대표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던 2001년도 조사와 2002년도 조사에서는 신체적 폭력, 협박 등 언어폭력·금품갈취의 피해율이 9~10%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은 이보다 낮은 5~6%였던 반면에 집단따돌림은 20% 정도의 피해율을 보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2004년도 조사에서는 신체적 폭력, 협박 등 언어폭력·금품갈취의 피해율이 2~4%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은 0.63% 정도의 아주 낮은 피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19)</sup>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150개 초·중·고교 14,638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즉 폭력과 집단따돌림 피해학생 비중은 각각 조사대상자의 19.1%, 7.0%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 학교별 폭력피해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4.3%, 중학교 19.9%, 고등학교 11.3%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피해가 많았다. 폭력 장소는 교내 건물 뒤 28.4%, 교실 27.0%, 학교 화장실 18.3% 등 73.7%로 폭력이 여전히 학교 내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0)</sup>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1차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전체학생들 중에 약 89.7%로 상당히 높은 피해비율을 보였다. 피해유형은 협박 및 욕설 피해가 12.8%, 금품갈취 피해 9.7%, 신체적 폭행 피해 7.1%, 집단따돌림 피해 3.4%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로 학교에서는 교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균인 42.4% 보다 높았고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이 41.7%, 대전·충남이 41.5%, 대구·경북이 41.2%, 인천·경기가 34.6%, 광주·전남이 30.0%의 순이었다. 단 이 연구는 설문지 및 조사기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여러 연구들의 평균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수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이장현·우룡, “학교폭력의 최근동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34면.

217) 교육부, “학교폭력근절 및 대책”,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자료, 1995, 5-30면.

218) 김종기, “학교폭력의 실태연구와 대처방안”, 제2회 청소년폭력예방직무연수교육,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9, 23면.

219) 김은경·이호중,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21-02, 「연구총서」 06-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40면에서 재인용.

220)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참조.

학교 밖에서는 주로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하교 시간에 학교주변 놀이터, 공원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은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신고는 피해학생이 28%, 학부모가 25%, 교사가 23%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21)</sup> 2012년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39만 명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15.2%, 중학교 13.4%, 고등학교 5.7%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피해경험 응답률이 낮았다.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가운데 협박이나 욕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과 비방 등 언어폭력 51.2%, 집단따돌림 13.3%로 전체 응답유형 가운데 64.5%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교실 25.0%, 화장실 또는 복도 9.6%, 온라인과 휴대전화 7.7% 순으로 나타났다.<sup>222)</sup>

반면 제주도내 학교폭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신체 폭력 피해 경험이 30.4%, 그 다음으로 언어폭력 피해가 25.1%, 금품갈취 피해가 19.7%, 협박 및 위협 피해가 11.6%, 집단따돌림 피해 6.7%, 사이버·휴대폰 협박 피해가 4.2%, 성 접촉 피해가 2.4% 순으로 나타났다.<sup>223)</sup> 최근에 12.1%가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sup>224)</sup>

본 연구에서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어떠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품갈취가 12.6%, 가벼운 폭행이 8.7%, 괴롭힘이 7.4%, 언어폭력 및 위협이나 욕설이 7.0%, 집단따돌림이 5.7%, 집단폭행이 1.6% 그리고 기타가 전체의 57.9% 순으로 나타났다.<sup>225)</sup>

반면에 학교폭력 발생장소로는 학교주변 전체의 54.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학교 안이 36.0%, 동네주변 4.4%, 학원가 및 유흥가 주변 4.0%, 기타가 1.3%의 순으로 나타났다.<sup>226)</sup> 이러한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은 다양한 유형과 광범위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발생율과 피해정도가

22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2011, 10~13면.

222)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간발표”, 보도자료, 2012. 3. 14.

223)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2008 교내 학교폭력 없는 가정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초·중·고학생부장 연찬회, 2008, 165~170면.

224)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는 2012. 1. 18~2. 20일까지 우편 설문지 발송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제주에서는 전체학생 71,175명 중 16,158명(22.5%)이 참여했고 이 중 12.1%인 1950명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민일보, 2012. 3. 15, 4면.

225) <표 2-11> 참조.

226) <표 2-12> 참조.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學校暴力에 관한 團束 現況

### (1) 경찰의 단속 현황

학교폭력에 관한 경찰의 단속 및 수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경찰은 2005년도 학생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성폭행<sup>227)</sup>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 제정 이후 경찰의 단속활동으로 정부합동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두 가지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2005년 2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5개년 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신학기 초 3개월 동안 정부합동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자진신고 기간」(이하 ‘자진신고기간’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피해학생이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6개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고기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초범의 가해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선도 조건으로 불입건한 후 전문기관과 연계, 선도토록 하고 피해학생은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등 보호하고 있다.<sup>228)</sup> 후자는 경찰청에서 매년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학교폭력 중 특히 폭력서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표 1-1>은 지난 5년간의 학교폭력사범 단속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7년에는 학교폭력사범으로 21,710명이 검거되어 104명이 구속(0.5%)되었지만, 2008년에는 25,301명이 검거되어 구속이 184명이 구속(0.7%)되었다. 이 중 기타 범죄로 119명이 구속(5.8%)되어 그 수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21,957명이 검거되어 103명이 구속(0.4%)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29)</sup>

227) 연합뉴스, “밀양 성폭행 사건”, 2004. 12. 7.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여학생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남 밀양지역의 남학생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말한다.

228) 경찰청, 「경찰백서」, 2011, 93면.

2011년에는 2010년보다 검거인원(14.6%)과 구속(38%)인원이 감소하였지만, 지난 5년 사이에 경찰에 단속된 학교폭력사범은 증·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학교폭력사범 단속 현황(2007~2011년) (단위 : 명)

연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07	21,710	104	14,368	50	5,584	13	1,758	41
2008	25,301	184	16,295	35	6,961	30	2,045	119
2009	24,825	131	16,039	45	6,017	17	2,769	69
2010	25,175	143	15,537	28	5,992	31	3,646	84
2011	21,957	103	14,837	28	3,902	24	3,218	51

자료 : 2012. 경찰청, 내부자료(정보공개청구).

경찰청에서는 연중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전·후반기에 걸쳐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표 1-2>는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여준다. 단속기간의 차이로 인해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2010년의 집중단속에 비해 2011년의 경우 단속인원은 2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와 2011년도의 단속인원을 <표 1-1>과 비교하면 집중단속기간의 단속인원이 해당연도의 학교폭력사범 검거인원의 21~17% 가량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찰의 학교폭력사범 단속이 거의 대부분 집중단속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1-2> 경찰청의 집중단속기간 운영실적(2007~2011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운영기간	3.12~6.11	9.1~10.31	9.1~10.31	5.17~6.27	11.1~12.12	5.16~6.26	11.1~12.12
집중단속(명)	7,207	4,128	6,214	3,120	2,257	2,478	1,326

자료 : 2012. 경찰청 내부자료(정보공개청구).

229) 구속율을 보면 특히 2005년에 들어 구속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구속할만한 사건, 즉 죄질이 무거운 학교폭력사건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들어 검찰과 법원의 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구속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구속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법관행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표 1-3>은 2011년도 집중단속실적을 지방경찰청별로 나타낸 것이다. 2011년도에 집중단속기간 동안 경찰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상반기·하반기를 합쳐서 총 3,804명을 검거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의 가해학생에 집중단속실적이 793명이며, 이어 경기도 경찰청의 가해학생 집중단속실적이 780명, 부산지방경찰청의 가해학생 집중단속실적이 36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2011년 지방경찰청별 학교폭력 집중단속 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상반기	하반기
계	3,804	2,478	1,326
서울	793	562	231
부산	369	266	103
대구	304	206	98
인천	189	107	82
광주	94	69	25
대전	39	24	15
울산	74	46	28
경기	780	515	265
강원	77	31	46
충북	120	79	41
충남	68	31	37
전북	202	118	84
전남	199	100	99
경북	169	107	62
경남	283	187	96
제주	44	30	14

자료 : 2012. 경찰청 내부자료(정보공개청구).

## (2)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 현황

자진신고기간 동안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은 경찰이나 각 학교 또는 교육청에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 피해학생(혹은 제3자)의 신고는 “피해신고”로, 가해학생(또는 보호자나 교사)의 신고는 “자진신고”로 집계된다. 자진신고라고 해도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가해학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소년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사안이 중하면 구속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불구속입건하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 소년법원에 송치하게 된다.

<표 1-4>는 지난 6년간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중 전국 경찰서에 신고접수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경찰은 2010년 전반기에는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후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다.<sup>230)</sup> 전·후반기 합쳐 자진신고의 경우 가해학생이 총 6,612명 중 구속된 가해학생은 한 명도 없으며, 불구속 입건이 578명(8.7%), 불입건이 5,870명(88.7%), 소년부 송치가 164명(2.4%)이다.

반면에 단속 및 피해신고의 경우 5,392명 가해학생 중에서 불입건은 4,552명(84.4%), 소년부 송치는 840명(15.5%)이었다. 그리고 폭력서클은 88개 해체하였다. 2009년에 비하여 자진신고는 425명(3.6%)이 증가하였고, 단속 및 피해신고도 505명(8.5%)이 증가하였다.

<표 1-4>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경찰청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연도	기간	폭력 서클 해체 (개)	가해 학생 처리 (개)	자진신고(명)				단속 및 피해신고(명)		
				가해 학생 인원	조치			가해 학생 인원	조치	
					불입건	불구속	소년 부 송 치 등		불입건	소년 부 송 치 등
2005	3.4 ~ 5.31	794	11,205	8,610	8,429	181	-	2,595	1,912	683
2006	3.13 ~ 5.31	270	9,071	4,088	3,535	311	44	4,983	4,099	884
2007	3.12 ~ 6.11	211	14,266	7,059	6,471	448	140	7,207	6,387	820
2008	6.2 ~ 8.31	225	13,614	7,515	6,901	498	116	6,099	5,041	1,058
2009	3.16 ~ 6.15	126	11,579	5,682	4,348	931	403	5,897	5,074	823
2010	3.15 ~ 5.14	43	6,472	3,504	3,076	335	93	2,968	2,445	523
	9.1 ~ 10.31	45	5,532	3,108	2,794	243	71	2,424	2,107	317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 2011.

230)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등에 다니는 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으로 한정하며,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신고접수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되며,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 “자진신고 학생 최대 선처, 피해신고 학생 신분 비밀 보장”, 보도자료, 2009. 3. 13.

여기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의 유형이 가해학생의 자진신고인가 단속 및 피해신고인가 여부에 따라 처리결과가 크게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진신고를 한 가해학생 중 88.7%가 불입건으로 처리되고 입건은 8.7%에 그쳤음을 보아 확인할 수 있다.

자진신고 한 가해학생의 불입건은 2005년 정부부처합동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대검찰청이 제정한 「자진신고 학생 등 가해학생 처리지침」에 그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었다. 동 지침은 다음과 같다.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효과 달성을 위하여 사안이 다소 중하더라도 최대한 선처하고 자수, 초범, 사안경미, 피해자처벌불원 등의 사유로 경찰 불입건 건의할 경우 불입건 지휘 적극 검토 및 신속 지휘

※ 불입건 요건

- ①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진신고 청소년으로(부모, 교사, 친구 신고도 포함)
- ② 전회처분(전과, 보호처분)이 없으며
- ③ 피해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인적 피해진단 2주 이하이고
- ④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단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 불입건 조치. 단, 사안이 중한 경우(성관련 범죄·강도 등) 엄중 처벌

한편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은 신고와 자체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출석을 통지하거나 때로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의 협조를 얻어 수업이 끝난 후에 가해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이 때 피해학생의 처벌 희망여부, 가해학생의 재범여부와 죄질, 피해정도, 가해학생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입건 등 처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반면에 자진신고의 경우 가해학생이 스스로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하게 되어 형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진신고 한 가해학생의 대부분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도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불입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231)</sup>

231) 김은경·이호중, 앞의 논문, 49면.



### 3. 學校暴力의 被害學生 保護 및 加害學生의 善導處分 現況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현황

<표 1-5>는 지난 4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현황이다.

표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2009년에는 5,621건, 반면에 2010년에는 7,823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수는 2009년 대비 23.6%(2,016명) 증가하였으며, 가해학생의 수는 무려 36.5%(5,344명)가 증가하였다.

<표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건수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심의 건수	피해 학생수	가해 학생수
2007	8,444	14,190	22,903
2008	8,813	16,320	24,018
2009	5,621	11,733	14,605
2010	7,823	13,748	19,949

자료: 2011. 교육과학기술부(정보공개청구).

#### (2)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 1) 연도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을 <표 1-6>에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보호조치 가운데 심리상담 및 기타 조치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피해학생 14,190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10,341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조치를 받은 학생은 1,546명(11%), 일시보호를 받은 학생은 885명(6%),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은 318명(2.24%)

으로 나타났다.

<표 1-6> 연도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년도	유형	심의 건수	피해 학생 수	보호조치 현황(학생수)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치료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2007	초	145	482	391	19	11	3	7	-	51
	중	5,013	10,652	7,821	500	182	64	430	-	1,129
	고	3,286	3,056	2,128	366	125	9	57	-	367
	계	8,444	14,190	10,341	885	318	76	497	-	1,546
2008	초	207	354	302	13	10	7	3	-	32
	중	6,089	12,901	10,063	760	221	112	573	-	1,436
	고	2,517	3,065	2,238	255	129	17	70	-	383
	계	8,813	16,320	12,596	1,023	360	134	646	-	1,865
2009	초	151	273	226	5	10	1	1	7	23
	중	3,857	9,046	6,833	362	273	11	41	408	1,118
	고	1,613	2,414	1,732	130	185	13	20	174	160
	계	5,621	11,733	8,791	497	468	25	62	589	1,301
2010	초	231	294	240	4	14	2	2	5	27
	중	5,376	10,363	8,063	521	327	11	28	436	977
	고	2,216	3,091	2,264	249	249	10	43	167	248
	계	7,823	13,748	10,567	635	590	23	73	608	1,252

주 : 1) 2007년(2007. 3. 1~2008. 2. 28)과 2008년(2008. 3. 1~2009. 2. 28) 자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위학교에서 공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함.  
 2) 2009년(2009. 3. 1~2010. 2. 28) 자료는 단위학교에서 NEIS(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학교폭력통계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3) '보호조치'는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임시조치로서 학교폭력대책법 제 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기타조치와 별도로 집계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1. 8. 10.

2008년도에는 피해학생 16,320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12,596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조치를 받은 학생이 1,865명(11%), 일시보호를 받은 학생은 1,023(6%),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은 360명(2.2%)이다.

2009년도에는 피해학생 11,733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8,791명(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조치를 받은 학생은 1,301명(11%),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은

589명(5%), 일시보호를 받은 학생은 497명(4%),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은 468명(3.9%)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폭력대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은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도에 5%이며, 반면에 2007년과 2008년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

2010년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13,748명이고, 이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10,567명(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조치를 받은 학생은 1,252명(9%), 일시보호를 받은 학생은 635명(4.6%), 보호조치로 608명(4.4%),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은 590명(4.3%)으로 나타났다.

## 2) 학교 급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2010년을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학교 급별로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을 <표 1-6>에서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13,748명이고, 그 가운데 중학교가 10,363명(75.4%)으로 전체의 3/4정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3,091명(22%), 초등학교 294명(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피해학생 297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240명(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조치를 받은 학생은 27명(9%),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이 14명(4.7%)에 그쳐다.

중학교의 피해학생 10,363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8,063명(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조치를 받은 학생이 977명(9.4%),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이 436명(4.2%)이다.

고등학교의 피해학생 3,091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2,264명(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이 249명(8%), 기타조치를 받은 학생이 248명(8%)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 중 학급교체 및 전학권고를 받은 학생은 초등학생이 각각 2명씩이며, 중학생은 각각 11명과 28명, 고등학생은 10명과 48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1% 미만임을 알 수 있다.

## 3) 2009년도 유형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2009년도를 기준으로 유형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을 학교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먼저 가장 많이 일어났던 폭행으로 인한 피해학생 5,499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4,109명(7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조치를 받은 학생은 396명(7.2%),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이 386명(7.0%)이다.

금품갈취로 인한 피해학생 4,826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이 3,739명(7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조치를 받은 학생은 714명(14.7%),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은 205명(4.2%)으로 나타났다.

상해로 인한 피해학생 275명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은 167명(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이 50명(18%), 기타조치를 받은 학생은 36명(13%)으로 나타났다.

<표 1-7> 2009년도 유형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단위: 건, 명)

유형	심의 건수	피해학생 수			보호조치 현황							
		남	여	계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치료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보호 조치	기타 조치	계
상해	241	234	41	275	391	12	50	0	1	9	36	275
폭행	3,521	4,052	1,447	5,499	4,109	269	386	14	37	288	396	5,499
감금	2	1	1	2	2	0	0	0	0	0	0	2
협박	125	142	68	210	164	15	1	3	3	2	22	210
약취·유인	20	24	15	39	28	0	0	0	1	2	8	39
명예훼손· 모욕	52	32	52	84	58	3	2	0	3	3	15	84
공갈	8	19	6	25	10	6	0	0	0	0	9	25
강요 및 성추행	110	64	73	137	110	1	9	0	1	10	6	137
따돌림	149	100	98	198	150	6	6	5	9	13	9	198
정보통신망 음란·폭력	26	8	34	34	31	0	0	0	1	0	10	42
금품갈취	1,163	3,004	1,822	4,826	3,739	158	4	1	5	205	714	4,826
기타	204	226	170	396	223	27	10	2	1	57	76	396
계	5,621	7,906	3,827	11,733	8,791	497	468	25	62	589	1,301	11,733

주 : 2009년(2009. 3. 1~2010. 2. 28) 자료는 단위학교에서 NEIS(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학교폭력통계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0. 11. 30.

###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sup>232)</sup>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학생징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징계의 종류를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퇴학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각 급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의 징계의 종류는 ① 출석정지, ② 학급교체, ③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④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금지, ⑤ 전학 등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처분 4가지를 포함하여 총 9가지의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학교폭력대책법이 시행에 들어간 2004년 7월 30일 이후부터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는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하게 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연도별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1-8>과 같다.

2007~2009년에 선도처분으로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서면사과, 전학조치, 접촉 등 금지, 퇴학처분, 학급교체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2007년에 선도처분으로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11,029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 5,238명(22.9%), 특별교육 2,023명(8.8%), 출석정지 1,581명(6.9%),

232) 학교폭력 유형은 단위학교의 공시정보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이에 차이가 있다. 단위학교의 공시정보 기준으로 2007년에는 신체폭행, 협박, 공갈(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로 분류하였고, 2008년에는 정보통신 이용 관련과 성폭행을 추가하여 분류하였다. NEIS 기준으로 2009년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금품갈취), 강요 및 성추행, 따돌림,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 금품갈취, 기타로 분류하였다.

서면사과 1,405명(6.1%), 전학조치 1,144명(4.9%), 접촉 등 금지 346명(1.5%), 퇴학처분 109명(0.5%), 학급교체 85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선도처분으로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10,711명(44.6%)으로 가장 많고, 사회봉사 5,330명(22.2%), 특별교육 2,484명(10.3%), 출석정지 1,648명(6.9%), 서면사과 1,619명(6.7%), 전학조치 1,179명(4.9%), 접촉 등 금지 525명(2%), 퇴학처분 142명(0.6%), 학급교체 97명(0.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선도처분으로는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5,731명(39.2%)으로 가장 많고, 사회봉사 2,758명(18.9%), 특별교육 2,209명(15.1%), 출석정지 1,130명(7.7%), 서면사과 947명(6.4%), 전학조치 911명(6.2%), 접촉 등 금지 410명(2.8%), 퇴학처분 128명(0.8%), 학급교체 52명(0.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은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교내봉사와 사회봉사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특별교육과 출석정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학급교체는 계속 감소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2009년 유형별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

2009년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을 <표 1-8>에서 살펴보면, 폭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금품갈취, 따돌림, 기타, 상해, 협박, 강요 및 성추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폭행과 관련된 가해학생 9,240명 중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3,757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가 1,749명(18.9%), 특별교육 1,358명(14.7%), 출석정지 706명(7.6%), 전학조치 561명(6.1%), 서면사과 556명(6%), 퇴학처분 78명(0.8%), 학급교체 32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와 관련해서 가해학생 3,044명 중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은 1,230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 630명(20.7%), 특별교육 476명(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돌림과 관련된 가해학생 689명 중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234명(34.0%)으로 가장 많고, 서면사과 127명(18.4%), 사회봉사 107명(15.5%), 특별교육 101명(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연도별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2007년~2009년)

(단위 : 건, 명)

년도	유형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선도처분 현황(학생수)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007	신체폭행	6,263	16,601	909	230	71	822	8,132	3,844	1,465	1,068	84
	협박	145	308	58	5	2	28	128	55	39	25	8
	공갈 (금품갈취)	1,398	3,899	171	22	4	192	1,756	936	396	401	12
	집단따돌림	251	1,190	163	48	7	50	603	226	52	45	1
	기타	378	905	104	41	1	52	410	177	71	44	4
	소계	8,444	22,903	1,405	346	85	1,144	11,029	5,238	2,023	1,581	109
2008	신체폭행	6,198	16,101	1,023	323	48	784	7,381	3,753	1,721	1,029	83
	협박	172	380	37	16	5	24	168	86	33	29	6
	공갈 (금품갈취)	1,645	4,847	152	78	4	230	2,019	1,113	423	473	27
	집단따돌림	304	1,452	274	49	11	57	666	225	128	42	11
	정보통신	122	296	31	14	8	64	64	45	63	24	9
	성폭행	71	188	16	2	0	87	87	24	39	5	3
	기타	301	754	86	43	21	326	326	84	77	46	2
소계	8,813	24,018	1,619	525	97	1,179	10,711	5,330	2,484	1,648	142	
2009	상해	240	366	50	9	1	11	127	79	51	20	1
	폭행	3,509	9,240	556	225	32	561	3,757	1,749	1,358	706	78
	감금	2	16	10	0	0	2	2	0	2	0	0
	협박	125	274	20	22	2	16	97	47	56	13	1
	약취·유인	20	41	3	1	0	3	14	3	6	11	0
	명예훼손 및 모욕	52	116	16	4	0	3	45	16	24	5	0
	공갈	10	13	0	0	0	3	5	4	1	0	0
	강요 및 성추행	100	190	2	8	0	38	37	17	42	26	10
	따돌림	149	689	127	22	11	34	234	107	101	19	8
	정보통신망 음란·폭력	26	57	16	3	0	3	13	10	11	0	0
	금품갈취	1,157	3,044	85	56	3	203	1,230	630	476	274	24
	기타	205	559	62	30	3	34	170	96	81	56	6
소계	5,621	14,605	947	401	52	911	5,731	2,758	2,209	1,130	12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0. 11. 30.

### 3) 학교 급별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

<표 1-9>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학교 급별로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을 살펴

보면, 초등학생은 서면사과가 많았으나 반면에 중·고등학생은 교내봉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해학생수는 중학생이 14,179명(71%)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5,113명(25.6%), 초등학생이 657명(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가해학생 657명 중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학생이 220명(33.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내봉사 150명(22%), 특별교육 102명(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가해학생 14,179명 중 교내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5,444명(38.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회봉사 2,393명(16.8%), 특별교육 2,366명(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가해학생 5113명 중 교내봉사를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이 1617명(31.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학교 급별 가해학생 선도처분 현황 (단위 : 건, 명)

년도	유형	심 의 건수	가해 학생 수	선도처분 현황(학생수)								
				서 면 사과	집 촉 등 금지	학 급 교 체	전 학 조 치	교 내 봉사	사 회 봉사	특 별 교육	출 석 정 지	퇴 학 처 분
2008	초	207	631	219	83	25	17	114	5	154	10	0
	중	6,089	17,901	1,119	344	49	866	8,367	3,884	1,499	1,454	0
	고	2,517	5,486	281	98	23	296	2,230	1,441	831	184	142
	계	8,813	24,018	1,619	525	97	1,179	10,711	5,330	2,484	1,648	142
2009	초	151	325	136	42	2	12	75	2	39	1	0
	중	3,846	10,627	661	300	38	629	4,437	1,903	1,456	938	2
	고	1,608	3,653	150	68	12	270	1,219	853	714	191	126
	계	5,605	14,605	947	410	52	911	5,731	2,758	2,209	1,130	128
2010	초	231	657	222	70	12	15	150	24	102	13	0
	중	5,376	14,179	1,176	547	80	784	5,444	2,393	2,366	1,157	0
	고	2,216	5,113	451	199	43	330	1,617	1,071	969	225	93
	계	7,823	19,949	1,849	816	135	1,129	7,211	3,488	3,437	1,395	93

- 주 : 1) 2007년(2007. 3. 1~2008. 2. 28)과 2008년(2008. 3. 1~2009. 2. 28) 자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위학교에서 공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함.
- 2) 2009년(2009. 3. 1~2010. 2. 28) 자료는 단위학교에서 NEIS(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학교폭력통계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 3) '보호조치'는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임시조치로서 학교폭력대책법 제 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기타 조치와 별도로 집계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1. 8. 10.



### 第3節 學校暴力에 대한 學父母 認識分析

#### 1. 調査方法

#####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시(읍·면단위는 제외)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먼저 응답 학부모별로는 아버지가 45.0%(340명), 어머니는 55.0%(416명)로 어머니가 다소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66.8%(50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이하 20.9%(158명), 50대 12.3%(93명)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전체의 36.9%(27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화이트(공무원 및 사무직) 36.6%(227명), 자영업 19.2%(145명), 블루(현장직) 6.2%(47명), 1차 산업 1.1%(8명)의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하가 전체의 54.2%(41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 이하 42.5%(321명), 대학원 이상은 3.3%(25명)의 순이었다.

자녀의 성을 기준으로 남학생 자녀만 있는 경우가 40.9%(30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학생 자녀와 여학생 자녀 모두 있는 경우가 35.8%(271명), 여학생 자녀 23.3%(176명)의 순이었다.

자녀의 학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24.2%(183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19.4%(147명), 중학생이 18.8%(142명), 중학생과 고등학생 15.7%(119명), 고등학생 15.3%(116명), 중학생과 고등학생 3.8%(29명),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2.6%(20명)의 순이었다.

<표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비율(%)
응답 학부모	아버지	340	45.0
	어머니	416	55.0
연령	30대 이하	158	20.9
	40대	505	66.8
	50대	93	12.3
직업	1차 산업	8	1.1
	자영업	145	19.2
	블루(현장직)	47	6.2
	화이트 (공무원 및 사무직)	277	36.6
	주부	279	36.9
학력	고졸 이하	321	42.5
	대졸 이하	410	54.2
	대학원 이상	25	3.3
자녀	남학생	309	40.9
	여학생	176	23.3
	남학생+여학생	271	35.8
자녀학년	초등학생	183	24.2
	중학생	142	18.8
	고등학생	116	15.3
	초등학생+중학생	147	19.4
	초등학생+고등학생	20	2.6
	중학생+고등학생	119	15.7
	중학생+고등학생	29	3.8
전 체		756	100.0

## (2) 자료의 수집방법

조사에 앞서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본 조사에 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고려한 표본추출을 하기 위해 제주도(읍·면 단위를 제외)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학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질문지는 2011년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 동안 900부를 배부하고, 회수된 질문지 850부 중 무응답 항목이 있는 부적절한 질문지와 회수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한 75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은 전체적으로 유의수준 95%이며,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서는 \*  $p < 0.05$ 로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서는 \*\*  $p < 0.01$ 로 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과 백분율을 이용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인식에서 주요요인을 학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했고, 자녀와의 대화수준, 폭력심각성 인식과 폭력경험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 2. 分析結果

### (1)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일반적 인식

#### 1)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심각하다 27.2%, 보통이다 24.2%, 전혀 심각하지 않다 1.6%, 관심이 없다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부모의 73.8%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성별, 학력,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인 심각

성 인식에서는 거의 전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

<표 2-2>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구 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심각하지 않음	관심이 없음	전체	$\chi^2$	<i>p</i>	
학부모	아버지	빈도	89	159	80	10	2	340	8.089	.088**
		%	26.2%	46.8%	23.5%	2.9%	0.6%			
	어머니	빈도	117	193	103	2	1			
		%	28.1%	46.4%	24.8%	0.5%	0.2%			
연령	30대 이하	빈도	47	73	35	3	0	158	20.865	.008**
		%	29.7%	46.2%	22.2%	1.9%	0.0%			
	40대	빈도	132	241	127	3	2			
		%	26.1%	47.7%	25.1%	0.6%	0.4%			
	50대	빈도	27	38	21	6	1			
		%	29.0%	40.9%	22.6%	6.5%	1.1%			
학력	고졸 이하	빈도	99	138	78	4	2	321	6.99	.538
		%	30.8%	43.0%	24.3%	1.2%	0.6%			
	대졸 이하	빈도	99	203	100	7	1			
		%	24.1%	49.5%	24.4%	1.7%	0.2%			
	대학원 이상	빈도	8	11	5	1	0			
		%	32.0%	44.0%	20.0%	4.0%	0.0%			
자녀	남학생	빈도	85	142	77	3	2	309	13.732	.089
		%	27.5%	46.0%	24.9%	1.0%	0.6%			
	여학생	빈도	63	72	38	3	0			
		%	35.8%	40.9%	21.6%	1.7%	0.0%			
	남학생+ 여학생	빈도	58	138	68	6	1			
		%	21.4%	50.9%	25.1%	2.2%	0.4%			
전 체	빈도	206	352	183	12	3	756			
	%	27.2%	46.6%	24.2%	1.6%	0.4%				

## 2)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매체

학교폭력에 대해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표 2-3>과 같다. 즉 대중매체(TV, 뉴스, 신문, 인터넷 등)라고 응답한 학부모가 전체의 5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를 통해서 22.1%, 지역 내 언론 매체를 통해서 13.6%, 학교에서 배부하는 통신문을 통하여 4.9%, 기타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이 대중매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학부모 성별, 연령,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부모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고졸인 학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해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졸과 대학원졸업자의 경우는 대중매체를 통한 인지가 높았다.

<표 2-3>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매체

구 분		자녀	학교 통신문	지역 언론 매체	대중 매체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71	19	49	199	2	340	3.782	.436
		%	20.9%	5.6%	14.4%	58.5%	0.6%	100.0%		
	어머니	빈도	96	18	54	248	0	416		
		%	23.1%	4.3%	13.0%	59.6%	0.0%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26	8	16	108	0	158	13.055	.110
		%	16.5%	5.1%	10.1%	68.4%	0.0%	100.0%		
	40대	빈도	125	25	72	282	1	505		
		%	24.8%	5.0%	14.3%	55.8%	0.2%	100.0%		
	50대	빈도	16	4	15	57	1	93		
		%	17.2%	4.3%	16.1%	61.3%	1.1%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72	18	51	179	1	321	18.450	.018
		%	22.4%	5.6%	15.9%	55.8%	0.3%	100.0%		
	대졸 이하	빈도	90	18	50	252	0	410		
		%	22.0%	4.4%	12.2%	61.5%	0.0%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5	1	2	16	1	25		
		%	20.0%	4.0%	8.0%	64.0%	4.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63	13	48	184	1	309	11.855	.158
		%	20.4%	4.2%	15.5%	59.5%	0.3%	100.0%		
	여학생	빈도	35	15	18	108	0	176		
		%	19.9%	8.5%	10.2%	61.4%	0.0%	100.0%		
	남학생+ 여학생	빈도	69	9	37	155	1	271		
		%	25.5%	3.3%	13.7%	57.2%	0.4%	100.0%		
전 체		빈도	167	37	103	447	2	756		
		%	22.1%	4.9%	13.6%	59.1%	0.3%	100.0%		

### 3)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표 2-4>와 같다. 괴롭힘, 놀림, 따돌림, 언어폭력, 강제로 시키기 등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폭력이 전체의 5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행, 금품갈취, 가혹행위 등과 같은 신체적·물리적 폭행 30.7%, 사이버 폭력 5.6%, 모두가 심각하지 않다가 0.8%, 잘 모르겠다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4>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구 분		신체적 물리적 폭력	심리적 정서적 폭력	사이버 폭력	모두가 심각 하지 않다	잘 모르 겠다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96	211	19	9	3	2	340	2.315	.804
		%	28.2%	62.1%	5.6%	2.6%	0.9%	0.6%	100.0%		
	어머니	빈도	136	242	23	11	3	1	416		
		%	32.7%	58.2%	5.5%	2.6%	0.7%	0.2%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39	97	13	6	2	1	158	13.590	.193
		%	24.7%	61.4%	8.2%	3.8%	1.3%	0.6%	100.0%		
	40대	빈도	166	304	21	10	3	1	505		
		%	32.9%	60.2%	4.2%	2.0%	0.6%	0.2%	100.0%		
	50대	빈도	27	52	8	4	1	1	93		
		%	29.0%	55.9%	8.6%	4.3%	1.1%	1.1%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97	188	21	9	3	3	321	8.057	.623
		%	30.2%	58.6%	6.5%	2.8%	0.9%	0.9%	100.0%		
	대졸 이하	빈도	125	250	21	11	3	0	410		
		%	30.5%	61.0%	5.1%	2.7%	0.7%	0.0%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10	15	0	0	0	0	25		
		%	40.0%	60.0%	0.0%	0.0%	0.0%	0.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96	177	22	8	4	2	309	14.259	.161
		%	31.1%	57.3%	7.1%	2.6%	1.3%	0.6%	100.0%		
	여학생	빈도	43	114	12	5	2	0	176		
		%	24.4%	64.8%	6.8%	2.8%	1.1%	0.0%	100.0%		
	남학생+ 여학생	빈도	93	162	8	7	0	1	271		
		%	34.3%	59.8%	3.0%	2.6%	0.0%	0.4%	100.0%		
전 체		빈도	232	453	42	20	6	3	756		
		%	30.7%	59.9%	5.6%	2.6%	0.8%	0.4%	100.0%		

## (2) 학교폭력대처 방안에 대한 학부모 인식

### 1) 학교폭력 가해 측 해결방법

자녀가 학교에서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학부모 응답결과는 <표 2-5>와 같다.

‘또다시 폭력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시킨다’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기관에 의뢰’ 23.0%, ‘피해자 학생 부모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한다’ 17.2%, ‘학교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위임한다’ 16.5%, ‘부모와 상관없이 처벌을 원한다’ 3.7%, ‘다른 학교로 전학 시킨다’ 2.9%, 기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응답 학부모의 성별차이를

유의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폭력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시킨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버지는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위임한다가 많았다. 어머니는 청소년 상담기관에 의뢰한다가 많아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 학력, 자녀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5> 학교폭력 가해 측 해결방법

구 분		학교 위임	전학	피해자 합의	상담 기관 의뢰	재발 방지 교육	처벌 원함	기타	전체	χ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64	8	54	62	134	14	4	340	12.990	.043*
		%	18.8%	2.4%	15.9%	18.2%	39.4%	4.1%	1.2%	100.0%		
	어머니	빈도	61	14	76	112	137	14	2	416		
		%	14.7%	3.4%	18.3%	26.9%	32.9%	3.4%	0.5%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26	9	23	37	55	5	3	158	19.909	.069
		%	16.5%	5.7%	14.6%	23.4%	34.8%	3.2%	1.9%	100.0%		
	40대	빈도	77	12	89	125	179	21	2	505		
		%	15.2%	2.4%	17.6%	24.8%	35.4%	4.2%	0.4%	100.0%		
	50대	빈도	22	1	18	12	37	2	1	93		
		%	23.7%	1.1%	19.4%	12.9%	39.8%	2.2%	1.1%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60	9	51	82	104	14	1	321	14.592	.265
		%	18.7%	2.8%	15.9%	25.5%	32.4%	4.4%	0.3%	100.0%		
	대졸 이하	빈도	62	11	73	88	158	14	4	410		
		%	15.1%	2.7%	17.8%	21.5%	38.5%	3.4%	1.0%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3	2	6	4	9	0	1	25		
		%	12.0%	8.0%	24.0%	16.0%	36.0%	0.0%	4.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56	9	53	72	103	12	4	309	8.549	.741
		%	18.1%	2.9%	17.2%	23.3%	33.3%	3.9%	1.3%	100.0%		
	여학생	빈도	26	4	26	49	63	7	1	176		
		%	14.8%	2.3%	14.8%	27.8%	35.8%	4.0%	0.6%	100.0%		
	남학생+여학생	빈도	43	9	51	53	105	9	1	271		
		%	15.9%	3.3%	18.8%	19.6%	38.7%	3.3%	0.4%	100.0%		
전 체		빈도	125	22	130	174	271	28	6	756		
		%	16.5%	2.9%	17.2%	23.0%	35.8%	3.7%	0.8%	100.0%		

\* p < .05

## 2) 학교폭력 피해 측 해결방법

자녀가 학교에서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표 2-6>에 정리되어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응답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해결방법'이 피해실태를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집단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이 경험한 현실과 문제점은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위임한다'가 전체의 2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해자학생 부모로부터 원만한 합의'가 22.0%, '청소년 상담기관에 의뢰'가 20.0%, '학교 측에 처벌 요구'가 19.6%, '가해자 학생이 형사처분을 요구 한다' 7.0%,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전학 시킨다'가 4.9%, '아무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0.4%, 기타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경험 했을 경우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 본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적 처분보다는 “학교 또는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합의를 한다”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표 2-6> 학교폭력 피해 측 해결방법

구 분		학교 위임	전학	학교측에 처벌요구	형사처분요구	원만한 합의	상담기관 의뢰	처벌원하지 않음	기타	전체	χ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97	17	64	26	74	59	2	1	340	6.320	.503
		%	28.5%	5.0%	18.8%	7.6%	21.8%	17.4%	0.6%	0.3%	100.0%		
	어머니	빈도	98	20	84	27	94	92	1	0	416		
		%	23.6%	4.8%	20.2%	6.5%	22.6%	22.1%	0.2%	0.0%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37	9	32	12	29	38	1	0	158	12.389	.575
		%	23.4%	5.7%	20.3%	7.6%	18.4%	24.1%	0.6%	0.0%	100.0%		
	40대	빈도	131	27	101	31	118	95	1	1	505		
		%	25.9%	5.3%	20.0%	6.1%	23.4%	18.8%	0.2%	0.2%	100.0%		
	50대	빈도	27	1	15	10	21	18	1	0	93		
		%	29.0%	1.1%	16.1%	10.8%	22.6%	19.4%	1.1%	0.0%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88	18	55	19	60	81	0	0	321	21.713	.085
		%	27.4%	5.6%	17.1%	5.9%	18.7%	25.2%	0.0%	0.0%	100.0%		
	대졸 이하	빈도	103	18	85	33	100	67	3	1	410		
		%	25.1%	4.4%	20.7%	8.0%	24.4%	16.3%	0.7%	0.2%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4	1	8	1	8	3	0	0	25		
		%	16.0%	4.0%	32.0%	4.0%	32.0%	12.0%	0.0%	0.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89	17	52	17	74	58	2	0	309	22.167	.075
		%	28.8%	5.5%	16.8%	5.5%	23.9%	18.8%	0.6%	0.0%	100.0%		
	여학생	빈도	36	9	34	9	40	48	0	0	176		
		%	20.5%	5.1%	19.3%	5.1%	22.7%	27.3%	0.0%	0.0%	100.0%		
	남학생+여학생	빈도	70	11	62	27	54	45	1	1	271		
		%	25.8%	4.1%	22.9%	10.0%	19.9%	16.6%	0.4%	0.4%	100.0%		
전 체		빈도	195	37	148	53	168	151	3	1	756		
		%	25.8%	4.9%	19.6%	7.0%	22.2%	20.0%	0.4%	0.1%	100.0%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학교폭력 신고기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고를 한다면 어느 기관에 우선적으로 신고를 하겠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학교자치위원회·담임교사’가 전체 6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 14.2%, ‘청소년 상담기관’ 11.0%, ‘교육청’ 7.5%, ‘검찰’ 2.0%,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고, 어느 기관에도 신고하지 않는다가 0.4%로 나타났다.

<표 2-7> 학교폭력 신고기관

구 분		학교자 치위원 회	교육청	경찰	검찰	청소년 상담기 관	신고 않음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214	22	62	8	31	1	2	340	10.998	.088
		%	62.9%	6.5%	18.2%	2.4%	9.1%	0.3%	0.6%	100.0%		
	어머니	빈도	273	35	45	7	52	2	2	416		
		%	65.6%	8.4%	10.8%	1.7%	12.5%	0.5%	0.5%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84	17	23	4	28	2	0	158	35.800	.000**
		%	53.2%	10.8%	14.6%	2.5%	17.7%	1.3%	0.0%	100.0%		
	40대	빈도	346	34	68	10	45	1	1	505		
		%	68.5%	6.7%	13.5%	2.0%	8.9%	0.2%	0.2%	100.0%		
	50대	빈도	57	6	16	1	10	0	3	93		
		%	61.3%	6.5%	17.2%	1.1%	10.8%	0.0%	3.2%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197	27	46	6	42	0	3	321	11.778	.464
		%	61.4%	8.4%	14.3%	1.9%	13.1%	0.0%	0.9%	100.0%		
	대졸 이하	빈도	270	29	57	9	41	3	1	410		
		%	65.9%	7.1%	13.9%	2.2%	10.0%	0.7%	0.2%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20	1	4	0	0	0	0	25		
		%	80.0%	4.0%	16.0%	0.0%	0.0%	0.0%	0.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190	27	50	7	34	0	1	309	17.282	.139
		%	61.5%	8.7%	16.2%	2.3%	11.0%	0.0%	0.3%	100.0%		
	여학생	빈도	114	12	20	3	27	0	0	176		
		%	64.8%	6.8%	11.4%	1.7%	15.3%	0.0%	0.0%	100.0%		
	남학생+ 여학생	빈도	183	18	37	5	22	3	3	271		
		%	67.5%	6.6%	13.7%	1.8%	8.1%	1.1%	1.1%	100.0%		
전 체		빈도	487	57	107	15	83	3	4	756		
		%	64.4%	7.5%	14.2%	2.0%	11.0%	0.4%	0.5%	100.0%		

이와 함께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학부모 성별, 학력,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차분석 결과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비율을 살펴보면 30대는 53.2%, 40대는 68.5%가 신고를 할 것으로 답변하였고, 50대에서는 61.3%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40대 학부모들이 자녀들에서 학교폭력

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학교자치위원회에 통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교폭력 책임

오늘날과 같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 본 결과 집단 간의 견해 차이를 나타낸다. 그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학교폭력 책임

구 분		학생자 신	학부모 와 가정교 육	학교교 사	입시위 주 교육제 도	대중문 화 유해환 경	사회문 화전체	기타	전체	χ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40	157	15	30	58	39	1	12.560	.056
		%	11.8%	46.2%	4.4%	8.8%	17.1%	11.5%	0.3%		
	어머니	빈도	48	180	6	29	89	64	0		
		%	11.5%	43.3%	1.4%	7.0%	21.4%	15.4%	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15	67	7	15	31	23	0	10.319	.588
		%	9.5%	42.4%	4.4%	9.5%	19.6%	14.6%	0.0%		
	40대	빈도	64	229	10	40	92	69	1		
		%	12.7%	45.3%	2.0%	7.9%	18.2%	13.7%	0.2%		
	50대	빈도	9	41	4	4	24	11	0		
		%	9.7%	44.1%	4.3%	4.3%	25.8%	11.8%	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37	146	6	21	74	37	0	44.324	.000**
		%	11.5%	45.5%	1.9%	6.5%	23.1%	11.5%	0.0%		
	대졸 이하	빈도	50	176	15	35	72	62	0		
		%	12.2%	42.9%	3.7%	8.5%	17.6%	15.1%	0.0%		
	대학원 이상	빈도	1	15	0	3	1	4	1		
		%	4.0%	60.0%	0.0%	12.0%	4.0%	16.0%	4.0%		
자녀	남학생	빈도	32	136	12	30	59	40	0	15.486	.216
		%	10.4%	44.0%	3.9%	9.7%	19.1%	12.9%	0.0%		
	여학생	빈도	14	80	4	14	34	30	0		
		%	8.0%	45.5%	2.3%	8.0%	19.3%	17.0%	0.0%		
	남학생+ 여학생	빈도	42	121	5	15	54	33	1		
		%	15.5%	44.6%	1.8%	5.5%	19.9%	12.2%	0.4%		
전 체		빈도	88	337	21	59	147	103	1		
		%	11.6%	44.6%	2.8%	7.8%	19.4%	13.6%	0.1%	100.0%	

각 집단별로 보면 가장 주요한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부모와 가정 교육’이 44.6%로 가장 높은 답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대중문화와 주변 유해환경’ 19.4%, ‘사회문화전체’ 13.6%, ‘학생 자신’ 11.6%, ‘엄격한 학교분위기 및 입시

위주 교육제도' 7.8%, '학교 교사' 2.8%, 기타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으로는 대중문화와 주변 환경 및 입시위주 교육보다 학부모와 가정교육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이 학부모와 가정교육 때문이라는 답변 비율은 학부모의 학력수준별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고졸 이하의 학부모들은 45.5%가 학부모와 가정교육의 부족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대졸학부모들은 이보다 약간 낮은 42.9%가 부모와 가정교육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 5) 학교폭력사건 해결주체

학교폭력사건의 해결은 누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학교폭력사건 해결주체

구 분		당사자 간	담당교 사 차원	학교차 원	관할 교육청 차원	전문조 정기관	사법제 도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45	54	116	33	67	20	5	7.298	.294
		%	13.2%	15.9%	34.1%	9.7%	19.7%	5.9%	1.5%		
	어머니	빈도	72	49	147	39	88	14	7		
		%	17.3%	11.8%	35.3%	9.4%	21.2%	3.4%	1.7%		
연령	30대 이하	빈도	27	13	53	18	36	7	4	16.902	.153
		%	17.1%	8.2%	33.5%	11.4%	22.8%	4.4%	2.5%		
	40대	빈도	71	69	181	48	106	23	7		
		%	14.1%	13.7%	35.8%	9.5%	21.0%	4.6%	1.4%		
	50대	빈도	19	21	29	6	13	4	1		
		%	20.4%	22.6%	31.2%	6.5%	14.0%	4.3%	1.1%		
학력	고졸 이하	빈도	54	45	122	35	51	9	5	20.452	.059
		%	16.8%	14.0%	38.0%	10.9%	15.9%	2.8%	1.6%		
	대졸 이하	빈도	59	58	128	36	98	24	7		
		%	14.4%	14.1%	31.2%	8.8%	23.9%	5.9%	1.7%		
	대학원 이상	빈도	4	0	13	1	6	1	0		
		%	16.0%	0.0%	52.0%	4.0%	24.0%	4.0%	0.0%		
자녀	남학생	빈도	49	42	107	26	65	14	6	7.238	.841
		%	15.9%	13.6%	34.6%	8.4%	21.0%	4.5%	1.9%		
	여학생	빈도	20	28	57	21	38	9	3		
		%	11.4%	15.9%	32.4%	11.9%	21.6%	5.1%	1.7%		
	남학생+ 여학생	빈도	48	33	99	25	52	11	3		
		%	17.7%	12.2%	36.5%	9.2%	19.2%	4.1%	1.1%		
전 체		빈도	117	103	263	72	155	34	12		
		%	15.5%	13.6%	34.8%	9.5%	20.5%	4.5%	1.6%		

전체 평균은 '학교가 다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사회 내 전문조정기관' 20.5%, '당사자 간' 15.5%, '담당교사 차원' 13.6%, '관할 교육청 차원' 9.5%, '사법제도'가 4.5%, 기타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학교폭력 피해실태에 대한 학부모 인식

#### 1) 학교폭력 경험

자녀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괴롭힘, 금품갈취나 위협, 집단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10>과 같다.

<표 2-10> 학교폭력 피해경험

구 분			전혀 없다	1-2회 정도	3-4회 정도	5회 이상	전체	χ <sup>2</sup>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187	127	18	8	340	3.509	.320
		%	55.0%	37.4%	5.3%	2.4%	100.0%		
	어머니	빈도	252	130	26	8	416		
		%	60.6%	31.3%	6.3%	1.9%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105	41	7	5	158	10.946	.090
		%	66.5%	25.9%	4.4%	3.2%	100.0%		
	40대	빈도	277	187	33	8	505		
		%	54.9%	37.0%	6.5%	1.6%	100.0%		
	50대	빈도	57	29	4	3	93		
		%	61.3%	31.2%	4.3%	3.2%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199	93	23	6	321	13.402	.037*
		%	62.0%	29.0%	7.2%	1.9%	100.0%		
	대졸 이하	빈도	232	150	19	9	410		
		%	56.6%	36.6%	4.6%	2.2%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8	14	2	1	25		
		%	32.0%	56.0%	8.0%	4.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175	108	21	5	309	3.214	.782
		%	56.6%	35.0%	6.8%	1.6%	100.0%		
	여학생	빈도	110	54	8	4	176		
		%	62.5%	30.7%	4.5%	2.3%	100.0%		
	남학생+여학생	빈도	154	95	15	7	271		
		%	56.8%	35.1%	5.5%	2.6%	100.0%		
전 체		빈도	439	257	44	16	756		
		%	58.1%	34.0%	5.8%	2.1%	100.0%		

\* p < .05

전혀 없다가 전체의 5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2회 정도 34.0%, 3-4회 정도 5.8%, 5회 이상 2.1%의 순이었다. 따라서 41.9%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별로 고졸 이하와 대졸 이하에서는 전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각 62.0%, 56.6%), 대학원 이상에서는 1-2회가 56.0%로 가장 많아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 그러나 응답 학부모 성별, 연령, 자녀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유형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본 있는데 그 결과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유형

구 분		과롭힘	가벼운 폭행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심리폭력	집단폭행	기타	전체	χ <sup>2</sup>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27	33	24	38	28	4	186	6.458	.374
		%	7.9%	9.7%	7.1%	11.2%	8.2%	1.2%	54.7%		
	어머니	빈도	29	33	19	57	25	8	245		
		%	7.0%	7.9%	4.6%	13.7%	6.0%	1.9%	58.9%		
연령	30대 이하	빈도	12	16	11	7	6	3	103	22.685	.031*
		%	7.6%	10.1%	7.0%	4.4%	3.8%	1.9%	65.2%		
	40대	빈도	39	42	26	79	40	9	270		
		%	7.7%	8.3%	5.1%	15.6%	7.9%	1.8%	53.5%		
	50대	빈도	5	8	6	9	7	0	58		
		%	5.4%	8.6%	6.5%	9.7%	7.5%	0.0%	62.4%		
학력	고졸 이하	빈도	22	24	15	39	16	8	197	21.618	.042
		%	6.9%	7.5%	4.7%	12.1%	5.0%	2.5%	61.4%		
	대졸 이하	빈도	30	40	25	53	32	4	226		
		%	7.3%	9.8%	6.1%	12.9%	7.8%	1.0%	55.1%		
	대학원 이상	빈도	4	2	3	3	5	0	8		
		%	16.0%	8.0%	12.0%	12.0%	20.0%	0.0%	32.0%		
자녀	남학생	빈도	26	31	20	41	17	5	169	16.723	.160
		%	8.4%	10.0%	6.5%	13.3%	5.5%	1.6%	54.7%		
	여학생	빈도	9	9	10	17	15	6	110		
		%	5.1%	5.1%	5.7%	9.7%	8.5%	3.4%	62.5%		
	남학생+여학생	빈도	21	26	13	37	21	1	152		
		%	7.7%	9.6%	4.8%	13.7%	7.7%	0.4%	56.1%		
전 체		빈도	56	66	43	95	53	12	431		
		%	7.4%	8.7%	5.7%	12.6%	7.0%	1.6%	57.0%		

\* p < .05

기타가 전체의 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갈취 12.6%, 가벼운 폭행 8.7%, 괴롭힘 7.4%, 위협이나 욕설을 통한 언어적·심리적 폭력 7.0%, 집단 따돌림 5.7%, 집단폭행이나 도구를 이용한 폭행 1.6%의 순이었다. 따라서 자녀가 경험한 학교 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전 연령대에서 기타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40대와 50대의 경우 금품갈취(각 15.6%, 9.7%)가 많았고, 30대 이하의 경우는 가벼운 폭행(10.1%)이 많아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 그러나 응답 학부모 성별, 학력, 자녀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학교폭력 발생 장소

학교폭력 행위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 본

<표 2-12> 학교폭력 발생 장소

구 분		학교 안	학교주변	동네주변	학원가 유흥가	기타	전체	χ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118	190	15	13	4	.676	.954				
		%	34.7%	55.9%	4.4%	3.8%	1.2%			100.0%			
	어머니	빈도	154	221	18	17	6			.676	.954		
		%	37.0%	53.1%	4.3%	4.1%	1.4%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60	82	11	4	1	8.731	.366				
		%	38.0%	51.9%	7.0%	2.5%	0.6%					100.0%	
	40대	빈도	185	270	20	22	8			8.731	.366		
		%	36.6%	53.5%	4.0%	4.4%	1.6%					100.0%	
	50대	빈도	27	59	2	4	1					8.731	.366
		%	29.0%	63.4%	2.2%	4.3%	1.1%						
학력	고졸 이하	빈도	106	186	10	13	6	7.773	.456				
		%	33.0%	57.9%	3.1%	4.0%	1.9%						
	대졸 이하	빈도	157	213	21	15	4			7.773	.456		
		%	38.3%	52.0%	5.1%	3.7%	1.0%						
	대학원 이상	빈도	9	12	2	2	0					7.773	.456
		%	36.0%	48.0%	8.0%	8.0%	0.0%						
자녀	남학생	빈도	105	171	14	13	6	8.331	.402				
		%	34.0%	55.3%	4.5%	4.2%	1.9%						
	여학생	빈도	56	103	6	8	3			8.331	.402		
		%	31.8%	58.5%	3.4%	4.5%	1.7%						
	남학생+ 여학생	빈도	111	137	13	9	1					8.331	.402
		%	41.0%	50.6%	4.8%	3.3%	0.4%						
전 체	빈도	272	411	33	30	10	756						
	%	36.0%	54.4%	4.4%	4.0%	1.3%			100.0%				

결과는 <표 2-12>와 같다. 학교주변이 전체의 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안 36.0%, 동네주변 4.4%, 학원가 및 유흥가 주변 4.0%, 기타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주변이나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학교 내 불량서클 유무에 대한 인식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에 불량서클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13>과 같다.

<표 2-13> 학교내 불량서클 유무에 대한 인식

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	χ <sup>2</sup>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155	62	114	9	340	2.911	.406
		%	45.6%	18.2%	33.5%	2.6%	100.0%		
	어머니	빈도	168	85	146	17	416		
		%	40.4%	20.4%	35.1%	4.1%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51	39	58	10	158	18.413	.005**
		%	32.3%	24.7%	36.7%	6.3%	100.0%		
	40대	빈도	232	94	169	10	505		
		%	45.9%	18.6%	33.5%	2.0%	100.0%		
	50대	빈도	40	14	33	6	93		
		%	43.0%	15.1%	35.5%	6.5%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131	66	112	12	321	3.376	.760
		%	40.8%	20.6%	34.9%	3.7%	100.0%		
	대졸 이하	빈도	181	79	137	13	410		
		%	44.1%	19.3%	33.4%	3.2%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11	2	11	1	25		
		%	44.0%	8.0%	44.0%	4.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134	58	104	13	309	4.018	.674
		%	43.4%	18.8%	33.7%	4.2%	100.0%		
	여학생	빈도	83	32	56	5	176		
		%	47.2%	18.2%	31.8%	2.8%	100.0%		
	남학생+여학생	빈도	106	57	100	8	271		
		%	39.1%	21.0%	36.9%	3.0%	100.0%		
전 체		빈도	323	147	260	26	756		
		%	42.7%	19.4%	34.4%	3.4%	100.0%		

\*\* p < .01

‘학교 내에 불량서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4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34.3%, '없을 것이다' 19.4%, 기타 3.4%의 순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학교 내에 불량서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의 경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가장 많았으나(각 45.9%, 43.0%), 30대 이하의 경우 잘 모르겠다(36.7%)가 가장 많아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였다. 그러나 응답 학부모 성별, 학력, 자녀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5) 체벌에 대한 생각

학교에서 자녀의 잘못으로 인한 교사의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14>와 같다.

<표 2-14> 교사의 체벌에 대한 생각

구 분		학교폭력 가중	꼭 필요시 가능	어떤 이유든 불가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10	289	30	7	4	340	2.249	.690
		%	2.9%	85.0%	8.8%	2.1%	1.2%	100.0%		
	어머니	빈도	20	348	34	7	7	416		
		%	4.8%	83.7%	8.2%	1.7%	1.7%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8	122	19	4	5	158	13.735	.089
		%	5.1%	77.2%	12.0%	2.5%	3.2%	100.0%		
	40대	빈도	18	441	35	7	4	505		
		%	3.6%	87.3%	6.9%	1.4%	0.8%	100.0%		
	50대	빈도	4	74	10	3	2	93		
		%	4.3%	79.6%	10.8%	3.2%	2.2%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14	275	22	7	3	321	6.581	.582
		%	4.4%	85.7%	6.9%	2.2%	0.9%	100.0%		
	대졸 이하	빈도	16	341	38	7	8	410		
		%	3.9%	83.2%	9.3%	1.7%	2.0%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0	21	4	0	0	25		
		%	0.0%	84.0%	16.0%	0.0%	0.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12	264	21	7	5	309	12.330	.137
		%	3.9%	85.4%	6.8%	2.3%	1.6%	100.0%		
	여학생	빈도	3	149	21	0	3	176		
		%	1.7%	84.7%	11.9%	0.0%	1.7%	100.0%		
	남학생+ 여학생	빈도	15	224	22	7	3	271		
		%	5.5%	82.7%	8.1%	2.6%	1.1%	100.0%		
전 체		빈도	30	637	64	14	11	756		
		%	4.0%	84.3%	8.5%	1.9%	1.5%	100.0%		

'꼭 필요할 때 체벌해도 좋다'가 전체의 8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떤



이유도 체벌은 하여서는 안 된다' 8.5%, '교사의 체벌로 인하여 학교폭력이 가중 될 것이다'는 답변은 4.0%, '잘 모르겠다'가 1.9%, 기타가 1.5%의 순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된 표본의 대다수는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체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4)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학부모 인식

##### 1)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표 2-15>과 같다.

<표 2-15>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

구 분		학부모 의 관심부 족	교사의 관심부 족	정부의 관심부 족	학교폭 력예방 프로그램 부족	전문상 담교사 부족	학교주 변유해 환경확 대	기타	전체	χ <sup>2</sup>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106	49	35	86	27	27	10	16.076	.013*	
		%	31.2%	14.4%	10.3%	25.3%	7.9%	7.9%	2.9%			100.0%
	어머니	빈도	144	52	16	101	46	44	13			416
		%	34.6%	12.5%	3.8%	24.3%	11.1%	10.6%	3.1%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55	11	14	43	13	18	4	23.393	.025*	
		%	34.8%	7.0%	8.9%	27.2%	8.2%	11.4%	2.5%			100.0%
	40대	빈도	170	71	31	130	50	38	15			505
		%	33.7%	14.1%	6.1%	25.7%	9.9%	7.5%	3.0%			100.0%
	50대	빈도	25	19	6	14	10	15	4			93
		%	26.9%	20.4%	6.5%	15.1%	10.8%	16.1%	4.3%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118	45	9	75	39	27	8	25.449	.013	
		%	36.8%	14.0%	2.8%	23.4%	12.1%	8.4%	2.5%			100.0%
	대졸 이하	빈도	127	52	38	106	33	41	13			410
		%	31.0%	12.7%	9.3%	25.9%	8.0%	10.0%	3.2%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5	4	4	6	1	3	2			25
		%	20.0%	16.0%	16.0%	24.0%	4.0%	12.0%	8.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103	39	19	78	32	28	10	6.485	.890	
		%	33.3%	12.6%	6.1%	25.2%	10.4%	9.1%	3.2%			100.0%
	여학생	빈도	58	27	16	38	19	15	3			176
		%	33.0%	15.3%	9.1%	21.6%	10.8%	8.5%	1.7%			100.0%
	남학생+여학생	빈도	89	35	16	71	22	28	10			271
		%	32.8%	12.9%	5.9%	26.2%	8.1%	10.3%	3.7%			100.0%
전 체		빈도	250	101	51	187	73	71	23	756		
		%	33.1%	13.4%	6.7%	24.7%	9.7%	9.4%	3.0%	100.0%		

평균적으로 '학부모의 관심 부족'이 전체의 3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부족' 24.7%, '교사의 관심 부족'이 13.4%,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부족'이 9.7%, '학교주변 유해환경 확대'가 9.4%, '정부의 관심 부족'이 6.7%, 기타가 3.0%의 순이었다. 이런 한 답변경향은 학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선, 학부모의 성에 따라 아버지의 31.4%, 어머니의 34.6%가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고 어머니들일수록 학부모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교사(14.4%), 정부(10.3%)가 어머니들에 비해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내비쳤다. 물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p <.05)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학부모의 관심 부족이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 30대 이하와 40대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50대는 교사의 관심부족이라는 답변이 많아 유의미한 차이(p <.05)를 보였다. 아울러, 학부모 학력별로도 학부모의 관심부족이 원인이라는 답변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36.8%), 대졸(31.0%), 대학원졸(20.0%)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학력이 낮을수록 학부모 탓을 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 집단의 역할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집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확인해본 결과는 <표 2-16>에 서술되어 있다.

<표 2-1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 집단의 역할

구 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않다		매우 중요하지않다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자신	565	74.7	172	22.8	15	2.0	4	0.5	0	0.0	756	100.0
학부모(가정)	550	72.8	188	24.9	17	2.2	1	0.1	0	0.0	756	100.0
교사(학교)	563	74.5	175	23.1	16	2.1	2	0.3	0	0.0	756	100.0
지역사회단체	358	47.4	297	39.3	92	12.2	7	0.9	2	0.3	756	100.0
경찰 및 정부기관	363	48.0	279	36.9	103	13.6	8	1.1	3	0.4	756	100.0
청소년 보호단체	421	55.7	249	32.9	78	10.3	5	0.7	3	0.4	756	100.0

‘가장 중요하다’는’는 답변항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생자신이 학교폭력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 전체의 7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 72.8%, 교사 74.5%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단체의 역할 47.4%, 또는 경찰 및 정부기관이 48.0%, 청소년보호단체 55.7%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 집단의 역할에 있어서 학생자신, 학부모, 교사들 모두 개인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청소년보호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하는 경향이 경찰 및 정부기관이나 지역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점사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 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 중복응답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17>과 같다. ‘전인교육,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 강화’가 전체의 2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정교육의 강화’ 20.6%,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정화’ 16.8%,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개발 활용’ 14.5%,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 13.0%, ‘처벌의 강화 등 법적 및 제도적 장치의 보완’ 10.0%, 기타 0.2%의 순이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대체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는 인간 개개인의 품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점사항 (중복응답)

구 분	빈도	비율(%)
처벌의 강화 등 법적 및 제도적 장치의 보완	226	10.0
가정교육의 강화	466	20.6
전인교육,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 강화	563	24.9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정화	379	16.8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	294	13.0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개발 활용	328	14.5
기타	5	0.2
전체	2261	100.0

####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18>과 같다. '전인교육, 인성교육, 상담교육 실시'가 전체의 5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19.3%, '학교특성을 고려한 폭력근절 대책추진' 14.7%, '학교생활지도 개선' 8.7%, 기타 1.5%의 순이었다. 답변비율의 차이가 학부모의 특성별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의 성, 연령대,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자녀의 성이 남학생일수록(15.9%), 여학생(1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후 순위에서도 다소 유의미한 차이( $p < .05$ )를 보였다. 그러나 응답 학부모, 연령, 직업, 학력, 자녀학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8>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구 분		학교특성 고려 폭력근절 대책추진	전인, 인성, 상담교육 실시	학교폭력 예방프로 그램실시	학생생활 지도개선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50	188	63	33	6	1.308	.860				
		%	14.7%	55.3%	18.5%	9.7%	1.8%			100.0%			
	어머니	빈도	61	234	83	33	5			6.865	.551		
		%	14.7%	56.3%	20.0%	7.9%	1.2%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22	91	32	10	3	9.529	.300				
		%	13.9%	57.6%	20.3%	6.3%	1.9%					100.0%	
	40대	빈도	77	276	101	46	5			18.126	.020*		
		%	15.2%	54.7%	20.0%	9.1%	1.0%					100.0%	
	50대	빈도	12	55	13	10	3					756	100.0%
		%	12.9%	59.1%	14.0%	10.8%	3.2%						
학력	고졸 이하	빈도	56	168	61	30	6	111	14.7%				
		%	17.4%	52.3%	19.0%	9.3%	1.9%						
	대졸 이하	빈도	52	240	77	36	5			422	55.8%		
		%	12.7%	58.5%	18.8%	8.8%	1.2%						
	대학원 이상	빈도	3	14	8	0	0					146	19.3%
		%	12.0%	56.0%	32.0%	0.0%	0.0%						
자녀	남학생	빈도	49	177	50	23	10	66	8.7%				
		%	15.9%	57.3%	16.2%	7.4%	3.2%						
	여학생	빈도	21	94	43	17	1			11	1.5%		
		%	11.9%	53.4%	24.4%	9.7%	0.6%						
	남학생+ 여학생	빈도	41	151	53	26	0					756	100.0%
		%	15.1%	55.7%	19.6%	9.6%	0.0%						
전 체		빈도	111	422	146	66	11						
		%	14.7%	55.8%	19.3%	8.7%	1.5%						

5)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 교육의 필요성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19>와 같다. 전체 평균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8.5%, '필요하지 않다' 4.6%, 기타 0.7%의 순이었다. 이런 답변의 차이가 학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83.8%)보다 어머니(88.2%), 40대(86.9%)보다 30대 이하(88.0%), 고졸 이하(86.9%)보다 대학원 이상(96.0%)일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9>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 교육의 필요성

구 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285	24	29	2	8.348	.039
		%	83.8%	7.1%	8.5%	0.6%		
	어머니	빈도	367	11	35	3		
		%	88.2%	2.6%	8.4%	0.7%		
연령	30대 이하	빈도	139	9	9	1	6.645	.375
		%	88.0%	5.7%	5.7%	0.6%		
	40대	빈도	439	19	44	3		
		%	86.9%	3.8%	8.7%	0.6%		
	50대	빈도	74	7	11	1		
		%	79.6%	7.5%	11.8%	1.1%		
학력	고졸 이하	빈도	279	14	27	1	8.881	.180
		%	86.9%	4.4%	8.4%	0.3%		
	대졸 이하	빈도	349	21	37	3		
		%	85.1%	5.1%	9.0%	0.7%		
	대학원 이상	빈도	24	0	0	1		
		%	96.0%	0.0%	0.0%	4.0%		
자녀	남학생	빈도	265	17	23	4	8.717	.190
		%	85.8%	5.5%	7.4%	1.3%		
	여학생	빈도	158	6	11	1		
		%	89.8%	3.4%	6.3%	0.6%		
	남학생+ 여학생	빈도	229	12	30	0		
		%	84.5%	4.4%	11.1%	0.0%		
전 체		빈도	652	35	64	5		
		%	86.2%	4.6%	8.5%	0.7%		

6)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 참석의사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20>와 같다. '시간이 허락하면 참여하겠다'가 전체의 5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가 26.5%, '관심이 있으나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13.2%, 기타 1.6%, '전혀 관심이 없다'가 1.3%의 순이었다.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비율로만 비교해보면 30대가 36.7%, 40대가 25.1%, 50대는 22.6%로서 젊은 층 일수록 적극성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한편, 다른 변수에 의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표 2-20>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 참석의사

구 분		적극적으로 참석	시간이 허락하면 참여	관심이 있으나 참석 어려움	전혀 관심 없음	기타	전체	χ <sup>2</sup>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90	193	47	5	5	.416	.981
		%	26.5%	56.8%	13.8%	1.5%	1.5%		
	어머니	빈도	115	236	53	5	7		
		%	27.6%	56.7%	12.7%	1.2%	1.7%		
연령	30대 이하	빈도	57	78	18	2	3	22.967	.003
		%	36.1%	49.4%	11.4%	1.3%	1.9%		
	40대	빈도	127	305	62	4	7		
		%	25.1%	60.4%	12.3%	0.8%	1.4%		
	50대	빈도	21	46	20	4	2		
		%	22.6%	49.5%	21.5%	4.3%	2.2%		
학력	고졸 이하	빈도	83	185	45	2	6	7.712	.462
		%	25.9%	57.6%	14.0%	0.6%	1.9%		
	대졸 이하	빈도	118	225	53	8	6		
		%	28.8%	54.9%	12.9%	2.0%	1.5%		
	대학원 이상	빈도	4	19	2	0	0		
		%	16.0%	76.0%	8.0%	0.0%	0.0%		
자녀	남학생	빈도	94	166	38	4	7	11.968	.153
		%	30.4%	53.7%	12.3%	1.3%	2.3%		
	여학생	빈도	55	95	21	2	3		
		%	31.3%	54.0%	11.9%	1.1%	1.7%		
	남학생+ 여학생	빈도	56	168	41	4	2		
		%	20.7%	62.0%	15.1%	1.5%	0.7%		
전 체	빈도	205	429	100	10	12	756		
	%	27.1%	56.7%	13.2%	1.3%	1.6%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인지여부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학부모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21>과 같다.

‘지역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다’가 전체의 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31.2%, ‘학교에서 배부하는 통신문을 통해 알고 있다’ 13.9%, ‘자녀를 통해 알고 있다’ 11.6%, 기타 0.9%의 순이었다. 따라서 대체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인지여부

구 분		자녀를 통해 알음	학교배부 통신문을 통해	지역언론 및 대중매체 를 통해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	χ <sup>2</sup>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40	34	149	114	3	340	8.134	.087
		%	11.8%	10.0%	43.8%	33.5%	0.9%	100.0%		
	어머니	빈도	48	71	171	122	4	416		
		%	11.5%	17.1%	41.1%	29.3%	1.0%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24	17	59	58	0	158	15.589	.049*
		%	15.2%	10.8%	37.3%	36.7%	0.0%	100.0%		
	40대	빈도	57	79	211	153	5	505		
		%	11.3%	15.6%	41.8%	30.3%	1.0%	100.0%		
	50대	빈도	7	9	50	25	2	93		
		%	7.5%	9.7%	53.8%	26.9%	2.2%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43	44	150	82	2	321	14.380	.072
		%	13.4%	13.7%	46.7%	25.5%	0.6%	100.0%		
	대졸 이하	빈도	45	57	157	146	5	410		
		%	11.0%	13.9%	38.3%	35.6%	1.2%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0	4	13	8	0	25		
		%	0.0%	16.0%	52.0%	32.0%	0.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40	47	131	87	4	309	7.228	.512
		%	12.9%	15.2%	42.4%	28.2%	1.3%	100.0%		
	여학생	빈도	25	21	72	57	1	176		
		%	14.2%	11.9%	40.9%	32.4%	0.6%	100.0%		
	남학생+ 여학생	빈도	23	37	117	92	2	271		
		%	8.5%	13.7%	43.2%	33.9%	0.7%	100.0%		
전 체		빈도	88	105	320	236	7	756		
		%	11.6%	13.9%	42.3%	31.2%	0.9%	100.0%		

\* p < .05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젊을수록 자녀를 통해서 알게 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30대는 15.2%, 50대는 7.5%로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응답 학부모, 직업, 학력, 자녀 성별, 자녀학년 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인지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22>와 같다.

<표 2-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인지여부

구 분		자녀를 통해 알음	학교 배부 통신문 을 통해	지역 내 언론을 통해	대중 매체	잘 모르겠 다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30	48	28	80	150	4	4.313	.505
		%	8.8%	14.1%	8.2%	23.5%	44.1%	1.2%		
	어머니	빈도	46	77	33	88	167	5		
		%	11.1%	18.5%	7.9%	21.2%	40.1%	1.2%		
연령	30대 이하	빈도	20	22	12	30	73	1	11.079	.351
		%	12.7%	13.9%	7.6%	19.0%	46.2%	0.6%		
	40대	빈도	50	92	38	111	207	7		
		%	9.9%	18.2%	7.5%	22.0%	41.0%	1.4%		
	50대	빈도	6	11	11	27	37	1		
		%	6.5%	11.8%	11.8%	29.0%	39.8%	1.1%		
학력	고졸 이하	빈도	34	55	33	88	109	2	27.122	.002
		%	10.6%	17.1%	10.3%	27.4%	34.0%	0.6%		
	대졸 이하	빈도	42	66	28	72	195	7		
		%	10.2%	16.1%	6.8%	17.6%	47.6%	1.7%		
	대학원 이상	빈도	0	4	0	8	13	0		
		%	0.0%	16.0%	0.0%	32.0%	52.0%	0.0%		
자녀	남학생	빈도	35	50	29	73	115	7	18.716	.044*
		%	11.3%	16.2%	9.4%	23.6%	37.2%	2.3%		
	여학생	빈도	22	22	12	43	77	0		
		%	12.5%	12.5%	6.8%	24.4%	43.8%	0.0%		
	남학생+ 여학생	빈도	19	53	20	52	125	2		
		%	7.0%	19.6%	7.4%	19.2%	46.1%	0.7%		
전 체		빈도	76	125	61	168	317	9		
		%	10.1%	16.5%	8.1%	22.2%	41.9%	1.2%	100.0%	

\* p < .05



'잘 모르겠다'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다' 22.2%, '학교에서 배부하는 통신문을 통해 알고 있다' 16.5%, '자녀를 통해 알고 있다' 10.1%, '지역 내 언론을 통해서' 8.2%, 기타 1.2%의 순이었다. 따라서 대체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나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필요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23>과 같다.

<표 2-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필요성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지 만 잘 모르겠다	필요하지 않다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124	44	106	42	24	14.685	.005**
		%	36.5%	12.9%	31.2%	12.4%	7.1%		
	어머니	빈도	186	59	123	22	26		
		%	44.7%	14.2%	29.6%	5.3%	6.3%		
연령	30대 이하	빈도	59	22	52	10	15	13.417	.098
		%	37.3%	13.9%	32.9%	6.3%	9.5%		
	40대	빈도	211	72	154	39	29		
		%	41.8%	14.3%	30.5%	7.7%	5.7%		
	50대	빈도	40	9	23	15	6		
		%	43.0%	9.7%	24.7%	16.1%	6.5%		
학력	고졸 이하	빈도	139	58	88	21	15	19.950	.011*
		%	43.3%	18.1%	27.4%	6.5%	4.7%		
	대졸 이하	빈도	158	45	132	41	34		
		%	38.5%	11.0%	32.2%	10.0%	8.3%		
	대학원 이상	빈도	13	0	9	2	1		
		%	52.0%	0.0%	36.0%	8.0%	4.0%		
자녀	남학생	빈도	127	51	89	24	18	10.702	.219
		%	41.1%	16.5%	28.8%	7.8%	5.8%		
	여학생	빈도	84	18	46	15	13		
		%	47.7%	10.2%	26.1%	8.5%	7.4%		
	남학생+ 여학생	빈도	99	34	94	25	19		
		%	36.5%	12.5%	34.7%	9.2%	7.0%		
전 체		빈도	310	103	229	64	50		
		%	41.0%	13.6%	30.3%	8.5%	6.6%		

\*\* p < . 01, \* p < . 05

‘매우 필요하다’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요하지만 잘 모르겠다’ 30.3%, ‘필요할 것이다’ 13.6%, ‘필요하지 않다’ 8.5%, 기타 6.6%의 순이었다. 따라서 학부모가 대체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용성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행한지 7년이 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비하여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24>와 같다.

‘그저 그렇다’가 전체의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25.3%, ‘매우 유용하다’ 22.4%,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 9.4%, 기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용성

구 분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	그저 그렇다	매우 유용하다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33	137	78	82	10	340	1.311	.859
		%	9.7%	40.3%	22.9%	24.1%	2.9%	100.0%		
	어머니	빈도	38	170	91	109	8	416		
		%	9.1%	40.9%	21.9%	26.2%	1.9%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16	53	44	40	5	158	9.798	.280
		%	10.1%	33.5%	27.8%	25.3%	3.2%	100.0%		
	40대	빈도	46	214	103	133	9	505		
		%	9.1%	42.4%	20.4%	26.3%	1.8%	100.0%		
	50대	빈도	9	40	22	18	4	93		
		%	9.7%	43.0%	23.7%	19.4%	4.3%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32	131	75	79	4	321	6.717	.567
		%	10.0%	40.8%	23.4%	24.6%	1.2%	100.0%		
	대졸 이하	빈도	38	163	90	105	14	410		
		%	9.3%	39.8%	22.0%	25.6%	3.4%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1	13	4	7	0	25		
		%	4.0%	52.0%	16.0%	28.0%	0.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35	118	69	77	10	309	19.085	.014*
		%	11.3%	38.2%	22.3%	24.9%	3.2%	100.0%		
	여학생	빈도	10	65	55	42	4	176		
		%	5.7%	36.9%	31.3%	23.9%	2.3%	100.0%		
	남학생+ 여학생	빈도	26	124	45	72	4	271		
		%	9.6%	45.8%	16.6%	26.6%	1.5%	100.0%		
전 체		빈도	71	307	169	191	18	756		
		%	9.4%	40.6%	22.4%	25.3%	2.4%	100.0%		

\* p < .05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 녀 모두 '그저 그렇다'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서 남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자녀로 둔 학부모는 '잘 모르겠다'가(각 24.9%, 26.6%), 여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제2의 조정전문기관'(31.3%)이 많아 유의미한 차이 ( $p < .05$ )를 보였다. 그러나 응답 학부모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자녀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5) 특별법 제정 필요성

학교폭력에 관한 현행법 이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25>와 같다.

<표 2-25> 특별법 제정 필요성

구분		절대적으로 필요	현행법 보완 대체	현행법 충분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110	147	33	10	33	7	11.015	.051
		%	32.4%	43.2%	9.7%	2.9%	9.7%	2.1%		
	어머니	빈도	129	213	19	8	41	6		
		%	31.0%	51.2%	4.6%	1.9%	9.9%	1.4%		
연령	30대 이하	빈도	65	63	11	4	12	3	14.294	.160
		%	41.1%	39.9%	7.0%	2.5%	7.6%	1.9%		
	40대	빈도	143	258	36	10	50	8		
		%	28.3%	51.1%	7.1%	2.0%	9.9%	1.6%		
	50대	빈도	31	39	5	4	12	2		
		%	33.3%	41.9%	5.4%	4.3%	12.9%	2.2%		
학력	고졸 이하	빈도	97	159	25	7	30	3	7.423	.685
		%	30.2%	49.5%	7.8%	2.2%	9.3%	0.9%		
	대졸 이하	빈도	131	190	25	11	43	10		
		%	32.0%	46.3%	6.1%	2.7%	10.5%	2.4%		
	대학원 이상	빈도	11	11	2	0	1	0		
		%	44.0%	44.0%	8.0%	0.0%	4.0%	0.0%		
자녀	남학생	빈도	95	141	22	10	34	7	16.185	.094
		%	30.7%	45.6%	7.1%	3.2%	11.0%	2.3%		
	여학생	빈도	73	76	11	2	13	1		
		%	41.5%	43.2%	6.3%	1.1%	7.4%	0.6%		
	남학생+여학생	빈도	71	143	19	6	27	5		
		%	26.2%	52.8%	7.0%	2.2%	10.0%	1.8%		
전체		빈도	239	360	52	18	74	13		
		%	31.6%	47.6%	6.9%	2.4%	9.8%	1.7%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처한다’가 전체의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1.6%, ‘잘 모르겠다’ 9.8%, ‘현행법도 충분하다’ 6.9%, ‘필요하지 않다’ 2.4%, 기타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6)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

학교생활에 대하여 자녀하고 대화를 자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26>과 같다.

<표 2-26>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

구 분			매우 자주한다	자주하는 편이다	가끔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기타	전체	$\chi^2$	p
학부모	아버지	빈도	56	143	130	6	5	340	17.438	.002
		%	16.5%	42.1%	38.2%	1.8%	1.5%	100.0%		
	어머니	빈도	77	221	113	1	4	416		
		%	18.5%	53.1%	27.2%	0.2%	1.0%	100.0%		
연령	30대 이하	빈도	28	80	46	1	3	158	7.143	.521
		%	17.7%	50.6%	29.1%	0.6%	1.9%	100.0%		
	40대	빈도	89	247	161	4	4	505		
		%	17.6%	48.9%	31.9%	0.8%	0.8%	100.0%		
	50대	빈도	16	37	36	2	2	93		
		%	17.2%	39.8%	38.7%	2.2%	2.2%	100.0%		
학력	고졸 이하	빈도	54	158	105	2	2	321	6.694	.570
		%	16.8%	49.2%	32.7%	0.6%	0.6%	100.0%		
	대졸 이하	빈도	71	196	131	5	7	410		
		%	17.3%	47.8%	32.0%	1.2%	1.7%	100.0%		
	대학원 이상	빈도	8	10	7	0	0	25		
		%	32.0%	40.0%	28.0%	0.0%	0.0%	100.0%		
자녀	남학생	빈도	51	138	111	2	7	309	11.379	.181
		%	16.5%	44.7%	35.9%	0.6%	2.3%	100.0%		
	여학생	빈도	29	93	52	1	1	176		
		%	16.5%	52.8%	29.5%	0.6%	0.6%	100.0%		
	남학생+여학생	빈도	53	133	80	4	1	271		
		%	19.6%	49.1%	29.5%	1.5%	0.4%	100.0%		
전 체		빈도	133	364	243	7	9	756		
		%	17.6%	48.1%	32.1%	0.9%	1.2%	100.0%		

‘자주 하는 편이다’가 전체의 4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끔 한다’ 32.1%, ‘매우 자주 한다’ 17.6%, 기타 1.2%, ‘전혀 하지 않는다’ 0.9%의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학부모는 대체로 자녀와 대화를 자주하는 것으로 보인다(65.7%).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16.5%) 보다는 어머니(18.5%)가 '매우 자주하는 편이다'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p < .01$ ) 그러나 다른 변수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 (7) 차이 분석 결과

### 1) 자녀대화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자녀와의 대화수준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차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집단은 자녀와의 대화가 많은 집단 30%, 보통 40%, 적은 집단 30% 정도로 구분해 분석을 하였다.

<표 3-1> 자녀대화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	적은 집단	259	3.93	0.80	1.920	0.147
	보통	364	3.98	1.03		
	많은 집단	133	4.10	0.78		
폭력경험차이	적은 집단	259	1.56	0.68	0.813	0.444
	보통	364	1.50	0.71		
	많은 집단	133	1.48	0.73		
예방실천수준	적은 집단	259	2.05	0.80	7.097	0.001
	보통	364	1.92	0.76		
	많은 집단	133	1.74	0.70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유용성	적은 집단	259	2.84	1.08	10.652	0.000
	보통	364	2.74	0.95		
	많은 집단	133	2.35	1.02		
학교폭력 특별법 필요성	적은 집단	259	2.48	1.51	15.209	0.000
	보통	364	2.07	1.09		
	많은 집단	133	1.79	1.07		

<표 3-1>에 의하면 자녀와의 대화수준에 따라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과 학교폭력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방실천수준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유용성, 학교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자녀와의 대화가 적은 학부모 집단이 학교폭력의 예방실천수준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유용성, 학교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2) 폭력심각성 인식에 따른 차이 분석

폭력심각성 인식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3-2>에 의하면 폭력심각성 인식에 따라 학교폭력경험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유용성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방실천수준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폭력심각성 인식이 낮은 학부모 집단이 학교폭력의 예방실천수준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표 3-2> 폭력심각성 인식에 따른 차이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폭력경험차이	낮은 집단	198	1.48	0.73	2.697	0.068
	보통	352	1.49	0.63		
	높은 집단	206	1.62	0.79		
예방실천수준 인식	낮은 집단	198	2.09	0.82	6.227	0.002
	보통	352	1.92	0.70		
	높은 집단	206	1.82	0.82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유용성	낮은 집단	198	2.68	1.05	0.217	0.805
	보통	352	2.70	0.99		
	높은 집단	206	2.74	1.05		
학교폭력 특별법 필요성	낮은 집단	198	2.39	1.39	8.759	0.000
	보통	352	2.20	1.21		
	높은 집단	206	1.88	1.19		

## 3) 폭력경험에 따른 차이 분석

폭력경험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하여 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3-3>에 의하면 폭력경험에 따라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유용성, 예방실천수준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3> 폭력경험에 따른 차이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심각성 인식차이	경험 없음	439	3.94	0.79	2.249	0.106
	1-4회	301	4.05	0.75		
	5회 이상	16	4.13	1.02		
예방실천수준 인식차이	경험 없음	439	1.94	0.75	0.847	0.429
	1-4회	301	1.94	0.79		
	5회 이상	16	1.69	1.08		
4-7번 문항 유용성 차이	경험 없음	439	2.75	1.03	1.015	0.363
	1-4회	301	2.66	1.02		
	5회 이상	16	2.50	0.73		
4-8번 특별법 필요성 차이분석	경험 없음	439	2.18	1.28	1.503	0.223
	1-4회	301	2.16	1.28		
	5회 이상	16	1.63	0.62		

### 3. 學校暴力 對한 學父母의 認識에 關한 研究要約

제주시(읍·면 제외)지역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일반적 인식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일반적 인식으로 학부모의 73.8%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학교폭력 인지 매체로 ‘학부모의 절반’이 59.1%가 TV뉴스·신문·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자녀를 통해서’가 22.1%, ‘지역 내 언론 및 학교의 통신문을 통해서’가 1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가운데 심각한 유형에는 ‘괴롭힘, 놀림, 따돌림, 언어폭력, 강제로 시키기 등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폭력 유형’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폭행, 금품갈취, 가혹행위 등과 같은 신체적·물리적 폭행'이 30.7%, '사이버 폭력'이 5.6%로 학교폭력 유형으로 학부모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

## (2) 학교폭력 대처 방법에 대한 학부모 인식

우선 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사건을 인지한 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를 조사하였던바 가해학생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또다시 폭력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시킨다'가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기관 의뢰'가 23.0%, '피해자학생 부모로부터 원만한 합의'가 17.2%, '학교 또는 담임교사 위임'이 16.5%, '부모와 상관없이 처벌을 원한다'가 3.7%,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다'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보다는 자녀가 폭력을 쓰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의 대처방안으로는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위임'이 25.8%, '가해자 학생부모와 원만한 합의'가 22.0%, '청소년 상담기관 의뢰'가 20.0%, '학교에 처벌을 요구'가 19.6%, '가해학생의 형사처분을 요구한다'가 7.0%. '자녀안전을 위하여 전학'이 4.9%,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가 0.4%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 위임 또는 가해학생 부모와 합의를 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전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된다.

학부모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신고기관에 관한 6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는 학교자치위원회·담임교사에게 신고 64.4%, 경찰이 14.2%, 청소년 상담기관이 11.0%, 교육청이 7.5%, 검찰이 2.0%, 어느 기관에도 신고하지 않는다가 0.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피해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 10명 중 6명이상이 학교자치위원회 및 담임교사에게 신고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학부모와 가정교육이 전체의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중문화 및 사회문화전체 33.0%, 학생자신 11.6%, 엄격한 학교분위기 및 입시위주 교육제도가 7.8%, 학교 교사가 2.8%, 기타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책임소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는 대중문화와 주변 환경 및 입시위주 교육보다 학부모와 가정교육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학교폭력사건 해결 주체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학교차원이 34.8%, 지역사회 내 전문조정기관이 20.5%, 당사자 간에 15.5%, 담당교사 차원이 13.6%, 관할 교육청 차원이 9.5%, 사법제도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학교폭력 피해실태에 대한 학부모 인식

학교에서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2회 정도가 34.0%, 3~4회 정도가 5.8%, 5회 이상은 2.1%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41.9%, 즉 10명 중 4명 이상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안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결과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은 '금품갈취'가 12.6%, '가벼운 폭행'이 8.7%, '괴롭힘'이 7.4%, '언어적·심리적 폭력'이 7.0%, '집단따돌림'이 5.7%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부모는 학교폭력 중에서 금품갈취나 가벼운 폭행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장소로는 '학교주변'이 54.4% 다음으로는 '학교 안'이 36.0%, '동네주변' 4.4%, '학원가 및 유흥가주변' 4.0%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발생장소가 학교주변, 즉 등하교시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자녀 학교에 불량서클 유무에 대하여는 42.7%의 학부모가 불량서클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 학교에 불량서클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차이는 40대와 50대가 학교폭력서클에 대하여 40% 이상 알고 있으며, 30대 이하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가 36.7%로 나타났다.

교사의 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꼭 필요하다면 체벌해도 좋다'가 83%, '어떤 이유도 체벌을 하여서는 안된다'가 8.5%, '교사 체벌로 인하여 학교폭력이 가중 될 것이다'가 4.0%로 나타난다. 따라서 학부모 대다수가 체벌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4)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학부모 인식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6가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나 실시되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학부모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학부모의 관심 부족'이 3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부족'이 24.7%, '교사의 관심 부족'이 13.4%, '학교의 전문상담 부족'이 9.7%, '학교주변 유해환경 확대'가 9.4%, '정부의 관심 부족' 6.7%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집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자신'이 74.7%, '학부모'가 72.8% 그리고 '교사'가 74.8%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는 '지역사회단체'가 47.4%, '경찰 및 정부기관'이 48.0%, '청소년 보호단체'가 55.7%로 보조적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해서 교사, 학생자신, 학부모, 지역사회단체, 경찰 및 정부기관, 청소년 보호단체 등 각 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인식이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점 사항은 '전인교육,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 강화'가 24.9%, '가정교육의 강화'가 20.6%,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정화'는 16.8%,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개발 활용'이 14.5%,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가 13.0%, '처벌강화,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10.0%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인식에는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모두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부모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로는 55.8%가 '전인교육, 인성교육, 상담교육실시'를 중요시 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의 필요성'이 19.3%, '학교특성을 고려한 폭력근절 대책 추진'이 14.7%, '학교생활 지도개선'이 8.7%로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인식은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가 86.6%, '잘 모르겠다'가 8.5%, '필요하지 않다'는 4.6%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

방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부모 10명 중 8.5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예방프로그램의 참석여부는 '시간이 허락하면 참석하겠다'가 56.7%,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가 26.5%, '관심이 있으나 참석하기 어렵다'가 13.2%로 응답하였다.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학부모 인식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역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다'가 42.3%, '잘 모르겠다'가 31.2%, '학교에서 배부하는 통신문을 통해' 13.9%, '자녀를 통해서' 11.6%로 응답하였다.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지역 언론 및 대중매체 또는 학교 및 자녀를 통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인식 하고 있으나, 잘 모르는 학부모도 31.2%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폭력대책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잘 모르겠다'가 41.9%,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다'가 22.2%, '학교에서 배부하는 통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가 16.5%, 그리고 '자녀를 통해 알고 있다'가 10.1%, '지역 내 언론을 통해서' 8.2%로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거의 과반수가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학부모 인식은 54.6%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비하여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 40.3%가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가 25.3%, '매우 유용하다'가 22.4%,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가 9.4%, 기타 2.9%로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대다수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대책법 이외의 학교폭력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처한다'가 47.6%,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가 31.9%, '잘 모르겠다'가 9.8%,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가 6.9%, '필요하지 않다'가 2.4%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부모의 대다수가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높

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정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대화가 적은 학부모 집단의 학교폭력 예방실천수준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유용성, 학교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학부모 집단은 학교폭력의 예방실천수준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第4章 學校暴力事件 法的 處理節次 및 問題點

### 第1節 學校暴力事件의 法的 處理節次

#### 1. 學生의 法的 性格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교육이념’(교육기본법 제2조)으로 교정이념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유함에는 연령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자녀”의 의무교육(헌법 제31조 2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보호(헌법 제32조 5항),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 4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못한 국민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sup>233)</sup>

반면에 학생은 “학습자”로서, “보호자”는 자녀를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2조 및 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없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초·중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따라서 학생의 법적 지위를 갖는 구속력의 효력범위는 학교공간과 재학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233) 이는 1984년의 세계인권선언,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 1989년의 아동협약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외된다.<sup>234)</sup>

성인과 구분되는 연령집단을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는데 현행 법률의 규율내용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연령에 따른 법적 지위

연령범위		용어	법률	규율내용
상한	하한			
24세	9세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
19세	0세	미성년자	민법	법률행위능력 제한
			선거법, 국민투표법	선거권, 투표권 부인
	10세 14세	소년	소년법	형사처분 특례, 보호처분
19세	0세	청소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구분/분리수용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청소년성매수 등 처벌
18세	0세	아동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조치
			가정폭력법, 성폭력법	범죄신고의무
	15세	연소자	근로기준법(18세미만중학교 재학중인 자)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
14세	0세	형사미성년자	형법	절대적 책임무능력자
-	만 5세	학생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법	학생의 징계

## 2. 學校暴力事件의 法的 處理

### (1) 학교폭력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의 자체적인 사고조사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각각 수사기관의 처분, 학교장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사건의 현장을 보거나 들은 사람은 학교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법적인 처리절차가 개시된다.

두 번째,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를 받았거나 알게 되었을 때는

2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집, 2006, 15면

먼저 해당학교(가해·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와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세 번째, 자치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또는 분쟁조정이다. 이는 학교폭력사건을 알거나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은 학교가 해당 학부모(가해·피해학생)에게 통보하고 사건의 조사와 동시에 자치위원회 소집하는 한편 교육장, 교육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5가지(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의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하여 9가지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이를 감안해 학칙에 의거하여 보호조치와 징계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서면, 증인면담, 해당학생 출석,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과정에서 자치위원회는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합의가 성립되면, 피해 및 가해학생 보호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처리에 대한 각서와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사과문을 받고, 조치결과를 교육장·교육감에게 서면보고 한다.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합의 불성립을 알리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비롯한 법적인 절차를 안내한다.

네 번째, 경찰은 학교폭력사건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차적으로 수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학교폭력사건은 통상적으로 경찰서 소년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폭행, 협박, 명예훼손(사이버상의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사안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는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검찰은 학교폭력사건을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학교폭력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폭행죄와 같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불기소처분인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대개 소년부송치결정이 내려지고 향후 소년

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각종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사안이 지극히 중대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은 바로 기소되고 정식재판에 의하여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폭행죄와 같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재판을 공소기각으로 종결한다.

한편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학생 및 그 학부모 또는 가해자학생 및 그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학교폭력사건의 유형별 처리절차

### 1)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처분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법은 단순히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이지 다른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형사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경찰은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해당학교에서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을 때 개시된다. 형사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먼저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단계를 걸쳐 검찰수사를 받은 뒤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만일 사건이 경미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경찰은 '훈방'조치<sup>235)</sup>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에게는 범죄소년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훈방할 권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경찰청예규인 「소년경찰직무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이른바 불량행위 소년<sup>236)</sup>을 비행소년이 아닌 풍기사범이라고 하여 훈방처리하고 있다.

235) 경찰훈방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놓고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절차법 제3조와 제19조에서 찾는 견해, 김은경 외,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1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과 분석 -, 「연구총서」 07-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26면 ; 박윤기, 앞의 논문, 175~176 ; 이금형,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68면 ; 윤동호 "소년범죄와 그 처리의 동향과 분석", 「경성법학」 제16집 제1호, 경성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46면, 주) 18에서 재인용 ;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 147면.



검사는 '불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sup>237)</sup>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sup>238)</sup> '봉사 활동 조건부 기소유예',<sup>239)</sup> 또는 '기소유예'를 하게 된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여타의 소년범죄와 마찬가지로 소년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소년법은 적용대상 소년을 犯罪少年, 觸法少年, 虞犯少年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처리절차와 규율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의 자이면 비록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즉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가해학생이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른바 觸法少年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 소년부판사는 경찰이 보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과, 검사가 보낸 만 14세 이상의 소년을 심리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 보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와는 달리 보호사건이라 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을 犯罪少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236) 불량행위소년이란 비행소년이 아니라 음주, 깃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소년경찰직무규칙 제2조 제6호). 그리고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은 흥행장 출입, 남녀혼숙, 흡기소지, 환각물질 등이 있다.

237)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일정기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뤘다가 선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검사가 부모나 유력한 제3자가 잘 보호하고 훈육하는 조건하에 기소유예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238) 검찰이 죄가 가벼운 소년범들에 한해서 일대일 멘토를 통해 지도와 조언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14세에서 19세미만의 소년범들은 6개월 동안 정해진 멘토와 수시로 연락하며 조언을 받게 된다.

239) 검찰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봉사활동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봉사활동을 추가,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 검찰에 따르면 19세미만 소년범이 범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서 일정한 봉사활동(1주일 10시간)할 경우 기소유예를 준다. 그러나 가해자가 약속한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는 취소되고 처벌조치 된다.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흔히, 죄를 범한 소년을 犯罪少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觸法少年, 그리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虞犯少年이라 하고 이들을 총칭하여 비행소년이라 한다. 우선 犯罪少年의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소년사건 및 직접 인지한 범죄소년사건을 수사한 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실제 犯罪少年의 처리방향에 관하여 검사의 폭은 매우 넓은 편이다.

검사는 ①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②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제기가 가능하더라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6조), ④ 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법원소년부로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⑤ 공소제기 하는 경우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인 때에는 약식명령을 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반면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觸法少年이나 虞犯少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은 해당 소년을 직접 법원소년부 송치하는데 경찰서장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소년보호처분은 犯罪少年, 觸法少年, 虞犯少年의 보호사건을 소년부판사가 심리한다. 소년의 교화개선과 보호, 소년의 환경을 조성하거나 성행을 교정할 것이 요구되어 소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 하는 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비행에 관하여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비행에 나타난 소년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며, 보호처분의 대상인 비행소년 가운데에는 범죄소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에 대처하여 가해지는 수단이다.

<표 4-2>에 의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판사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10가지 종류이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표 4-2>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종류	내용	기간	적용연령	비고
1호	보호자 등 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6월(6월 한도로 1회 연장)	10세 이상	
2호	수감명령	100시간	12세 이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확대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4세 이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확대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2년(1년 한도로 1회 연장가능)	10세 이상	
6호	복지시설 등 위탁(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월(6월 한도로 1회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등 위탁(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6월(6월 한도로 1회 연장가능)	10세 이상	의료소년원 추가
8호	1월 이내 소년원 송치	1월 이내	10세 이상	신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2) 민사사건의 처리절차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학생 및 그 학부모는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고가 발생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 즉 치료비(적극적인 손해), 일실수익(소극적인 손해), 위자료(정신적인 손해) 등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속한 보상이 최우선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민사사건 처리절차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자체해결(합의)방안이다. 자체해결이란 우선 피해자가 그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는 경우, 가해자 측이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서로 화해하는 경우, 관련 교원들이 일정금액을 모금하여 처리하는 경우,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금을 하여 보상함으로써 해결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고 당사자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 매우 효과적이고 손쉽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으나, 반면 피해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결은 비공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채 여운을 남기게 되고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은 상당기간 심리적 불안상태에 처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으로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때에는 다시 학교나 교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자체적 해결방법은 임시적이고 미봉적인 처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이다. 학교안전공제회에는 학교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적 상호부조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sup>240)</sup>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의 학생사고(학교폭력 포함)에 대해 요양급여, 폐질급여,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등 학생사고로부터 학교와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기금조성 방법, 급여지급한도, 회원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고, 회원 가입형태가 강제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성된 기금이 열악한 상태이며, 자칫 피해정도가 큰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범위가 제한되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sup>241)</sup> 결국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역시 그리 효과적인 처리방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다.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240)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여러 사고에 대비해 학교가 들어놓은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241) 경기도 포천시 ○○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김민주양(가명)은 1년 6개월간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공제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학교측은 그런 제도가 없다며 공제급여 신청을 기피, 조선일보, 2010. 2. 23, 12면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 공제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학부모가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 할 수 있도록 보상절차 개선, 2. 보상 결정금액 및 이의제기 절차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개선, 3. 요양급여에 대한 과실상계를 우선 폐지하여 보상수준 확대, 4.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5. 보상정책 및 보상수준 결정과정에 학부모대표·전문가 참여 확대, 6. 학교 안전사고 관련 시·도 교육청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보도자료. 2011. 1. 16.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최종적인 방법이다.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우선하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국적인 방법으로 소송에 의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고를 해결하는 경우,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신에 법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사, 학교가 서로 원고·피고가 되어 다투게 되어 상호 불신이 심화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은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물론 소송비용 등 경제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민사사건의 처리방안으로서 소송은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이다.

### 3. 學校暴力事故에 대한 法的 責任

학교폭력사고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진다. 형사책임은 우리가 흔히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런 말들을 하듯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형사제재의 형식으로 지는 책임을 뜻한다. 이에 비해 민사책임은 결국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책임으로서, 예를 들어 서로 계약의 관계에 있다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관계가 아닌 타인들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1) 형사적 책임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학생들의 폭력행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 징역 등의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대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되지만, 그 행위가 중하면 소년원에 보내지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sup>242)</sup>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방폭행인 경우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가해학생을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가해학생은 폭행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은 처벌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쌍방폭행의 경우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더 많이 폭행당하였는지는 별개로 하고 양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상대방의 도발에 의해 폭행을 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신적 폭력(괴롭힘, 왕따 등)은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괴롭힘과 함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같은 폭력이라 하더라도 그 양태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인 이상이 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가해학생의 법적 책임은 각각 다를 수도 있다.

## (2) 민사적 책임

학교폭력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문제에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양당사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적 책임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었지만, 민사책임은 사안에 따라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학부모, 교사, 학교설치경영자(국·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민사법적 해결의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불법행위로

242) 헌법재판소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마533 판결에서는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 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②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이므로 책임능력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③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이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와 피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학교폭력사건에 자주 문제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이다.<sup>243)</sup>

또한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와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서는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학생, 가해학생들에 대한 안전, 보호의무가 학교 교사에 있고, 위 교사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가 학교의 장에게 있어, 위 학교에 대하여 최종적인 지휘·감독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교육감인 경우 법적인 책임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나 명예가 인터넷을 통해서 순식간에 심하게 훼손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의 명예를 회복시키거나 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피해학생은 명예훼손에 다른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사실과 사과문을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본인이 구타당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 해 줄 것 등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第2節 學校暴力事件에 대한 關聯法令의 問題點

243) 학교에서 이른바 왕따로 인하여 자살한 사건에서 학교폭력, 왕따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학생의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가해학생들이나 교사, 학교에서 예측 가능했느냐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일반손해배상 사건에서 적용되는 인과관계라는 법적인 형식기준을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인 학교폭력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 1. 司法節次와 教育節次의 重複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 개인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비행이나 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국제규약<sup>244)</sup>의 기본정신에 의하여 성인범죄자를 처리하는 절차와 소년사법절차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 연령이 어린 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완성의 상태에 있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이 재발방지와 사회복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245)</sup>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은 학생간의 폭력행위가 발생한 사례에서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가 적용되어 선도 및 징계조치를 받게 되지만, 학교폭력이 동시에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법과 소년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의 정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의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는 사례에서 형법 및 소년법의 적용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부분에 국한시켜보면 학교폭력대책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목적하고 있다.

반면 소년법(제1조)은 犯罪少年, 觸法少年, 虞犯少年에 대하여 환경조정과 성행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학교폭력대책법과 소년법의 규율목적은 “선도·교육”과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로 구분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조치

244) 최근 국제기구들은 미성년자에게 주어지는 법률적 보호로서 최소 규칙과 권고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베이징 규칙’은 전 세계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법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을 일련의 명백한 조항들(소년들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존중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45) 한편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비행 영역은 크게 세 가지 행위군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들로 여기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과 같은 일부 재산범죄가 포함된다. 둘째, 경한 비행으로서 빈도상으로 볼 때 중한 범죄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형법 위반 행위이다. 셋째, 청소년 지위비행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위반행위로서 예를 들어 음주, 흡연, 음란물 접촉, 사소한 싸움,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 등이다.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12~13면.



를 비교해보면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봉사”와 제5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소년법 제32조 제3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의 정당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법이 소년법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학교폭력 가운데는 사법당국이 개입하지 아니하고는 학내에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사례도 많지만 발생사실을 알더라도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건이나 수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여파가 자칫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대립으로 사실관계는 사소한 사건에서 대형사건으로 비화 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법적처리 절차는 한마디로 사법절차와 교육절차의 중복 속에서 경계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법절차와 교육절차의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폭행에 대해 고소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법절차는 종료되지만 교육절차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분쟁조정으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의 장이나 자치위원회의 교육적 절차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분쟁조정인 경우는 교육적 절차인지 사법절차인지 그 본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은 교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형적인 법적 다툼 일종의 민사사건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에서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이를 수행하기에는 자치위원회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절차와 교육절차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 법의식은 사법절차를 더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교육적 접근이나 사법적 접근 둘 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 그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된 각 쟁점별로 살펴보자 한다.

## 2. 學校暴力 5個年 基本計劃의 成果 및 問題點

### (1) 5개년 기본계획의 내용과 성과

200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범정부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학계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7월 30일 제정되어 시행 되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대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정책의 법적 근거인 학교폭력대책법이 2004년에 국회에서 제정된 이후로 10차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의 정의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수립, 학교폭력예방 및 발생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방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10차에 걸쳐 개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2008년 개정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하여 제5조 제2항(성폭력),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5항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8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법조항을 개정 하였다. 2009년 개정에서는 제2조(정의) 제5호에 “장애학생”,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5항에서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6조의2(장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여러 가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 하였다. 그리고 2010년 개정에서는 제8조(기획위원회 구성) 제3항 제2호를 삭제 하였다. 2011년 개정에서는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등을 개정하였고, 최근 2012년 개정에서는 제2조(정의) 제1호 “학교폭력”에서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에 2명 이상의 학생, “사이버 따돌림”, 제11조(교육감의

무),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조항을 일부개정 또는 신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하여 성폭력을 포함하였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선(先)보상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또한 가해학생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조치를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엄격해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여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함께 특별교육도 의무화 또는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변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2)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의 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6개 관계 부처는 시민단체, 전문가, 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고 추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근절 5개년 기본계획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받는 학생 수를 매년 5%씩 5년 동안 25%로 줄이는 것에 목표로 하여 1차 기본계획('05~'09)이 수립되어 시행하였다. 현재 2차('10~'14)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도 정부에 의한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1차 기본계획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부에 의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목표와 네 가지 주요 전략방향 그리고 다섯 가지 주요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과제는 ①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②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강화, ③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④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별로 주관 및 협조부처를 선정하여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가 구성되고, CYS-net(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이 추진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협력망을 갖추게 되었다. 배움터지킴이 배치, CCTV설치<sup>246)</sup>, 긴급전화 설치,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학교폭력 SOS지원단 등 학교폭력 예방·신고 인프라가 확대되고, 대안학교교육위탁 교육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 것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체계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추진 과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①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즉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sup>247)</sup>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 3개 정책과제 총 12개 세부사업 추진 등이 있다. ②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이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교원의 대응역량 강화, 학교폭력 추세에 맞춘 선제대응,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 등 4개 정책과제 총 14개 세부과제 등이다. ③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 조기발견·신속개입·상담·해결 및 원스톱지원체제가 있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치위원회 심의활성화, 학교 상담망 구축, 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강화, 정보공시 상세화 등 책무성 제고 등 4개 정책과제 총 15개 세부과제 추진 등이 있다. ④ 가해자 선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과 치유로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적응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진단·상담시스템 구축,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관리, 피해학생 보호·지원

246) 지난 5년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학교에서 실시한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교육청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CCTV설치가 가장 효과이라고 응답하였다. CCTV 설치율은 전체 학교 중 2009년에는 61%, 2010년에는 70%, 2011년에는 90%가 설치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2011, 20면.

247) 180여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를 운영하며, 학교 내 CCTV 설치·배움터 지킴이 배치가 대폭 확대되고, 「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실시되어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1. 13.

체제 구축, 가·피해학생 선도·치유기관의 확충과 특성화 등 4개 정책과제, 총 15개 세부과제 추진 한다.

⑤ 규칙과 질서존중 학교시스템 구축,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강화, 언어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 또래 상담기능 강화 등 4개 정책과 총 14개 세부 추진 등이 다. 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범사회적 폭력근절 문화조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3개 정책과제 총 8개 세부과제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 (4)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의 문제점

이 기본계획은 학교폭력문제의 근절 및 예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단체 및 전문가, 국가 및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시작되는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본계획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많은 기관들이 있으나 그 활동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만도 8개 부처이며 관련기관이나 단체들도 매우 다양하게 상당한 수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다루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산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같은 사안들이라도 처리가 달라지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부분이 생겨 하나의 사안처리에도 많은 시일이 걸린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도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통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평가기준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248)</sup>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여러 제도들이 적용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에 있어 각 부처나 관련기관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모든 절차에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249)</sup>

둘째, 기관들이 연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계기관의 역할이나 연계방법에 대한 이해도나 기관들이 연계를 지도,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sup>250)</sup> 전자

248) 박효정·정미경,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효과 평가 연구”, 「한국교육」 제33 제3호, 한국교육개발원, 2006, 161~164면.

249) 문용인, 앞의 책, 65~66면.

의 경우 각 기관마다 내부의 규칙과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 연계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형식적인 연계에 그치게 된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기관들만 순례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후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에는 공통적으로 말하고 내용이 국가·학교·가정·학교·지역사회 등과의 긴밀한 연계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를 한 부처가 전담 하되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먼저 학교나 시·도교육청 등 국가중심기관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을 줄이고 기관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관부처인 교과부 내 담당부서의 담당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지속적인 정책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실무자의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추진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2차 기본계획이 작성되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인사상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에 시·도별로 지역위원회는 구성되었으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많아 시·도교육청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위해 단위학교마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기능) 운영하고 있고 학교폭력 발생 시 자치의원회의 심의건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자치위원회 위원 섭외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의 경우 자치위원들의 참석인원이 부족하여 위원회가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다루어질 때 자치위원회의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치위원들의 주관적인 견해나 학교의 입장이 반영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강화로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신고 인프라 확대는 물론 전문연구단(교과부), 교원네트워크(교육청) 등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정책 역량 강화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수업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송교육’이나 ‘강당식 교육’ 등 집합식 교육으로 운영되거나 형

250) 금명자·오혜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31면.

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전 교원대상 예방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은 관심이 높은 반면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관심이 적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능력에 부족하며, 학생지도의 어려움,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부담, 재정지원 부족, 과도한 책임 등으로 학교폭력업무에 대해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추방의 날이거나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는 사전에 기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전시성 행사나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으므로 분명한 내용과 계획 하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각종 피해학생의 치유프로그램개발·보급,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호체제 및 선도 강화 등의 학교폭력 예방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단위학교의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징계, 또는 단순한 상담 위주이며 또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 가해측과 피해측간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또한 단기위주 운영과 위탁기관의 특성화 부족 및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연계망 구축에 문제점들이 있다.

### 3. 學校暴力 關聯法令의 爭點別 問題點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점

##### 1) 관련법령의 규정의 내용

학교폭력대책법 제12조 제1항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2조 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여기에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4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제13조 제2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제1호). 자치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14조 제6항).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은 1. 해당학교의 교감, 2. 해당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sup>251)</sup>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자치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251) 자치위원 중 대체로 교감이 위원장이 된다. 이는 구법에서 자치위원장은 학교장이 겸직하도록 한 것과는 비교된다.



## 2) 문제점에 대한 검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개정 전까지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제12조 제4항)되어 있다. 이는 단순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 일일이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과 대통령령으로 규율함으로써 오히려 현장에 맞게 더 유연하게 자치위원회 관련 정책을 입안·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학교 내에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자치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자치위원 구성위원 임명·위촉권이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점, 특히 자치위원회 소집 자체가 쉽지 않으며 위원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항상 제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4분의 1에 의해 소집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사건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학교 현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자치위원회 소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sup>252)</sup>

두 번째로는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sup>253)</sup>이 과연 자치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법률적 학식이 있는 분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형식적인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편 검사와 경찰은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에 의거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들이 자치위원

25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자치위원회에 갈등 조정에 전문성을 지닌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법조인, 의사, 경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지난해 자치위원에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학부모 ○씨는 “학부모들은 처벌이나 법의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교장과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이야기를 주도한다”며 “결국 학교 문제가 소문나서 좋을 것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하지는 분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쉬쉬하고 끝나는 폭력자치위’, 2012. 1. 12, 8면.

253)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조병인 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6-14-04, 한국교육개발원, 2006, 192~194면.

으로 활동하는 사안의 경우는 대부분 범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로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해당 학교의 장이 위촉하므로 자연스럽게 학교장은 배제되고, 더구나 학교에서 주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교감선생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구법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겸직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의 장이 책임을 지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하여 선도·교육을 해야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에게 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교안전’의 문제는 학교장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학교폭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도 유리한 면도 많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학교장이 아닌 사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면, 학교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를 제3자적 입장에서 방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예상되어, 논리상 문제가 있더라도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

### 1) 관련법령 규정의 내용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 제4항).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 2)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안처리를 잘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으며, 원천적으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의 유형이 무엇이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교육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up>254)</sup>

학교폭력대책법 제정의 주안점도 법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총 22개조 중에서 한 개조만이 예방교육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된 법령은 기구설치에 관한 규정들만 있을 뿐 이 정도의 내용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지 본 연구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 법에서는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만 있지 어떻게 예방할지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시행령에서도 예방교육의 횟수만 나와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예방과 가해학생이 다시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고 폭력적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법에 열거된 가해학생 조치사

254) <표 2-17>에서 학부모 인식에 관한 실증조사를 살펴보면, 전인교육강화,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 강화가 24.9%, 가정교육강화가 20.6%, 학교주변유해시설 정화가 16.8%, 피해자 및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개발 활용이 14.5%,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 13.0%, 처벌의 강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 10.0%로 나타났다.

항만으로는 완벽한 예방이 되지 않는다.

먼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법에 관한 인식과 법질서 의식 등이 형성되는 시기가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법과 규범에 의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규범의식이 발달되고 법에 관한 인식과 법질서 의식 등이 형성된다.<sup>255)</sup>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징후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거나, 언제 당할지 모르는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한 번의 예방교육으로 인식과 태도 변화까지 이끌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sup>256)</sup>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다. 이 확신을 뒷받침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 교육인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대책법'을 적용하는 것 모두 일차적으로 학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둘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과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도 질적인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 (3)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의 문제점

#### 1) 관련법령 규정의 내용

255) 광금주, 「법심리학의 제문제(아동·청소년·사법판단)」, 학지사, 2003, 12~46면.

256) 문용린 외, 앞의 책, 402~449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법에서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제2호, 제5호).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제3호). ④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2항). ⑥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 제1항).

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제16조 제4항).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

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제5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제6항, 제7항).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제8항).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 범위는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시행령 제18조) 등이다.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2) 문제점에 대한 검토

피해학생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규정상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학교의 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이지 강제규정은 아니다. 즉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할 소지도 배제하지 못한다. 더구나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을 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자도 동의를 하였을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일시보호는 어디에 할 것인지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며칠까지 할 것이며, 치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피해학생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육성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학급교체는 학사일정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16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모호하여 피해학생에게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에 한계 있다는 점, 또는 피해학생은 보복우려로 인하여 피해신고조차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데 보복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등 학교폭력대책법은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조치에 대한 시행령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257)</sup>

####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문제점

##### 1) 관련법령 규정의 내용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sup>257)</sup> 박윤기, 앞의 논문, 94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등이다(제17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제17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제4항).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7조 제5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 제6항).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제17조 제7항).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제17조 제8항).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제17조 제9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0항).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의2 제1항).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의2 제2항). 제2



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7조의2 제6항).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이다(시행령 제19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시행령 21조 제1항).

## 2) 이행의 강제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학교장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퇴학처분까지 가능할 뿐이다.

### 3)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학교폭력사건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는 교육적 조치에 대해서는 불응하기도 하는 등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sup>258)</sup>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들도 자치위원회의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조치를 소홀히 이행하는 학교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 제17조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퇴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보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출석정지등의 조치의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또 다른 비행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교육이수의 경우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의 부모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자기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가해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이수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에게 또 다른 징계처분등을 가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현재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는 교육적 효과와 학교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부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일부 권리침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으며,<sup>259)</sup>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사과의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sup>260)</sup>가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가해학생의 경우 뉘우침이나 진성한 반성이 없이는 형식으로 써내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조치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는 삭제하는

258) 서울의 모 중학교에 다니는 14세의 여학생을 폭행한 여학생에게 전학 권고조치가 내려졌으나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가정 사정을 이유로 전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또 2명의 남자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집단 폭행한 일이 발생하여 자치위원회가 출석 정지조치 뒤 전학 권고를 내렸지만 따르지 않는 사례가 있다. 한국일보, 이름값 못하는 '학교폭력자치위', 2010. 7. 10, 12면.

259) 김용수, 앞의 논문, 15~52면.

260) 헌법재판소 1991. 5. 1. 89헌마160.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라는 조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재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단순히 금지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의 내용과 방법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때에 실효적인 보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건의 확대 및 추가적인 학교폭력이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전학

전학은 어느 지역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부모의 생활근거지가 학생의 거주지역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지역으로의 전학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지역에 또는 인접한 지역으로 전학이 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5조에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학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학을 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전학조치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전학을 갈 수 있도록 그 기간 등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 라. 학교에서의 봉사

일반적으로 교내 봉사는 10일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복지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케 한다. 학교에서의 봉사내용으로는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사들의 업무보조, 교재·교구 정비,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등이 있다. 하지만 교내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지시만 내리고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가해학생들이 제대로 뉘우치고 봉사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 마.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내용과 구체적인 시간 상한, 하한을 규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는 5일 이상 10일 이하로 하고 있다. 사회봉사라는 명칭은 사회봉사명령이라는 형법상의 제재수단과 혼동 될 여지가 있으므로 봉사활동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61)</sup> 사회봉사의 경우 위탁할만한 시설의 부족, 당해 학교의 이미 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봉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 바.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교육명령제도와 동일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 부과한 조치를 고의로 응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해 제재할 방법은 없다. 또는 교육의 내용 및 주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경우 상당수가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의 문제점과 가해학생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사. 출석정지

출석정지란 정학처럼 학생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sup>262)</sup> 하지만 정학과 유사한 출석정지는 비행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임회피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이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학교 밖에서 또는 다른 폭력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방치하고 가해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출석정지 기간 동안 4호 또는 5호를 병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 학년 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이어야 하며(제45조 제2항),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220일 이상)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하므로(제50조 제2항)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61) 박윤기, 앞의 논문, 87면.

262) 박병식, 앞의 논문, 94면.

#### 아. 퇴학처분

학교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중학생의 경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가해학생이더라도 의무교육기간이어서 퇴학을 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징계의 불이행시 징계를 추가로 가중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sup>263)</sup>

그 예를 들면 <표 4-3>에서 학교폭력으로 2007년~2009년 가해학생의 징계 받은 학생 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가해학생의 징계 받은 전체학생의 수 22,862명이다. 이 중 중학교가 14,948명(65%), 고등학교는 7,411명(32%)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의 수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7	145	5,013	3,286	8,444
2008	207	6,089	2,517	8,813
2009	151	3,846	1,608	5,605
총계	503	14,948	7,411	22,86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0, 2. 26)

반면에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이후에 반성의 의미가 현저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이버전의 차원에서 사면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sup>264)</sup>

#### (5) 분쟁조정의 문제점

##### 1) 관련법령 규정의 내용

263) 정한중, 앞의 논문, 86면.

264) 중학교의 전학의 경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에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하면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분쟁조정이란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의 주선 하에, 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타협과정을 통해 화해에 이르는 제도이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으로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분쟁, 피해학생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분쟁 또는 학교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측이 추가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공개사과, 학급교체, 전학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 등이다.

학교가 같은 학생간의 분쟁인 경우는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분쟁을 조정하고,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분쟁에는 동일한 시·도교육청 관할 소속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분쟁을 조정한다.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 소속인 경우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발생시 우선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분쟁조정 개시(5일 이내)→분쟁조정 일시·장소 통보→자치위원회의 조사→분쟁의 조정(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권고, 조정자의 조정안 제시)→분쟁종료(분쟁조정 1개월 이내의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분쟁조정의 결과처리(합의서 작성 및 교육감에게 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처리한다.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학교폭력에 사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28조 1항).

또한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은 반드시 분쟁을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그리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 2)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분쟁조정(제18조)제도의 긍정적인 측면<sup>265)</sup>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은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치료비나 여러 조치에 대한 것이 많지만 이를 실제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다. 먼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분쟁조정은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준수법적인 절차로 보이는데 이를 자치위원회의 임무(제18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이라는 준수법절차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도 문제이며, 그 절차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에 대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결국 많은 경우 사법적인 절차로 이행할 수밖에 없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실효성도 없이 자치위원회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분쟁조정자가 제시한 합의안이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서 강제 집행력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즉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에게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를 권유해볼 수 있는 화해권고제도<sup>266)</sup>의 기능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는 분쟁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1월

265) 이에 대하여 분쟁조정은 일반 소송과 비교하여 절차의 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경제적이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분쟁당사자들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 비밀이 유지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66) 개정소년법은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서 화해권고제도를 도입하였다(소년법 제25조의3). 즉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 교정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소년의 품행교정 및 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화해권고제도가 가해자인 소년을 위한 구제제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변상을 위한 제도임을 의미 한다. 한인달, “한국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8, 16면 ; 또한 소년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결정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이 화해를 하면 그 사항이 보호처분 결정시 참작되어 원래의 결정 내용보다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승현, “한국 소년사법에서 피해자 배려의 문제” -화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제13호, 2009, 146면.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분쟁조정을 경험해 본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다시는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1개월 이내의 분쟁 조정을 학교에서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는 불개시 또는 중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굳이 조정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네 번째,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심각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이 실익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한 경우 다른 외부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은 사실상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을 갖춘 분쟁조정 전문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sup>267)</sup>

우리사회에서는 사법절차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많은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 그 예로 전자상거래나 소비자분쟁 등을 들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분쟁조정도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오히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그 권위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선부른 조정이나 개입은 오히려 문제양상을 더욱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과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입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 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6)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267) 김은경·이호중, 앞의 논문, 97~99면 ; <표 2-9>에서 학부모 인식에는 학교폭력사건의 해결주체는 사법절차보다는 학교공동체를 주축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 측과 지역사회의 전문적 개입(조정센터)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관련법령 규정의 내용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제4항,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긴급전화 설치·운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0조의2 제1항, 제2항).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시행령 제30조).

## 2) 문제점에 대한 검토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제20조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신고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있다.<sup>268)</sup> 또한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신고의무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면 그 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신고하려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신고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긴급전화의 경우 활

268) 신고의무 가운데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조(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등과 같이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별칙규정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법은 제1조(목적) 부합된 법률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학교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은폐·축소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보고의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용도가 미비하고, 전문적으로 상담 및 대응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법령에서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효성 있는 신고제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시행령은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sup>269)</sup>

---

269)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학대를 방지하고 수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第5章 學校暴力 對策의 改善方案

### 第1節 學校暴力 對策의 政策方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 당시의 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여러 차례 법률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은 앞으로 보완해가야 할 부분들도 많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은 지금도 개정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계 또는 전문가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국회 및 정부기관들이 기존 학교폭력 대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의 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學界 및 專門家의 政策方向

지난 10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발생률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해자 유형은 더욱 더 교묘해지고 연소화·집단화·흉포화 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 간에 싸움이 아니라 가정·학교 및 지역 사회 그리고 정부의 학교폭력대책 근절 의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해행동을 유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구조화된 설문지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장난 또는 이유 없음 등으로 응답하고 있어 가해 이유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270)</sup> 이에 대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가해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이유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질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개입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만 아니라 정부와 협력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가족·학교·지역사회 등의 다차원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학교폭력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그간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해학생 또는 가해의 위험징후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언제 당할지 모를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법 제14조 제3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상담교사<sup>271)</sup>의 교원인력수급 및 제정지원 어려움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전체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sup>272)</sup> 따라서 전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모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여건상 순회교사제도<sup>273)</sup>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조치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정된 대화와 함께 비밀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상담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상담실의 규모와 반드시 필요한 장비 등의 범위에 대한 강제적인 법 조항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예방적 개입프로그램의 개발, 학부모, 교사 등을 위한 교육과 연수

270)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앞의 책, 95면.

271) 조병인 외, 앞의 논문, 43~44면.

272) 김범수, 앞의 논문, 156~157면.

27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 등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외부의 전문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게 다루려면 먼저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사법기관 외에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4조 제4항 또는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전담기구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구'가 성폭력·중상해·폭행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지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대책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학계 및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의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연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의 발생실태, 원인, 예방대책,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교육정책과 형사사법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절차와 방법들을 계속 강구함으로써 법률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政府의 政策方向

### (1) 법률의 적극적인 시행 및 보완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 이후 10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일부 보완되고 수정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현행 법적 처리의 문제점으로 사법절차와 교육절차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에 적용되는 학교 및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제6차 개정안부터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성폭력

이 포함되었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부과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대부분의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갈등이나 학교 부적응 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는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는데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의 보호)의 보호조치로 5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학교폭력의 정의(제2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유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대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시행 및 평가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중앙점검체제와 같은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픈라인 상에서의 조직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의 시스템 구축으로 병행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부 내의 담당인력을 확충하고 타 부처 담당자들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의 경우 적절한 업무조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중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통일된 평가방안과 실적기준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성과분석이 아니라, 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계획대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서 나온 수정 및 보완사항들을 추진과정에서 반영시키거나, 해마다 “학교폭력 백서”를 발간하여 한 해 동안 학교폭력 대책들의 내용과 성과, 학교폭력발생 및 처리현황, 학교폭력에 대한 최신 동향 등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폭력 대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연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에 반영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 발생 후 개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발생의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2) 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의 조정

현재 경찰은 학교폭력 대처에는 학교담당경찰관제,<sup>274)</sup> 학교폭력 One-Stop지원 시스템 구축,<sup>275)</sup> 스쿨폴리스 배치 등을 하고 있다. 검찰은 학교담당검사제와 신고전화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sup>276)</sup>은 그 운용방식이나 업무영역이 대동소이하다. 즉 동일한 관할지역에서 동일한 학교를 대상으로 별개의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활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의 예방과 청소년 선도업무는 경찰의 기본사무(경찰법 제3조)이며, 검찰은 기소유지와 형의 집행(검찰청법 제4조)이 본연의 임무이다. 이미 검찰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등의 효과는 상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sup>277)</sup>. 그러나 이는 경찰과 교육기관과의 임무와 역할을 대신하거나 중복하는 비합리적인 면도 있다. 더구나 학교폭력대책법 제6조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274)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학교담당경찰관' 지정·운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서클에 대한첩보를 입수하는 한편 초등학교는 지역경찰(팀별 1명), 중·고등학교는 형사기능(학교별 1명), 학교안전강화학교(시교육청 선정 184개교) 및 특수학교(29개교)는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브리핑, 2012. 1. 3.

275) 정부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One-Stop지원시스템'을 구축 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고전화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1. 11.

276)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처음 시도하여 이후 각 지검·청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1997년이다. 운동의 초기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검찰 주도하에 자원봉사위원을 중심으로 운동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검찰은 검찰 내부에 운동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선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자원봉사위원을 적극지원 하였다. 1999년에 들어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 검찰주도에서 순수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운동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였다. 1999년 5월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차원의 예방운동을 승화 시키고 검찰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한 분석·평가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후원 사업으로는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 문화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이외에 법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277) 이순례, 앞의 논문, 97면 ; 허경미, 앞의 논문, 101면.

관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교육기술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과 교육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그리고 관련 학생피의자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에 조직되어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범죄예방위원)<sup>278)</sup>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범죄예방위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심리상담, 인간관계 기법, 그리고 멘토링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教育廳 및 學校의 政策方向

#### (1) 教育廳

학교폭력 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청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특히 가해행위 및 피해행위가 복잡한 경우 또는 두 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연계된 사안의 분쟁조정, 실태조사 및 확인 접거, 예방활동 전개, 네트워크 관리, 상담, 조언,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 등은 학교에서 보다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학교교육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이고 한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79)</sup>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교육청 정책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타 기관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 내 연계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와

278) 범죄예방위원은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 훈령 제373호)에 의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선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http://www.bumbang.org/home/intro/index\\_05.asp](http://www.bumbang.org/home/intro/index_05.asp)

279) 2005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한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의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를 설정하고,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고 지역관계기관(검찰, 경찰 포함) 및 전문가와 사회단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단위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를 발족시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주요사항을 협의 및 추진하도록 명시(권고)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Cys-Net(여가부)나 Wee센터(교과부), One-Stop지원센터(경찰청) 등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특별교육이 의뢰된 기관의 교육내용과 질이 충분치 않아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신속하게 상담 및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지원망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이 발생되어 일선학교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학생 간에 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갈등상황에 있는 경우에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중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현재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학교폭력 발생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가 심의한 건수가 2010년의 경우 7,823건<sup>280)</sup>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만 개를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린 평균횟수는 1년에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자치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정족수만을 채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심의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자치위원으로 활동 가능한 전문가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구축하여 학교에 제공하거나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학교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따라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고 학교폭력 언론공개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면서 학교폭력 문제도 점차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를 정

---

280) <표 1-5> 참조.

책을 제안 하고자 한다.

먼저 낙후된 학교의 시설환경과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의 비교육적·비인격적인 현장 내용을 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된 학교의 조성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을 바로하고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막아줘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에 보호이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부과된 조치가 마무리되면 가해자가 또 다른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의 충격과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 이외의 심리적, 적응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역할이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까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추후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나 차별금지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sup>281)</sup> 물론 많은 학교들이 학생생활과 관련된 규정들을 학생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게 변경해 나가고 있지만 학교의 규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학생들과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교사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 그러한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sup>282)</sup> 이에 학교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수행해 나가면서 학교 내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고, 그것을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집단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며 학교폭력을 부적절한 갈등해결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281) 교원, 법학자, 변호사, 인권전문가, 유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비롯한 생활지도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 교육청, 2010. 11. 9.

282) 교육계는 학교폭력대책 발표 후속책으로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만들어질 '학생생활규칙'이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 반영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한 두발이나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의 항목들을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한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상위법인 조례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닌지 ...", <http://media.daum.net>. 2012. 2. 6.

한다. 그러한 학교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민주적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과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학교 내에 전문상담교사를 확충을 하고 학교상담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가 주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인 행정 체계의 수립이 필요 할 것이다. 각급 학교는 학교별로 주변 환경이나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조직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단위별로 전문가, 사회단체, 청소년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학생지도대책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경찰 연락협의체를 구심점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비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sup>283)</sup>

#### 4. 家庭 및 社會의 政策方向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환경이다.

가정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징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방임적이거나 지나친 지배적 태도, 가족 빈곤이 문화적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좌절감, 가족 간에 불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은 학교폭력을 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sup>284)</sup>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의 불성실한 양육태도 및 갈등이 심한 경우, 가정 내에서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충족하지 못한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또래나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가정이 학교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에

283) 문용린, 앞의 책, 66~67면.

284) 도기봉, 앞의 논문, 19면.

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기타교육 등 학부모대상 교육에 참가하는 학부모 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학생의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거나, 동영상 강의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높여야 하며,<sup>285)</sup>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예절, 생활습관, 가치관 등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 자신의 자녀를 과보호·편애하여 무조건 자녀의 행동의 옳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자녀의 폭력을 부추기도 한다. 자녀가 올바르게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잘못을 교정하여 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9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대한 부모의 관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적 차원에서 가해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교육, 의사소통교육, 공감훈련 등의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은 하루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어 청소년 비행에서 학교가 자치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지만<sup>286)</sup> 학생들의 폭력이나 비행행동은 학교 밖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학교폭력 가해 집단의 구성원들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새로운 폭력조직 가입이나 문제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친구와 교제할수록 문제행동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학교폭력 집단은 잠재적 조직폭력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sup>287)</sup> 현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나 지역순찰제도,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아동안전지킴이집, 명예경찰소년단 운영<sup>288)</sup> 등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을 목격하였을 때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초기에 개입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285) <표 2-19> 참조.

286) 김성근, 앞의 논문, 29면.

287) 김미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집단결속력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0, 34면.

288) 경찰청, 「경찰백서」, 2011, 70~95면.

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법 제9조 제1항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회 환경의 조정은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 전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과 유해환경의 정화가 필요하다.

둘째, 비폭력 지향의 사회적 분위기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 어떤 폭력이든 단호하게 비난하고 비폭력적인 해결과 타협, 양보 등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정립시켜나가야 한다. 더불어 각종 유해업소, 우범지대, 불법·음란서적, 매스미디어에 의한 폭력성이나 선정성들을 규제하고 제거해 해야 할 것이다.<sup>289)</sup> 이러한 규제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의 근절이라는 국민적 인식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단다.

## 第2節 學校暴力 關聯法令의 爭點別 改善方案

### 1. 學校暴力對策自治委員會의 改善方案

앞서 언급한바 법률은 학교단위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회가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사항들을 학교가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의 병행을 전제로,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학교장의 배제는 바람직하지

289) 이춘화·강지명, “청소년 유해업소 정책의 현황과 규제방안”, 「소년보호연구」 제9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6, 153면.

않다. 학교의 책임자는 학교장의 장이어야 함에도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위원을 위촉한 후 위촉받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와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sup>290)</sup> 자치위원회 위원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치위원 위촉범위에 대해 학교장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모집절차 등을 마련하여 그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 위촉범위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정(안)

현행	<p>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 3 생략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 7 생략</p> <p>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⑦ 생략</p>
개정(안)	<p>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공개 모집절차에 의하거나 위촉한다.</p> <p>1 - 3 생략 4. 검사(삭제) 5.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에서 소년사범과 관련된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가진 자 6 - 7 생략</p> <p>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위원장으로 하며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⑦ 생략</p>

## 2. 學校暴力 豫防教育에 관한 改善方案

290)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또한 경찰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경찰관은 내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8조 제1항). 즉 검사와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의 입장에 놓여 있는 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경우, 검사는 의결했던 사안을 기소하거나 종결할 수밖에 없는 모순점이 있다.

먼저 학교폭력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폭력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 폭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생물학적인 문제가 환경적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여 또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오랜 상호 역동관계의 소산임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경우, 친구관계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자기주장이 확실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경우, 단체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경우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실태가 심각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지만 보고를 위한 것일 뿐,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쓰지 않아 별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13.4%가 즉, 초등학생 10명 중 1명 꼴로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59.2%가 불량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폭력에서도 7.6%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이 패싸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91)</sup>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41.9%로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92)</sup> 이는 학교폭력 피해가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 (1) '학교폭력대책법'의 취지와 법률의 내용 교육

'학교폭력대책법'은 이제까지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치의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의 법제도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

291) 문용린 외, 앞의 책, 137~152면.

292) <표 2-10> 참조.

사소송을 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적 해결을 해 보자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생과 관계되거나 직접 참여하는 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대책법 정의(제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제12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제15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조치(제16조, 제17조), 분쟁조정(제18조), 학교폭력 신고의무(제20조) 등의 법률적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 인력 확보

예방교육은 전문 인력(전문상담교사)과 교육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과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체계를 충실하게 구축하기가 어렵고,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곤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면, 학교 밖의 전문가들을 찾아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일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나 교감이 전교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훈시를 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에 관한 지식과 안목을 구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의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학교폭력 정책의 성패 여부가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역할을 해주느냐에 달려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채용조달이 어렵다고 하여 청소년단체·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학교폭력대책법의 입법취지가 퇴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협동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면 앞서 언급한 '전문가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까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sup>293)</sup>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횟수 및 시간'의 확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과목'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법에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1항의 '학생의

293) 조병인, 앞의 논문, 243면.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신설(안)

현행	<p>제43조(교과) 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1. 1. 29, 2003. 1. 29, 2008. 2.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li> <li>2. 중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li> <li>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li> <li>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li> </ol>
신설(안)	<p>제43조(교과) 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1. 1. 29, 2003. 1. 29, 2008. 2.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li> <li>2. 중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li> <li>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li> <li>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li> </ol> <p>②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에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1항에 규정된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다.</p>

### (3) 교사와 학부모 예방교육의 필요성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장시간 생활함으로써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문제를 파악하기 쉽고,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무관심, 방조 등의 대응방식으로 대처하였을 경우, 학생들은 폭력이 암묵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폭력에 대해 동조하고 방관적 태도를 가지게 되어 폭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학교와 교사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한 발생 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급 내 학교폭력 징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대처능력을 교사 스스로가 갖추고 있다면 학교폭력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학교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학교이며,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의 대처능력은 더욱 중요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발 앞서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기술도 교육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94)</sup>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 가족 구성원의 애정과 존경과 신뢰를 토대로 서로가 협조해 가면서 살아가는 혈연공동체이며, 사회생활의 적응력을 배양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건은 근본적으로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학부모 교육이 요구된다. 교육을 통해 그 동안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조장했던 훈육방식<sup>295)</sup>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고, 학교폭력 징후에 대한 이해를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자신의 자녀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편향되게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낙관적 편견<sup>296)</sup>을 제거할 수 있는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며, 따라서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4) 학생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강화

학생범죄예방교육은 다양한 경로로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국 내에 법교육센터를 두고 법교육의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sup>297)</sup>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여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범죄예방과 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

294) 김선아,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 가해자와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 가해·피해중첩집단과 일반적 집단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연구」, 2005, 5~36면 ; 본 연구 <2-19> 참조.

295) 노성호, “중단적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비행화 모델의 검증”, 「사회과학논총」, 2006, 57~83면 ; 최수형, 앞의 논문, 220면.

296) 김봉철 외,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낙관적 편견과 예방 캠페인에 대한 탐색적 고찰”, - 자아 존중감과 학교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4호, 홍보학연구, 2009, 84면.

297) 법무부,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 북」, 2006, 참조.

상으로 하는 교육은 많이 있으나, 순수하게 범죄예방을 위해서 행하는 교육은 없는 실정이며, 사회교육 등 다른 교과목 교육 시 법 준수 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범죄예방교육을 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는 학생들의 폭력에 대해 교사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가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 교육방법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 작성과 교육자료 배부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sup>298)</sup>

범죄예방교육은 사회과학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각된다. 따라서 범죄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전문성 기회를 제공하는 연수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직무연수 등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으로 필요한 것은 수업에 대한 지원이다. 범죄예방교육은 일반과정을 벗어나는 상당히 전문화된 과정이며 변화의 속도 또한 빠르다. 따라서 일선 교사들에게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만들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교사에 따라 다양한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교재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있는 온라인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된 표준 강의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방법으로는 형사모의재판과 같은 체험중심 프로그램과 판례분석 등을 통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며,<sup>299)</sup>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범죄예방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현장성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법원·검찰청·경찰서 등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被害學生의 保護 措置 및 司法體系에서 保護·支援方案

298) 선행연구결과 학교폭력피해 시, 우선적으로 학교 교사(42.2%)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앞의 책, 2010, 75면.

299) 청소년 모의법정은 모의재판의 과정을 체험하며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모의재판과 학교 내 교칙위반, 학교 내의 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의 사건을 잘잘못을 따져 벌칙까지 내리는 청소년법정에 대한 매뉴얼이다. 모의재판과 청소년 법정의 의의, 준비절차, 진행절차, 국내외 자료 등 체계적으로 정리 되어있다. 법무부, 「모의재판법무·청소년 법정」, 2006, 참조.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 제16조 제1항에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자치위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학교의 장이 이를 거절할 경우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위원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로 국한하여 할 수 있으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과 학급교체(제4호)도 긴급조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1)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의 개선방안

##### 1)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 시설의 구체적 명시

일시보호는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시보호 시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법 및 시행령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교폭력대책법에서 의미하는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는 ‘가정’ 내 또는 ‘학교’ 내의 상담과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 범위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표 1-6>에서 2010년도에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결과에 따르면, 심리상담과 일시보호는 각각 10,567건과 635건으로 전체 보호조치 가운데 각각 76.9%와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보호조치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역할규정의 필요성을 보다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0년 7월까지 전문상담교사는 총 883<sup>300)</sup>명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이 매우 부족

300)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0. 7. 22 ;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3/4이 집중되어 있는 중학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중학교 3,130개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 수는 199개교로 배치비율은 6.4%에 불과하다.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현안보고서 제10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1. 5.

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심리상담 및 조언’ 및 ‘일시보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다. 이는 보다 전문화된 상담기법과 조언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상에 가정폭력법 또는 성폭력법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상담 및 보호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 그들의 업무, 국고보조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일시보호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쉼터”(법 제14조)나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시설”(법 제17조 이하)과 같은 기존의 시설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만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앞서 통계에 의하면 2009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11,733명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5,499명이 폭행 피해학생이며 이 가운데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은 386명에 불과 하다.<sup>301)</sup> 폭행으로 인한 피해학생 가운데 치료요양이 필요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전체 폭행 피해학생에 비해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 재정적 지원<sup>302)</sup>에 대한 내용이 학교폭력대책법을 비롯한 모든 관련 법률에서 매우 미비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은 피해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보다

301) <표 1-7> 참조.

302) 학교폭력대책법은 기획위원회의 기본계획에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과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학교폭력대책법 제6조 제2항).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측과 가해자의 인식부족과 치료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에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보호자의 범위와 보호자 책임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소지가 있다.<sup>303)</sup> 또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학교의 장,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sup>304)</sup> 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요건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하며 또한 학교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가해학생의 부모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청에 비용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sup>305)</sup>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그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sup>306)</sup>이 적용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뿐이므로 그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때에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sup>307)</sup> 따라서 학교폭력인 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

303) 원혜옥·김자영,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호자의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학 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304-308면.

304)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에 대한 지급심사 전문 인력이 부재하여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공제회마다 지급심사가 다를 수 있어 전국 통일적인 보상기준과 업무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개정하고 공제업무 집행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개선하되, 장기적으로는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김춘진,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0, 6면.

305) 서울 동작구 A(11)군은 급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성추행에 시달렸지만 가해학생 부모와 합의가 무산되면서 치료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차상위계층인 A군의 부모는 매달 30만~40만원 하는 A군의 정신과 치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무료상담기관을 전전하며 끔찍했던 피해 상황을 되새겨야 했다. 가해학생 학부모는 “내 아이가 잘못된 게 없다”고 발뺌하거나 “맞을 만하니까 맞았지”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이고, “아이를 볼도 삼아 한몫 챙기려 한다”고 가슴에 못 박는 소리까지 하면 피해학부들은 합의를 포기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학교가 중재에 나서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결국엔 학부모들끼리 해결하도록 내맡겨진다. 한국일보, “치료비 알아서 합의해라” 국가는 뒷집, 2012. 1. 7.

306)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방적인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법 제53조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학생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는 상호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1항에 의해 보험급여 제한 대상이 된다. 둘째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그 범위와 기간, 방법 등의 한계가 있다. 즉 본인 부담금과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특히 장기간의 치료를 위한 요양의 경우 피해학생 및 가족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 규명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제16조 제6항에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여 학교폭력에 희생당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신청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가해학생 보호자가 요양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부담할 수 없는 경우
2. 가해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3.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비용부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4. 집단 따돌림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등이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 등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하고, 이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3) 학급교체

학급교체는 일시보호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학급 내에서 지속적인 학교폭력, 특히 집단폭력(왕따) 등에 대한 보호조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양자를 격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이 격리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사관리 차원에서 대체로 같은 학년끼리 모아 놓은 경향이 강한데, 학급을 옮겼다고 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수업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하교 시간 등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급교체로 인한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학급을 교체당한 피해학생이 새

---

307) 김정태, 앞의 논문, 3~14면.

로이 옳긴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 진다.

앞서 <표 1-7>의 2009년도 유형별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에서 학급교체가 25건으로 전체 보호조치의 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4)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이 원하거나 자치위원회에서 문제되는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된 다른 조치들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의 한 예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 신변보호지원요청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신변보호지원,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말한다.<sup>308)</sup>

그러나 제16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모호하여 피해학생에게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학교의 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어, 학교의 장이 자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할 여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이 자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야함을 두어야 한다. 반면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보호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장은 당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즉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보호조치 이외에 자치위원회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사법체계에서 피해학생 보호·지원방안

308) 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2008, 101면.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가해자 중심의 사법체계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사법체계의 이해와 정립이 중요하다. 또한 그 필요성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대책 방안과 피해학생에 대한 예방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피해자보호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적절한 보호를 베풀고자 실시하는 모든 조치,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활동에 포함할 수 있다.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에서도 피해자보호는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보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sup>309)</sup> 피해자지원이란 일반적으로 1950년대 이후 북미 유럽에서 주로 민간 자원봉사 조직에 의해 시작되었던 피난처 제공, 정신적·심리적 부조 재활지원, 기타 법률적 조언과 구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지원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정신적·심리적 부조 내지 법률구조 등의 피해자 지원 방안을 통틀어 '피해자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학교폭력대책법의 적용대상은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sup>310)</sup> 그러나 학교폭력대책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외서 학생간의 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sup>311)</sup>라 생각된다. 이 경우에 학교폭력대책법의 적용대상은 피해학생이므로 피해학생의 보호만 문제될 뿐이다.

학교폭력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피해학생에 대하여 취하게 되는 보호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 이는 학교폭력대책법상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확인되는 전형적인 사례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309)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2005, 14면.

310) 이진국, 앞의 논문, 114면 ; 이주호, 앞의 논문, 22면.

311) 학교폭력의 개념은 연구자 마다 의견 견해가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이 학생이 아닌 자가 학생에 대하여 상해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하는 것까지 학교폭력대책법이 예정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비(非)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보호”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당해 폭력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자치위원회의 개입보다는 학교장의 직권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피해자의 역할과 가해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비(非)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폭력대책법상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비(非)학생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치위원회는 그 본질상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기관이 아닐뿐더러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종 수사행위를 관할권이 부여되는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 2) 피해자 사법체계 정립의 필요성

현행 청소년에 대한 사법체계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형사처벌 보다는 선도와 보호를 목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사법에 대한 처리절차는 소년부에 관할하는 보호절차와 형사법원이 형사절차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었다. 소년법은 가해소년의 환경조성과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으로 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보호하거나 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피해자보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소년법의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통해 엄격한 형벌 보다는 교정과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법의 경우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목적에 역점을 두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왔을 뿐이다. 범죄피해자 특히 범죄피해 소

년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해자 중심으로 한 현행의 사법체계와 달리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사법체계의 이해와 체계의 구체적인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범죄피해에 대해 개별사건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 사법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법체계를 보면, 먼저 피해자는 첫째,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고, 둘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또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방법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셋째, 형사재판에서 진술권을 행사(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하여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넷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소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형사절차의 진행과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다섯째, 배상명령을 신청(소송촉진특례법 제26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고, 여섯째, 국가를 상대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범죄피해를 당한 소년이나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를 피해자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한 예로 미국의 소년피해자 사법체계와 같이 각 형사사법단계에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 피해자의 경우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① 피해자 조사 및 증언이 범죄피해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② 피해자의 지원서비스, ③ 가정 붕괴가 범죄피해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다.

### 3) 범죄피해학생보호법 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및 지원,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

리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져야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내지 제6조).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평온과 신변보호, 범죄피해자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시책을 마련함(제7조 내지 제11조)은 물론이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계획수립(제12조 내지 제13조), 관계기관 협조방안(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제15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16조 내지 23조)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소년사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312)</sup> 하지만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범죄피해학생의 현실적인 지원 또는 법령규정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상에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이 져야할 책무,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피해자 가족 포함) 및 형사절차 참여보장, 신변보호 등이다.

### (3)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민간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피해자지원은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사적 활동에 한정하여 이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sup>313)</sup> 피해자지원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가 아니면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정신적·심리적 부조 내지 법률구조 등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통틀어 ‘피해자지원’이라고 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주로 공적인 피해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피해보상의 범위와 내용은 각 국의 사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공적 부조에 의하여 모든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욕구를 완

312) 2007년 12월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소년사범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장치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이승현, 앞의 논문, 132면.

313) 장규원,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5, 237면.

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민간차원의 피해자 지원 활동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sup>314)</sup>

### 1)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지원 현황

원스톱(One-Stop) 지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정책 중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예방정책은 원스톱(One-Stop)지원을 통해 할 수 있다. 경찰은 충격적인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여러 법원과 경찰관서를 전전하며 2중, 3중의 고통을 받던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One-Stop 지원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sup>315)</sup>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sup>316)</sup>

<표 5-3> One-Stop 지원센터 운영실적 현황(2010년)

피해유형별 방문자(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조서
13,211	10,265	2,012	134	142	658	51,166	24,593	11,838	3,399	3,886	7,450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실적을 <표 5-3>에서 살펴보면 전체 13,211명 중 10,265명이 성폭력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들에게 상담 24,593건, 진료 11,838건, 증거채취 3,399건, 진술녹화 3,886건, 피해조서 7,450건 등 총 51,166건을 지원하는 등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5-3>과 같이 전체 피해자 10,471명 중 학교폭력은 177명으로 전체의 1.7%만 상담을 받았다. 이는 One-Stop 지원센터의 위치가 학생들이 찾아오기가

314) 이형국 외, “범죄피해자학의 이론과 실제”, 한국피해자학회·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2005, 89면 ;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2005, 14면.

315) 법률상담지원은 법률구조공단·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전문변호사들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구조 등이다.

316) 경찰청, 「경찰백서」, 2011, 77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공유의 부족으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One-Stop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피해학생은 One-Stop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학교에서 알게 되면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에 One-Stop지원센터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의 상담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교나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건을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학생들을 외부상담 및 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sup>317)</sup>

반면 One-Stop지원센터에서 피해학생들에게 치료를 시켜주는 것은 특별교부금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예산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 제4조 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시·도 자치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학교안전관련 보험금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One-Stop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 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정의 확보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범죄피해자지원 단체의 육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책정된 비용은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sup>318)</sup>

외국의 피해자지원 단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지원단체인 '피해자보호협회(VC : Victim Support)'의 경우에는 행사 수입, 후원회의 기부, 신탁 및 기금, 로터리클럽의 지원 및 크리스마스카드의 상품

317) 김경태, 앞의 논문, 190면.

318) 오영근, "피해자 보호, 갈 길 멀다", 「인권」 통권36호, 국가인권위원회, 2006, 17면.

판매대금 등을 통하여 재정을 확보하지만, 주된 수입원은 국고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재정수입의 97%에 달한다. 미국의 대표적 지원단체인 '범죄피해자보호협회(NOVA : 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의 경우에는 협회예산의 25% 정도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되며, 그 밖에 교육·훈련 서비스의 위탁료나 기부금으로 조달된다. 일본의 대표적 지원단체인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찬조회원의 회비나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이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경정에 의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본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sup>319)</sup>

학교폭력에 대하여 처벌 중심의 정책보다는 선도 위주의 정책마련을 위한 각 행정기관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 증액 등도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로 볼 때 개인적인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sup>320)</sup> 우리나라에서도 복권수익이나 벌금액의 일부를 피해자지원금 명목으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벌금은 직·간접으로 피해자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국가의 큰 수입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의 “희생으로 획득한”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321)</sup>

#### 나. 배움터 지킴이 제도 활성화

스쿨폴리스(School Police)란 퇴직경찰과 퇴직교사가 2인 1조가 되어 교내순찰과 학생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5년에 부산지역 7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 배움터 지킴이다.

배움터 지킴이는 교내 화장실이나 옥상 등 후미진 곳을 반복 순찰하고, 학생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적발할 경

319) 오영근·이천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113~118면.

320) 윤상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263면.

321) 최영승·윤동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방안”, 2006년 법무부 용역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06, 141~142면.

우, 경미한 폭력은 지도교사에게, 중대한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는 활동이다.<sup>322)</sup> 과거의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퇴직경찰은 경우회, 퇴직교사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시·도교육청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을 하였다.<sup>323)</sup> 하지만 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sup>324)</sup> 무엇보다도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선도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학과나 청소년학과, 심리상담학과 전공자이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로 공모신청을 받아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sup>325)</sup> 특히 배움터 지킴이를 재교육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학생의 지원을 위한 사항과 교육내용에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지역 관련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학생들의 안정적 학교생활을 위협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이미 몇몇 기관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 광범위한 과제가 되었다. 각 정부기관들이 학교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저마다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로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이 지역에 따라 그 발생과 유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지역사회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인력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sup>326)</sup> 사회의 여성단체,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이 주도해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열악한 범죄피해자를 예방하고 신속한 범죄피해구

322) 부산지방경찰청 스킨폴리스 기획팀 스킨폴리스 활동메뉴얼, 부산지방경찰청, 2007, 136면.

323) 장석현,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2집, 치안연구소, 2006, 421면.

324) 학교폭력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등이다. 이덕난 외, “독일의 학교경찰제 도입 사례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9. 10.

325)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배움터 지킴이가 있어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학교 안전 관련 문제들과 이슈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삼열, 외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3호, 2008, 118면.

326) 박효정 외, 앞의 논문, 2006-08, 241~242면.



조가 가능하도록 자치단체, 경찰,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간에 유기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sup>327)</sup>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피해자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 각국<sup>328)</sup>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사회의 잠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sup>329)</sup>

현재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과 피해자지원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드러난 결과를 잘라내려는 노력에만 집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방안과 함께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일그러진 자녀교육 열풍과 학력 중심의 학교 교육 상황,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교육정책과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형태를 바로잡아야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사법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지원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加害學生에 대한 善導·懲戒措置의 改善方案

##### (1) 가해학생에 선도·교육조치의 성격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의 교육적 효과와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높이

327) 박상열·김상돈, 「범죄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6, 268면 ; 홍영오,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연구”, 연구총서 08-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31면.

328)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는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LAPD’와 별개의 경찰관로서 335명의 현직 경찰관이 배속된 ‘Los Angeles School Police Department: LASPD’라는 이름의 학교전담경찰서가 설치되어 905,020명에 달하는 LA시의 학생들과 1,030개에 달하는 학교, 센터, 행정사무소 등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24시간 근무제로 지원하고 있다 ; 캐나다의 오타와 경찰국(Ottawa Police Service)과 캘거리경찰국(Calgary Police Service) 같은 곳에서 SRO(School Resource Police)를 연결고리로 하는 학교·경찰연력협 의체가 구축되어 있다 ; 부산경찰청, 「학생 안전지킴이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Service)」, 2005, 192~209면.

329)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11, 316~337면 ; 조병인 외,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71~331면.

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사고재발방지 조치 그리고 징벌적 조치로 나누어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면사과, 봉사활동, 특별교육 내지 심리치료는 교육적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의 금지와 학급교체 또는 전학 등은 사고재발방지 조치로, 출석정지나 퇴학은 징벌 조치로 구분하여 그 성격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 중 교육적 조치가 가장 중요시되며, 다른 조치와 의무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교육은 매우 중요한 조치임에 틀림없는 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역량에 맡기지 말고 지역위원회나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현행 이 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제17조 제1항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고재발 방지조치도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학급교체를 하고 어떤 경우에 전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급교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전학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표준지침이나 메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징벌조치의 경우 퇴학까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 학교생활 부적응 가해학생에 대한 대안학교 활용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의 적지 않은 수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로서 퇴학처분이 불가능하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해학생을 대안학교에 전학시켜 대안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대안학교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고안된 특별학교를 말한다. 대안학교에는 특성화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로서 대안학교, 공립시설 내 대안학교, 민간단체로서의 대안학교,<sup>330)</sup> 가정 학교 등이 있다.<sup>331)</sup>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대안학교의 한 유형으로서 특성화중·고등학교를 인정하고 있다.<sup>332)</sup>

330)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331) 대안학교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성기,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제 31권 제1호, 한국교육학회, 2004, 121~125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대안학교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자로 나타날 경우에는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상의 '전학'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sup>333)</sup>

그러나 대안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학은 오히려 학교에 책임회피에 부담을 가지지만,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 입장에서는 그 가해학생을 대안학교에 전학시킴으로써 책임을 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학교폭력대책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의 최장기간 규정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조치의 수”는 9가지로 열거 되어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의 교육적 효과와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징계수단은 학교폭력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가장 경미한 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서면사과만으로 족할 수 있으며, 중대한 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출석정지(제6호)<sup>334)</sup>나 퇴학처분(제9호) 조치까지 가능하다. 결국 학교폭력대책법상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수단은 징계법에서 볼 수 있는 특정적인 수단들로 열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은 9개의 선도·징계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선도·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봉사

332) 초·중교육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91조 제1항에서 지정·고시할 수 있다.

33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89조 제1항에 일반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전학할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334) 과거에 있던 '10일 이내 출석정지'의 기간 제한이 없어졌다. 하지만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기간 학교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로 이해되지만, 출석정지기간 제한에 대해 본 연구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물론 출석정지조치가 비교적 중대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부과될 징계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출석정지기간을 제한한 점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출석정지조치가 당해 가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즉, 연간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기간이 사라져 수업일수가 모자랄 경우 유급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출석정지조치의 상한은 명시되어야 한다.

(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6호) 등 적어도 최장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선도·징계 조치들이 최장기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의 발현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개별 학교폭력사건과 가담자의 불법성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의 기준을 법률에 일의적으로 확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인권의 최적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최장기간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sup>33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1항의 선도·징계조치의 최장기간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개정(안)

현행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생략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 ⑫ 생략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생략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7일 이내의 학교에서의 봉사 4. 10일 이내의 사회봉사 5. 15일 이내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20일 이내의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 ⑫ 생략

####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불이행에 따른 방안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가해행위에 대한 선도·징

335) 부산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표준매뉴얼, 2008, 93~94면.

계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를 가해학생이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해학생이 자신에게 부과된 선도·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실효적으로 담보할 조치가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부과한 조치에 대해 고의로 불응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구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형사사법의 처벌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선도·징계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데 있었다. 이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법률에서는 가해학생이 징계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도록 개정되었다.<sup>336)</sup> 하지만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저 연령화로 초·중학생들에 의하여 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초·중등과정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 수 없어 개정 법률로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 진다. 때문에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하게 되고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중학교 가해학생에게 ‘퇴학’을 명할 수도 없고, 징계조치를 가했으나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자신이나 그 보호자에 대하여 부과한 조치에 대해 고의로 불응하거나 소홀히 한 사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의 범위 속(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제외)에서 가중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체계적이라고 생각된다.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8항에 의해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법 자체에 제재규정 즉, 보호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 또는 소년법 제71조(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에 제재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영국은 학생이 입학할 때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연대서약을 받아 학생지도에서 1차적으로 학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양육명령에 따르지 않을

336)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17조 제4항에서는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조치를 취하였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피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하여 징계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우에 담당책임자가 부모를 가능한 빨리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결과에 따라 부모가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최고 1,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sup>337)</sup> 이에 대하여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학을 거부할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을 개정하여 정학처분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338)</sup>

또한 제17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전학보다 중한 조치인 퇴학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가해학생은 시·도 대안학교에 이들을 위탁하여 30일간의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표 5-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설(안)

현행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해당조항 없음
신설(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⑬ 의무교육자 중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가해학생은 시·도 대안학교에서 이들 위탁하여 30일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5) 학교생활지도교사에 준사법권을 부여방안

1) 준사법권(특별사법경찰권) 법적 근거

최근 학교폭력은 조직폭력세력과 연계하는 등 단순히 학생의 문제로만 보기에 그 양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를 폭행하거나 동료학생을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sup>339)</sup>하지만 이에 대한 학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

337) 김지선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43면 ; 최인섭·이순례,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09-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44면 ; 소년법 제71조(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보호자는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 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경래, “소년비행과 부모의 책임”,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1~11면.

338) 조병인 외, 앞의 논문, 103면.

서 학교생활지도교사에게 준사법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학교 내·외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과 교원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는 견해<sup>340)</sup>와 교사나 학생이 수업하는 교실에서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용인할 수 없고 수업권 오로지 교사의 의지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지도교사에게 준사법권 부여보다는 먼저 학교폭력을 조장하거나 교권을 저해하는 요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sup>341)</sup>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호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그 소속관서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된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4호에 따라서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 2) 준사법권(특별사법경찰관)의 필요성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학교 외부에서 많이 발생한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라 중학생 이상 학생들이 유해업소 출입 이용률을 보면 노래방(84.7%), PC방 (83.3%), 전자오락실 (51.6%), 만화방 (32.1%), 카페 (40%), 호프·소주방 (14.4%), 나이트클럽 (1.9%) 등 많은 학생들이 유해업소에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42)</sup> 따라서 학교폭력의 유해환경 주변에서 학생 간에 또는 비(非)학생 그리고 성인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사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 외부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339) 조선일보, ‘교사들, 일진 타이르다 맞고 흥기로 위협강해’, 2012. 5. 1, 52면.

340)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쥐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실추된 교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예방과 효과적인 학생생활 지도강화를 위해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학교폭력 막게 교사에게 준사법권(특별사법경찰권) 달라”, 2012. 4. 24, 9면.

341) 교육신보, 사설 → 교권의 준사법권, 교권에 흠집 낸다. 2012. 2. 24.

342)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1, 146면.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겠다.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생활지도교사에게 준사법권(특별사법경찰관)의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검사(수사지휘권자)와 사법경찰관(수사보조자)에 집중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사법경찰관도 한정된 업무에 운영되고 있고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두고 있다.<sup>343)</sup> 이는 전문적 지식을 행사하는 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이 출입할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여성가족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그 소속 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생활지도교사에 대해 준사법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① 수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바 생활지도교사에게 사건을 수사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능력, ② 생활지도교사들이 특별사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나 상급자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sup>344)</sup>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청소년 폭력사건의 사전적 위험요소로서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여성가족부나 청소년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학교생활지도교사가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생활지도교사의 임무에는 첫째,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학생들을 제지하고, 이를 전문상담교사에게 통보하여 상담지도를 받게 하거나 지역경찰에게 인계 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것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경찰에 통보하는 자료는 관련 사건처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343) 일반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 일반을 그 본연의 업무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수사권한에 제한이 없다. 이에 반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를 그 본연의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행정관서의 직원에게 일정한 사회적 또는 지역적 제한을 붙여 특수분야의 수사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상호 구별된다. 그러나 모든 사법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간에 차이가 있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조 및 제5조).

344) 조병인 외, 앞의 논문, 99면.



둘째, 생활지도교사는 전문상담교사, 담당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교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셋째, 생활지도교사는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향상된 방향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생활지도교사에게 준사법권(특별사법경찰관) 부여한다면 경찰의 학교 내 출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교사와 학생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측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지도교사들에게 학교 내·외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지도활동을 맡기고,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및 현실적 문제점을 강구하여 준사법권 부여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6)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다이버전(Diversion)의 활용방안

### 1) 소년다이버전(Diversion)의 개념

범죄인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형집행이 낙인효과를 가져와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자아의식에 영향을 미쳐 자기실현적 효과를 가져와 재범을 부추긴다는 사실에 다이버전(Diversion)<sup>345)</sup>을 모색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다이버전(Diversion)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피하고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형사실무에 있어서 법원의 업무 부담과 비용을 덜고 사건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다른 목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행청소년에 대해 몇 가지 형태의 다이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미한 비행소년을 경찰(선도·훈방조치)<sup>346)</sup>·검찰(기소유예제도)<sup>347)</sup>·법원(보

345) "Diversion"은 절차회피, 분리, 전환, 다이버전 등 약간씩 다른 용어로 번역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형사사법 절차로부터 분리하여 비행식적 처분이나 수단을 통하여 범죄자들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상암·신성원,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보」 제11호, 2006, 182면.

346) 경찰이 범죄소년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처럼 소년법 및 관계법령은 경찰에게 모든 소년사건을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사무에서는

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sup>348)</sup>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이버전 관련 규정은 대부분 소년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최근 개정된 소년법에 검사의 선도조건 기소유예가 명문화되었을 뿐이다.<sup>349)</sup> 소년법상 觸法少年이나 虞犯少年은 법원에, 犯罪少年은 검찰에 전건송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미범이나 초범소년들은 구분 없이 검찰에 입건되었다가 상당수의 소년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8.1%, 전체 기소유예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1%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sup>350)</sup>, 많은 초범·경미범인 소년들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없이 원래 있던 환경으로 되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존 사법절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선도활동으로서 교정효과를 높이며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sup>351)</sup>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 다이버전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현상으로서 범죄현상은 복잡한 원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가 소년범죄현상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

---

비행소년을 법원이나 검찰에 전건송치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훈방조치를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선별적으로 송치하고 있다. 여기서 경찰훈방이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순찰지구대장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엄중훈계 후 즉시 방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경찰훈방에 관하여 현행법상 그 법적 근거를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부정설은 소년법(제42조 제2항, 제48조)상 전건송치주의를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훈방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소년풍기사범 훈방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소년경찰 직무규칙(제19조, 제21조, 제33조)이나 범죄수사규칙(제202조)은 상위법인 소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긍정설은 그 법적 근거로서 즉결심판절차법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서장에게 즉, 결심판청구권이라는 일종의 기소권한이 인정되고(제3조 제1항), 즉결심판절차법 제19조의 형사소송법 준용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제량 규정(제247조 제1항)이 준용되어 경찰서장의 훈방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04, 35~37면.

347) 형사제재수단의 하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들 수 있다. 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르면 대상소년은 검사가 소년의 재범 가능성, 죄질, 범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에 근거를 둔 보호관찰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소년의 선도를 담당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범죄소년에 대한 것만 국한해서 본다면 양자 모두 범죄소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여 범죄소년을 공식적 형사절차로부터 이탈시키면서 선도보호방안도 능동적으로 강구함으로써 그 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제도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금형, 앞의 논문, 68면 ; 이순례, “소년전환처우(Juvenile Diversion)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화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소년법연구」 창간호, 한국소년법학회, 2002, 45면.

348) 경찰의 훈방과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실무상 활용되고 있으나 법원단계에서는 심리결정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이버전은 없다.

349)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 14면.

35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1, 222~227면 ; 반면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소년의 직업별 현황에서 학생은 86.9%에서 90.7%까지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다.

351) 김은경 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안과 과제 (I): 제Ⅲ부 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31면.

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적은 경미범죄나 초범소년 등 위험성이 적은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특징에 따른 개선가능성이 높을수록 다이버전의 효과가 높기 때문<sup>352)</sup>에 적어도 초범·경미범에 대한 다이버전 효과는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자들<sup>353)</sup>이 조기에 개입하여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이버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 2) 초범·경미범에 대한 다이버전의 검토

초범·경미범에 대한 다이버전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연구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경찰단계에서 다이버전으로는 1987년 ‘제6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청소년 부문 계획 수립 시에 제안되었던 ‘사랑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sup>354)</sup> 이는 레크레이션, 인간관계개선훈련, 사회 심리극 등 비행소년 인성요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의 교실은 소년경찰직무요강과 경찰의 즉결 심판 청구권에 기초하여 운영되는데 소년경찰직무요강에 의하면 깁연, 음주, 흥행장출입, 남녀혼숙, 싸움, 흥기소지, 환각물질소지 등은 불량행위이며 이에 대해서 경찰 재량으로 즉심이나 훈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을 즉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검찰단계의 다이버전으로는 2007년 소년법개정에서 도입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있다. 이는 기소유예만으로 부족하고 선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소년에 대해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에 선도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르면 대상소년은 검사가 소년의 재범 가능성, 죄질, 범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sup>355)</sup>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찰단계에서 경미한 소년범죄에 한하여 현장에서 다

352) 김재봉 외, “소년법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1집, 2005, 326면.

353) 원혜옥, “소년법 다이버전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호」 통권 17호, 법무부, 2006, 11면 ; 손창현,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09, 107면 ; 이금형, 앞의 논문, 143면.

354) 경찰청, 「경찰백서」, 2011, 119면.

355) 선도유예 기간 동안 대상소년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받으면서 이동시 범죄예방위원회에 신고하고, 그와 자주 접촉하며, 학업이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사죄를 하며, 범죄예방위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순례, 앞의 논문, 295~296면.

이버전의 실시로 이어지고 있다.<sup>356)</sup> 그러나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의 필요성은 명확한 법적근거 유무는 현실을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 하겠다.<sup>357)</sup> 경찰단계에서 명확한 다이버전이 없을 경우, 형사절차가 장기화 되고, 소년법상 초범·경미범도 전건 송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탈행위를 한 소년들이 자신들이 행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및 책임감에 대한 인식 없이, 복잡한 형사절차만을 경험한 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온갖 지장을 초래하며, 그로인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풍기사범은 虞犯少年이고 따라서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게 되는데 이는 법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한건데 공정한 심판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점<sup>358)</sup>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의 선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랑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전체 불기소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선도가 이루어지는 비중이 적고, 대상선정 또한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대상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선도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의 문제 또는 감독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선도 받은 사실이 오히려 낙인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다이버전 효과에는 큰 영향력이 없다는 문제와 대상소년이 지켜야할 준수사항도 소년이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59)</sup> 이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대상소년의 재범률이 2006년 6.4%, 2010년 7.9%<sup>360)</sup>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사실이 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보통 청소년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하여 흉악한 범죄로 발전하고,<sup>361)</sup> 처벌이 부적절할 경우 대상소년은 자신이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 없이 책임질 기회도 주어지지 않게 된다.<sup>362)</sup>

356) 김용우·최재천, 앞의 책, 640면.

357) 박윤기, 앞의 논문, 172면.

358) 원혜욱, 앞의 논문, 14면.

359) 이순례, 앞의 논문, 298~299면.

36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1, 125면.

361) 원혜욱, 앞의 논문, 8면.

362) 김은경, 앞의 논문, 183면.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363)</sup> 회복적 사법이라 함은 특정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범죄의 결과 및 그 범죄가 장래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의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즉 가해자, 피해자,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의 장에 참여함을 통하여 사회 불균형의 실상과 원인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364)</sup> 회복적 사법의 효과성이 가장 큰 단계는 공식 사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경찰단계로 밝혀지고 있다. 각국의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도 경찰단계 다이버전과 결합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소년법 중 초범·경미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소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입해서 비행성을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처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회복적 사법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과 적극적 선도보호를 위한 새로운 소년사법의 경향에 걸 맞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한 조기 다이버전(선도 조건부 훈방)을 실시한다면 범행 초기단계에 부정적 낙인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sup>365)</sup>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요인, 피해자와의 갈등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교 당국과 교사의 관점에서 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학교폭력대책법상에 조정이나 회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사회의 전담기구가 필요하고 조정전문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회복적 실천을 위하여 적절한 사건기준 및 기관 간에 실무지침, 가이드라인 설정과 재원마련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363)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논문들중 보면,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를 소개하거나 그 법제화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8, 5~36면 ; 이진국,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 359~384면 ; 허경미,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 교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6호 제9호, 2007, 95~118면.

364) Marshall, The Evolu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Vol. 4/4, 1996, p. 27.

365)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74호, 2008, 130면.

## 5. 學校暴力對策法과 刑法 및 少年法の 定立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의 폭력행위가 발생한 사례에서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가 적용되어 선도·징계조치를 받게 되지만, 학교폭력이 동시에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법과 형법 및 소년법은 그 본질상 징계법과 형법으로 구분된다.<sup>366)</sup> 하지만 학교폭력사건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사법기관은 이에 대하여 수사를 할 의무가 있다. 또는 학교폭력사건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형법 제122조).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적 성격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대책법과 형법 및 소년법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대책법과 형법 및 소년법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접근방식으로는 첫째,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조치와 형법이나 소년법상의 일정한 제재조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중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학생이나 소년은 자신의 사회화하는 과정 동안에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다양한 긴장과 갈등을 겪게 되고 이는 거의 예외 없이 사회가 설정해둔 규범적 한계를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상적이다. 학생이나 소년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범죄 내지 비행은 성장과정에서의 결함을 가진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367)</sup>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조치와 형법 및 소년법상의 법 효과가 상호 양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하여 선도·징계조치가 행해진 이후에 소년법 절차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교육적 효과를 참작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66) 징계법과 형법의 구별에 관하여 ① 일반적으로 형법은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해악부과를 본질로 함에 반해 징계법에서는 오로지 징계수단과 보호조치만 문제된다는 점, ② 징계법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도 “행위자 중심적”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 ③ 징계조치는 행위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반해 형벌은 일반국민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진국, 앞의 논문, 105면에서 재인용.

367) 청소년들은 성격발달, 학업 발달, 생애발달, 등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정서, 인지, 대인관계, 과제수행 등의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신체적, 기질적 환경적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성곤, 앞의 논문, 10면.

둘째, 불법적인 양적 관점과 형법의 외재적 보충성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형법의 외재적 보충성원칙은 특정한 규범위반행위에 대한 사적,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체계 중에서 기본 권제한의 강도가 가장적인 조치인 사적, 비공식적 해결방식이 국가적 개입에 우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형법의 내재적 보충성 원칙이란 형법체계 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는 행위자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제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sup>368)</sup> 순수한 징계법과 형법을 구분할 분명한 질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도 형법의 개입이 불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법의 양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조직이나 그룹 내에서 행한 불법행위가 형사처벌이 반드시 요구될 정도로 피해를 주었는지 또 내부적 징계라면 경미한 수단으로만 반드시 충분한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상해를 저지른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법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상실시켰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반면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안전에 대한 신뢰와 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법상 선도·징계조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사회통제체계에서 최후로 개입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외재적 보충성원칙을 고려해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선도·징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폭력이 법 신뢰와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기존의 선도·징계 및 분쟁조정 결과에 참작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통제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368) Marianne Löschnig-Gspandl, Die Wiedergutmachung im Österreichischen Strafrecht, Auf dem Weg zu einem neuen Kriminalrecht ?, Verlag Österreich · Wien, 1996, pp, 22~25. 조병인 외, 앞의 논문, 주) 87에서 재인용.

## 第6章 結 論

앞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먼저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하였다. 학교폭력 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다양한 정책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발생률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해자 유형은 더욱 더 교묘해지고 集團化·凶暴化·年少化되고 있다. 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 그 연령이 낮아지고,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조직은 단위학교를 넘어 지역적·전국적으로 연계를 이루고 있어 조직 간에 힘의 대결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생 간에 싸움이 아니라 가정·학교 및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학교폭력대책 근절 의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그 동안 총 10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제정 당시의 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법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대책의 정책방향은 ① 가해행동을 유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② 학교폭력의 발생실태, 원인,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교육정책과 형사사법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



으로 연구하여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절차와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차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통일된 평가방안과 실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정 및 보완사항들을 추진과정에서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해마다 “학교폭력 백서”를 발간하여 한 해 동안 학교폭력 대책들의 내용과 성과, 학교폭력발생 및 처리현황, 학교폭력에 대한 최신 동향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④ 학교폭력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해행위 및 피해행위가 복합적인 경우 또는 두 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연계된 사안의 분쟁조정, 실태조사 및 확인 점거, 예방 활동 전개, 네트워크 관리, 상담, 조언,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 등은 학교보다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오늘날 변화하는 가족의 구성과 기능, 학교의 기능 그리고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낙후된 학교의 시설환경과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의 비교육적·비인격적인 현상 내용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된 학교의 조성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높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영역에서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와 소년법의 관계는 그 법적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의 체계를 분석해보면, 학교폭력대책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의 규정내용은 징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의 성격과 무관한 것이다. 만약, 학교폭력 범죄에 대하여 소년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법만 적용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이 형사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학내·외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조치를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추후에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 학생간의 폭력만을 다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또는 교사에 대한 폭력”도 학교폭력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대책법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자치위원회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자치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학교장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마련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학교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이 학교폭력사안의 처리를 제3자적 입장에서 방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계적으로 사안처리를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원천적으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의 유형이 무엇이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협동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전문가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횟수 및 시간'의 확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과목'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법에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항의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명시하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 피해학생 보호조치 개선방안이다. ① 가정폭력피해자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과 비교해 볼 때,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에 상담 및 보호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 그들의 업무, 국고보조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현행 학교폭력대책법 제16조 제6항은 '보호자'의 범위와 '보호자책임'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제16조 제6항에 규정된 세부사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③ 동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보호조치 이외에 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요청 등 법률지원, 등·학교 길에서의 동반 등을 말한다. ④ 피해학생보호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보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 소년이나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체계에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체계로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범죄피해에 대해 개별사건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 사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를 당한 소년이나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를 피해자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미국의 소년피해자 사법체계와 같이 각 형사사법단계에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여섯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조치의 개선방안이다. 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의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임을 감안한다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해학생을 대안학교에 전학시켜서 대안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하여 대안학교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자로 나타날 경우에는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동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②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교육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급교체 및 전학을 거부할 경우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의 범위 내에서 가중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학을 거부할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을 개정하여 정학처분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가해학생은 시·도 대안학교에 이들을 위탁하여 30일간의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학교 외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여성가족부나 청소년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해 주고 있지만, 학교생활지도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여 청소년유해업

소를 단속 및 가해학생에 대한 관리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④ 가해학생의 낙인효과를 줄이고 검사와 소년법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사건의 졸속처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사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학생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비사법적·비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조치 즉,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경찰의 다이버전과 결합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분쟁조정에 화해권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여 당사자가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사자 일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에게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를 권유해 볼 수 있는 화해권고 기능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컨대, 학교폭력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건발생 후의 개입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가해학생에 대해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의 발생 시 조기에 개입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의 일부 조항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 곽금주, 「법심리학의 제 문제(아동·청소년·사법판단)」, 학지사, 2003.
- 김상호, 「형법각론」, 세종출판사, 2004.
-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 김용우 외, 「형사정책」, 박영사, 2006.
-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 문용린 외, 「학교폭력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6.
- 박상열·김상돈, 「범죄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6.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2003.
- 이운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4.
-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보정판 박영사, 2007.
-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0.
- 임 용, 「형법각론」, 법문사, 2005.
- 정신교, 「범죄학 개론」, 형설출판사, 2007.
- 정웅석·백형민,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8.
-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11.

<논문>

- 강경래, “소년비행과 부모의 책임”,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 곽금주, “또래간 사회적 관계와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2000.
- 곽금주, 왕따(Wang-ta: Korean bullying) 현상에 관하여”, 폭력분과위원회정책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 곽영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
- 권오명,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8집, 한국법학회, 2006.
- 금명자 외,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금명자·오혜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김경태,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 김미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집단결속력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0.
- 김명자,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2002.
- 김범수,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9.
- 김봉철 외,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낙관적 편견과 예방 캠페인에 대한 탐색적 고찰”, - 자아 존중감과 학교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 「언론과학연구」 제9권 4호, 홍보학연구, 2009.
- 김선아,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6(2), 2005.
- 김선아,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 가해자와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중첩집단과 일반적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05.
- 김성곤, “비행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환경·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4.
- 김성기,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제31권 제1호, 한국교육학회, 2004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8.
- 김성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회복적 패러다임의 실천방안”, 「피해자학연구」 제

- 17권 제1호, 2008.
- 김은경 · 이호중,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I),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21-02, 연구총서 06-36, 2006.
- 김은경 외,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1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과 분석 -, 연구총서 07-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김은경 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안과 과제 (I): 제Ⅲ부 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74호, 2008.
- 김용수, “학교폭력분쟁조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활성화에 대한 연구”, 「변호사」 제39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9.
- 김정옥 · 박경규,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연구” - 일반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중심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호, 2002.
- 김정옥 ·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99-1 연구보고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1999.
- 김종기, “학교폭력의 실태연구와 대처방안”, 제2회 청소년폭력예방직무연수교육,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9.
- 김종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의자료집, 2005.
- 김준호 · 김선애, “학교주변 폭력 실태와 유형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1991.
- 김준호,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 김준호 · 박정선 · 김은경,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김준호, 「2002년 학교폭력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
- 김지선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김재봉 외,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1집, 2005.
- 김재엽 · 이순호, “청소년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1, 99~112면.
- 김춘진,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 국 교직원노동조합, 2010.
- 김현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대한 검토의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발연구 토론회 자료집, 2008.
- 노성호, “중단적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비행화 모델의 검증”, 「사회과학논총」, 2006.
- 노성호,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범죄방지포럼」 제1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04.
- 노호래·이신옥,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부부폭력 목격 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내적통제감 및 학교생활인식을 중심으로 -, 「학교사회사업」 제6호, 2003.
- 도기봉,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7.
- 문용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실태조사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8.
- 박경숙 외,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 박병식, “청소년 폭력 예방법·제도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 박병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교육연구」 제25권 제5호(통권 430호), 한국교육생산연구소 교육연구사, 2005.
- 박상도,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1.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 박효정 외, “학교폭력실태의 이해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5-17, 한국교육개발원, 2005.
- 박효정·정미경,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효과 평가 연구”, 「한국교육」 제33 제3호, 한국교육개발원, 2006.
- 박효정 외,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 RR 2006-8-4, 한국교육개발원, 2006.
- 박효정 외,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RR 2006-08, 한국교육개발원, 2006.
- 방재우, “학교폭력 추방과 근절에 교원이 앞장서자”,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100인 토론회, 학교폭력 대책국민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서울교육문화회관, 2005.
- 손창현,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09.
- 원혜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7



- 호, 한국소년보호학회, 2004.
- 원혜옥, “학교폭력대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년보호학회」 제7회, 소년보호학술대회, 학교폭력예방특별법의 교육·사회학적 조명, 2004.
- 원혜옥, “소년법 다이버전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호」 통권 17호, 법무부, 2006.
- 원혜옥·김자영,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호자의 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 오경식,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
- 오영근, “피해자 보호, 갈 길 멀다”, 「인권」 통권36호, 국가인권위원회, 2006.
- 오영근·이천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오창순·송미숙,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004.
- 유성경 외, “청소년비행예방 및 개입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상담연구」 78,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 윤동호, “소년범죄와 그 처리의 동향과 분석”, 「경성법학」 제16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윤상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윤종우, “각국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 제5호, 2005.
- 이금형,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 이덕난 외, “독일의 학교경찰제 도입 사례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현안보고서 제10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이명우 외, “경찰다이버전 체제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모형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이문자,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 이삼열 외,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3

- 호, 2008.
- 이상균, “가출·비행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 전략의 모색”, 「사회복지리뷰 제」 10집, 2005.
- 이상윤, “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공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 이석형,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6.
- 이성석,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연구총서」 07-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이순래,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2-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이순래, “소년전환처우(Juvenile Diversion)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화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소년법연구」 창간호, 한국소년법학회, 2002.
- 이승현, “한국 소년사법에서 피해자 배려의 문제” - 화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 , 「소년보호연구」 제13호, 2009.
- 이애령,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3.
- 이은정, “학교체계요인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 이장현·우룡, “학교폭력의 최근동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이진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제1권 제1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 이진국,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
- 이주호, “성비행을 통해 본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좋은 교육연구회, 2005.
-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형사정책연구원, 2004.
- 이형국 외, “범죄피해자학의 이론과 실제”, 한국피해자학회·한국범죄예방정책연구원, 2005.
-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1998.
- 이춘재·곽금주,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

- 회지」, 2000.
- 이춘화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 이춘화·강지명, “청소년 유해업소 정책의 현황과 규제방안”, 「소년보호연구」 제9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6.
- 이춘화 외,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장규원,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5.
-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특성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1호, 2004.
- 장맹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학교관련 법적 문제의 현안과 교육법 발전 논의」, 대한교육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8.
- 장석현,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2집, 치안연구소, 2006.
-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1호, 한국교정학회, 2008.
- 정세영, “누가 이들을 “어리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 대책국민협의회·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 주최, 학교폭력 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적 과제, 2005.
- 정한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09.
- 조병인 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6-14-04, 한국교육개발원, 2006.
- 조용한, “한국 청소년 폭력집단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8.
- 조홍식,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역할”, 학교폭력 대책국민협의회(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04.
- 지승희 외, 학교폭력,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최병각, “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의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2007.
- 최수형, “비행경력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적 훈육 효과: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최영승·윤동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성화방안”, 2006년 법무부 용역연구, 한국피해자 학회, 2006.
- 최인섭·이순례,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09-11,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9.
- 한상암·신성원,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보」 제11호, 2006.
- 한인달, “한국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2008.
- 허경미,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예방특별법의 교육·사회적 조망」 제7회 소년보호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소년보호학회, 2005.
- 허경미,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 교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6호 제9호, 2007.
- 홍영호, “2008년 청소년대상 범죄피해조사연구”, 「연구총서」 08-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황지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연구총서」 05-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기간행물>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2005.
- 경향신문, 2012.
- 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8.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해설집」, 2012.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 2011.
-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0.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신고전화,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 보도자료. 2012.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간발표” 보도자료, 2012.
- 교육부, “학교폭력근절 및 대책”,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자료, 1995.
- 교육신보, 사설 → 교권의 준사법권, 교권에 흡집 낸다. 2012. 2. 24.

교육인적자원부,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및 적용학교 담당자 직무연수”,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 2006.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폭력실태조사, 2001.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1

법무부,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 북」, 2006.

법무부, 「모의재판법무·청소년 법정」, 2006.

부산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표준매뉴얼, 2008.

부산경찰청, 「학생 안전지킴이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Service)」, 2005.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0.

서울신문, “학교폭력 막게 교사에 준사법권(특별사법경찰권) 달라”, 2012.

여성가족부,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2011.

연합뉴스, “밀양 성폭행 사건”, 2004.

은평뉴타운 중학생 처벌없는 집단폭행 및 성폭력사건 분노한 주민성명운동”, sbs. co. kr.  
 보도자료, 2011.

제민일보. 2012.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2008 교내 학교폭력 없는 가정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초·중·고학생부장 연찬회, 2008.

조선일보, 2011.

조선일보, 201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10.

한겨레, 잡자는 “학교폭력예방법’만 시행해도 해법 실마리”, 2011.

한겨레, “담임·가해학생 부모 “당할만하니 당했겠지” 눈·귀 닫아, 2012.

한국일보, 이름값 못하는 ‘학교폭력자치위’, 한국일보, 2010.

한국일보, “치료비 알아서 합의해라” 국가는 뒷집, 20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한국문화진흥원, 2008.  
<http://media.daum.net>. 2010.

[국외문헌]

- Archer, J & K. Browne,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1989.
- Aster, R. A., W. J. Behre, K.A. Fravill, & J.M. Wallace,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1): 1977.
- Baldry, A. C., & Farrington, D. P. Bullies and delinquents: Personal characteristic and parental style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 2000.
- Berkowitz, L.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Psychological Review*, 1974.
- Bernstein, J. Y., & Watson, M. W.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1997.
- Blackburn, Ronald,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John Wiley & Sons, 1993.
- Boulton, M. J., & Smith, P. K.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94.
- Craig, W. M., Pepler, D., & Atlas, R. Observations of bullying in the playground and in the classroo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000.
- Comstock, G. C., & Strasburger, V. C. media violence: Q & A. *Adolescent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 1993.
- Dopke, C. A., B. W. Lundahl, E. Dunsterville, & M. C. Lovejoy. "Interpretations of child abuse compliance in individuals at high-and low-risk for chil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003.
- Eron, L. D., Huesmann, L. R., & Zelli, A. The role of parental variables in the learning of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1991.
- Glover, D. Gough, G., & Johnson, M. Bulling in 25 Secondary Schools: Incidence, Impact and Intervention. *Educational Research*, 42(2), 2000.
- Hampton, R. L., & Yung, B. R. Violence in communities of color: Where we were,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be. In R. L. Hampton, P. Jenkins, & T. P. Gullotta(Eds). *Preventing violence in Americ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6.

- Hirschi, T.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Kirby, L. D., & Fraster, M. W.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t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SW Press, 1997.
- Loeber, R.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990.
- Lorenz, K., *On Aggression*, London: Methuen, 1966.
- Ludwig F. Lowenstein, "Who is the bully?", *Bulletin of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1978.
- Marianne Löschnig-Gspandl, *Die Wiedergutmachung im Österreichischen Strafrecht, Auf dem Weg zu einemneuen Kriminalrecht?*, Verlag Österreich · Wien, 1996.
- Marshall, The Evolu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Vol. 4/4, 1996, p. 27.
- Olweus, Dan, *Aggression in the Schools*, Washington, D. C.: Hemisphere, 1978.
- Olweus, Dan,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do* Cambridge, MA: Blackwwell, 1993.
- Olweus, Da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1994.
- Boyd McCandless, R. & Richard. Coop., *Adolescents*(Holt Rinehart Winston), 1979.
- Rosenberg, M.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1978
- Ross. S. M. Risk of physical abuse to children of spouse abusing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0(7), 1996.
- Rossman, S. B., & Morley, E. Introduction. *Education and Urban Society*, 24(4), 1996.
- Simons, R. L., W, C., Conger, R. d., & Lorenz, F. O. Two routes to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early and late starters in impact of parenting and deviant peers. *Criminology*, 32, 1994.
- Stephenson, P., & Smith, D. Bull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P. Tattume & D. A. Lane(Eds), *Bullying in schools*, Stoke-on Trent, England: Trentham

Books, 1989.

Tajima, E. A. The relative importance of wife abuse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gainst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4(11), 2000.

Valerie E. Besag, *Bullies and victims: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Management*(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9.

As a result of establishing, 1988.



## Abstract

### **The study on the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Lim Gyeo-Ryeo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act(Act No. 7119, 2004, 01. 29 below School violence preparedness Act)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Presidential Decree No. 18497, 2007, 07.30) were enacted by the government in 2004 to cope with school violence becoming more server effectively. In the meantime, this Act has undergone a total of 10 times revision, compared with the Act at the enactment time, a significant complementary work has been done in many ways.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act that can be called a basic law on school violence.

First, the policy direction for school violence measures, ① you should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ause of the offender's behavior to cope with school violence effectively. ② The second five years basic plan's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are important but middle check is conducted whether you can compensate the defect on planned policy and unified assessment and performance criteria should be made.

Second, in the guide, education area about the offender, the relation between School violence preparedness act 17 and Juvenile act need to organize

its legal features.

Third, selection criteria for self-government committee should be stated more specifically in School violence preparedness act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s appointing self-government committee, committee should be no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ver transparent and open recruitment procedures rather than the principal's arbitrary decision. In particular, the principal should undertake chairperson with respect to the operation of self-government committee.

Fourth,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done for members of the school(students, parents, teachers). In addition, if video education programs are opened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each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at study school violence problems in collaboration, the difficulties of professional securing and education program configuration will be resolved to some extent.

Fifth, the improvements of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ized students. ① Compared with counseling and facilities for protection supports on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sexual assault victims, there were few supports for school violence victims. Therefore, counseling for school violence preparedness act and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facilities for protection and regulations on working, government subsidy should be prepared. ② In its clause 6, article 16, for guardians to admit liability of compensation is a significant problem because the range of 'guardian' and legal nature of 'guardian responsibility' aren't clearly defined. To do this, the details in its clause 6, article 16 are needed to amend. ③ Self-government committee will need to take various action as well as protection measures regulated in its clause 6, article 16, by regulating the contents of "Protection measures for other victims" in its clause 6, article 16 in its implementing ordinance specifically. ④ Victimized students protection and supporting plans will be taken. The change of the paradigm needs from the offender-center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e victim-centered criminal justice system.

Sixth, the improvements of guide, disciplinary action to the offender. ① Considering many students who commit violence are maladaptive in school, the way that the offender who can't adapt in school receive education in alternative school will need to be looked through. ② If the offender and guardian who received guide, disciplinary action from self-government committee refuse to transfer classroom or school despite of the principal's action, applicable provisions that can impose weighted measures within article 17, School violence preparedness act should be given. ③ School violence occurs in school but it occurs outside a lot. The effective enforcement system will be equipped to prevent violence outside. Current law admits women's family or the officials to undertake youth protection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in future if it gives school counselors sub jurisdiction(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crackdown on business place harmful to juveniles and the management on offenders will be made more efficiently. ④ In terms of reducing labeling effect of the offender and preventing rough process of the relevant authorities, the legal basis to apply earl die version(warning in guide condition) combined with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the police stage should be prepared, without referring the students judged not to require formal legal action to formally judicial process.

Seventh,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conciliation of dispute. Self-government committee has no way to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dispute resolution. However, self-government committee should regulat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function in express terms to find appropriate compromise in victimized student and the offender, to find advise settlement without civil and criminal appeals.

## 설 문 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은 나라의 꿈과 희망이라 했으나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설문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본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절대 비밀로 지켜질 것이며, 오로지 순수한 학술적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부(박사과정)

연구자 임계령

※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일반적인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맞고 틀린 정답이 없습니다. 학부모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응답을 적어 주십시오.(각 문항에 하나만 선택 하여주세요)

**1. 학부모님은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각하다.
- 2) 심각하다.
- 3) 보통이다.
-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관심이 없다.

**2. 학부모님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어떤 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십니까?**

- 1) 자녀를 통하여
- 2) 학교에서 배부하는 통신문을 통하여
- 3) 지역 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 4) 대중매체(TV뉴스, 신문, 인터넷 등)
- 5) 기타

**3. 학부모님은 학교폭력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 1) 신체적 · 물리적 폭력(폭행, 금품갈취, 장난을 빙자한 가혹행위 등)
- 2) 심리적 · 정서적 폭력( 괴롭힘, 놀림, 따돌림, 언어폭력, 강제로 시키기 등)
- 3) 사이버 폭력(핸드폰 문자, 인터넷 비방 글 등)
- 4) 모두가 심각하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 6) 기타

**4. 만약 학부모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고를 한다면 어느 기관에 우선적으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 1) 학교자치위원회, 담임교사
- 2) 교육청
- 3) 경찰
- 4) 검찰
- 5) 청소년 상담기관
- 6) 어느 기관도 신고하지 않는다.
- 7) 기타

**5. 학부모님 우리사회 학교폭력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생자신
- 2) 학부모와 가정교육

- 3) 학교교사
- 4) 엄격한 학교 분위기 및 입시위주 교육제도
- 5) 대중문화와 주변 유해환경
- 6) 사회문화전체
- 7) 기타.

**6. 학부모님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은 누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당사자 간에
- 2) 담당교사 차원에서
- 3) 학교차원에서
- 4) 관할 교육청 차원에서
- 5) 지역사회내 전문조정기관에서
- 6) 사법제도를 통하여
- 7) 기타

※ 다음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내용 학부모님의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응답을 적어 주십시오.  
(각 문항에 하나만 선택 하여주세요)

**1. 학부모님 자녀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괴롭힘, 금품갈취나 위협,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1) 전혀 없다.                      2) 1-2회 정도                      3) 3-4회 정도                      4) 5회 이상

**2. 학부모님 자녀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면,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습니까? (위 문제에 해당 한 경우)**

- 1) 괴롭힘
- 2) 가벼운 폭행
- 3) 집단따돌림
- 4) 금품갈취(돈이나, 귀중품을 비롯한 물건)
- 5) 위협이나 욕설을 통한 언어적, 심리적 폭력
- 6) 집단적 폭행, 도구를 이용한 폭행(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
- 7) 기타

**3. 학부모님은 학교폭력의 행위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학교 안
- 2) 등·하교시 학교 주변(놀이터, 오락실, 골목, 당구장 등)
- 3) 동네주변
- 4) 학원가 및 유흥가 주변
- 5)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4. 학부모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없을 것이다. 3) 잘 모르겠다. 4) 기타

**5. 학부모님 학교에서 자녀가 잘못으로 인하여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1) 교사 체벌로 인하여 학교폭력이 더 가중될 것이다.
- 2) 꼭 필요할 때 체벌해도 좋다,
- 3) 어떤 이유도 체벌은 하여서는 안 된다.
- 4) 잘 모르겠다.
- 5) 기타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부모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응답을 적어 주십시오.(각 문항에 하나만 선택 하여주세요)

**1. 학부모님은 학교폭력이 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부모(가정)의 관심 부족
- 2) 교사(학교)의 관심 부족
- 3) 정부의 관심 부족
-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부족
- 5)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부족
- 6) 학교주변 유해환경 확대
- 7)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2. 학부모님 학교폭력 예방 관한 문제해결을 위한 각 집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않다
① 학생 자신					

② 학부모(가정)					
③ 교사(학교)					
④ 지역사회단체					
⑤ 경찰 및 정부기관					
⑥ 청소년보호 단체					

**3. 학부모님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중복응답 가능)**

- 1) 처벌의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안
- 2) 가정교육의 강화
- 3) 전인교육,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교육 강화
- 4)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정화
- 5)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
- 6)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개발 활용
- 7) 기타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관한 학부모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교특성을 고려한 폭력근절 대책 추진
- 2) 전인교육, 인성교육, 상담교육 실시
- 3)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 4) 학생생활지도 개선
- 5) 기타

**5. 학부모님은 만약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4) 기타

**6. 학부모님은 학교폭력에 관한 학부모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참석 하시겠습니까?**

- 1)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
- 2) 시간이 허락하면 참여하겠다.
- 3) 관심이 있으나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4) 전혀 관심이 없다.
- 5)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부모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응답을 적어 주십시오.(각 문항에 하나만 선택하여 주세요)

**1. 학부모님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1) 자녀를 통하여 알고 있다.
- 2) 학교에서 배부하는 통신문을 통하여
- 3) 지역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TV, 인터넷, 신문 등)
- 4) 잘 모르겠다.
- 5)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2. 학부모님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기능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1) 자녀를 통하여
- 2) 학교에서 배부하는 통신문을 통하여
- 3) 지역 내 언론을 통하여
- 4) 대중매체(TV뉴스, 인터넷, 신문 등)
- 5) 잘 모르겠다.
- 6) 기타

**3. 학부모님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문제점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매우 필요하다
- 2) 학교운영위원회위상을 살리려면 필요할 것이다.
- 3) 필요하지만 잘 모르겠다.
- 4) 형식적이므로 필요하지 않다.
- 5) 기타

**4. 학부모님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비하여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
- 2) 그저 그렇다.
- 3) 매우 유용하다.

- 4) 잘 모르겠다.
- 5) 기타

**5. 학부모님은 학교폭력에 관한 현행법 이외에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2)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처해야한다.
- 3) 현행법도 충분할 것이다.
- 4) 필요하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 6) 기타

**6. 마지막으로 학부모님은 학교생활에 대하여 자녀하고 대화를 자주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자주한다.
- 2) 자주하는 편이다.
- 3) 가끔 한다.
- 4) 전혀 하지 않는다.
- 5) 기타

※ 다음은 학부모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작 성 자	아버지		어머니		그 외의 보호자	
연 령	세		거주지(제주시)			
직 업			부모님 학 력			
자 녀	아 들			딸		
	학 년	초등학생 학년	중학생 학년	고등학생 학년		

※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학술 연구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 1) 아버지      2) 어머니      3) 그 외의 보호자

※ 연 령 :

※ 직 업 : 1) 1차 산업      2) 자영업      3) 블루 (현장 직)  
4) 화이트(공무원 및 사무직)      5) 주부

※ 부모님 학력 : 1) 고졸이하      2) 대졸이하      3) 대학원이상

※ 자 녀 : 1) 남학생      2) 여학생

※ 자녀학년 :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